

2017. 10. 16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소고(小考)

종착점이 머지 않은 “만다린 피쉬(Mandarin fish) 전략”

리서치센터

유승민 Chief Strategist	02 2020 7024	strategist.you@samsung.com
심혜진 Economist	02 2020 7782	hyejin.shim@samsung.com
옥혜인 Strategist	02 2020 7795	hyein.ok@samsung.com
문동열 Strategist	02 2020 7792	dongyeol.moon@samsung.com

신뢰에 가치로 답하다 삼성증권



종착점이 머지 않은 “만다린 피쉬(Mandarin fish) 전략”

적자생존의 생태계에서 약자(弱者)들은 자신만의 생존 수단을 가지고 있다. 만다린 피쉬(mandarin fish)는 적도 부근 태평양에서 서식하는 5cm 이하 크기의 열대 어류이다. 이 작은 물고기는 살아남기 위해 2가지를 택했다. 첫째는 포식자를 위협하는 화려한 색상의 경고색이다. 몸집은 작지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과장된 위장술이다. 둘째는 피부에서 나오는 점액이다. 몸을 보호하는 비늘이 없는 대신,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독소물질을 가지고 있어 상대를 기피하게 만드는 유용한 도구이다.

북한이 핵 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만다린 피쉬 전략”이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북한은 미·중·러·일 등 주변 강대국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이 있다. 때문에 정권 유지와 생존을 위해 그들이 택한 방식이 핵 무장이다. 핵을 레버리지로 경제를 재건하거나,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은 후순위 목표인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는 열악한 재래식 전력을 커버할 충분한 경고색이다. 더불어 ICBM에 의한 미국의 본토 타격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악취가 나는 위협적인 독소이다.

이 시대의 수퍼파워인 미국에게 이 같은 북한의 반복적 군사적 도발과 과장된 레토릭은 거슬릴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만다린 피쉬인 북한을 잘못 컨트롤하면 득(得)은 거의 없고, 실(失)만 남을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보다 확대 포장되어 있음에도, 미국의 선택지가 좁은 이유이다. 하지만, 북한 핵의 “1차적 목적”인 생존을 위한 프로세스는 상당부분 진행됐다고 본다. 종착점이 머지 않았다. 때문에 금융시장 역시 북한의 의도와 전략 그리고 향후 향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돕고자 작성된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기보다, 투자전략적 관점에서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를 선택하는데 주력했다. 보고서 구성은 part I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려 하는 배경, 향후 전망과 투자전략 시사점 등을 고찰했다. 또한 주식시장 투자의 관점에서 개괄적인 고려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part II는 북한의 경제상황 및 주요국 제재의 효과 등을 검토했다. Part III는 주요국의 핵 개발과 독일 통일 사례를 요약했고, part IV에서 북한 관련 주요 데이터를 수록했다.

목차

I. 북한 핵 위기의 이해와 전망

I-1. 북한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역사와 배경	4
I-2. 미국, 중국의 대응과 한계	14
I-3. 이미 red line을 넘은 북한 핵	23
I-4. 투자전략 시사점	34

II. 북한 경제와 대북 제재의 유효성 논란

II-1. 북한의 경제 현황	53
II-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 UN과 미국의 제재를 중심으로	68
II-3. 대북 경제제재의 유효성 검토	85

III. 주요 사례 분석: 핵 개발, 통일

III-1. 주요국 핵 개발사	94
III-2. 독일 통일 case	125

IV. 참고 자료

134



I. 북한 핵 위기의 이해와 전망

I-1. 북한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역사와 배경

I-2. 미국, 중국의 대응과 한계

I-3. 이미 red line을 넘은 북한 핵

I-4. 투자전략 시사점

북한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역사와 배경



Summary

- ▶ **한국전쟁과 북한의 핵보유 의지:** 북한의 역대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있었다. 그 시작은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의 건의에 따라, 북한 지역에서 원자폭탄 사용을 고려하기도 했다. 소련의 후원으로 전쟁을 벌였던 젊은 김일성에게 원자폭탄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컸을 것이다.
- ▶ **김일성의 중국 벤치마킹:** 김일성은 핵무기 보유를 위해 1950년대부터 노력을 했다. 특히 중국이 양탄일성(兩彈一星) 확보에 성공하고 미국과 수교를 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구축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싶어했다. 그러던 중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에게 불법 핵 활동이 포착되고, 1993년에 NPT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 ▶ **김정일의 이중플레이:**金正일은 김일성의 사후 非핵화를 유훈으로 표방했다. 때문에 일시적이거나 한국(2000년 남북 정상회담) 및 미국(2000년 북미 공동 코뮌니케)과 평화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9.11 테러는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강경해진 변곡점이었다. 2002년 연두국정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북한은 2003년 1월 NPT에서 최종 탈퇴하게 된다.
- ▶ **김정은 핵 보유 노골화:** 2006년 1차와 2009년에 2차 핵실험에 성공했지만, 핵무기의 완성을 못보고 2011년 김정일은 사망하게 된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정권의 3대 세습을 한 김정은은 2012년 사회주의헌법을 수정해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명시하는 등 경제·핵 병진노선을 노골화한다. 그리고 2013년 3차, 2016년 4차, 5차 핵실험에 이어 2017년 9월 6차로 수소폭탄 실험까지 성공하게 되었다.
- ▶ **북한 자발적 핵 포기는 어려워:** 북한은 핵 능력을 “만능의 보검(萬能의 寶劍)”으로 인식하고 있다. 핵을 이용해 정권 유지와 생존을 확보할 수 있을 뿐더러 경제재건도 도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때문에 주요국들의 제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쉽지 않다.

1990년대 초 이후 북한 핵개발 의도 본격화

발생 일시	이벤트	지진규모 (Richter)	핵실험 위력	내용
1993년 03월 12일	NPT 탈퇴 선언			
1994년 07월 08일	김일성 사망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			
2003년 01월 10일	NPT 탈퇴			
2006년 10월 09일	1차 핵실험	3.9	1Kt	플루토늄
2008년 08월 29일	핵 불능화 중단 선언			
2009년 05월 25일	2차 핵실험	4.5	3~4Kt	플루토늄
2010년 0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2013년 02월 12일	3차 핵실험	4.9	6~7Kt	고농축 우라늄
2016년 01월 06일	4차 핵실험	4.8	6Kt	증폭핵 분열탄(수소탄 방식)
2016년 09월 09일	5차 핵실험	5.0	10~20Kt	증폭핵 분열탄(수소탄 방식, 소형화)
2017년 07월 04일	화성-14형 시험 발사			
2017년 08월 29일	화성-12형 정상각 발사			비행거리 2,700km
2017년 09월 03일	6차 핵실험	5.7~6.3 (한국 기상청) 6.1 (미국 지질국)	50~120Kt	수소탄
2017년 09월 15일	화성-12형 정상각 발사			비행거리 3,700km

자료: 통일부, 주요 언론, 삼성증권 정리

북한의 '통치 이념' 변천사와 핵무기

	조선 노동당 대회	당 이념	투쟁 목표	핵 정책
김일성	1945년 10월 제 1차	마르크스-레닌주의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	필요성 인식, 전략적 유연한 태도
	1948년 3월 제 2차			
	1956년 4월 제 3차	+ 혁명전통	공산주의 사회건설	
	1961년 9월 제 4차			
	1970년 11월 제 5차			
1912~1994				
김정일	1980년 10월 제 6차	김일성 주체사상 (유일)	공산주의 사회 건설, 사회전체의 주체사상화	1990년대 보유, 협상용 이중 목적 → 2000년대 체제유지 목적 보유
	1942~2011			
김정은	2016년 5월 제 7차	김일성-김정일 주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완성	경제 · 핵 병진노선
1984~				

김일성 시대 - 핵무기 필요성 인식

한국 전쟁 당시 원자탄 공격을 두려워했던 김일성은 핵무기 보유를 갈망

▶ 김일성은 중국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양탄일성(兩彈一星)을 벤치마킹 했으나 실현하지 못함



동아일보 (1950년 12월 2일)

중공에 원자탄사용고려
한국은 절대로 불포기
트루먼 대통령 기자회견석상 결의 표명

각종 무기의 사용여부
유엔 결의 있으면 만주까지 진격
맥아더 장군 재량에

* 양탄일성(兩彈一星) - 2개의 폭탄(원자폭탄, 수소폭탄)과 인공위성을 지칭

김일성 시대 - 핵 보유 노력 & 표면적 타협

비밀리 핵 개발 추진과 발각 (1955~89년)

- ▶ 1955년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 핵 개발에 착수
- ▶ 1974년 '원자력법' 제정,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 ▶ 1984년 영변원자로(5MW 규모) 서방 정보기관에 포착
- ▶ 1985년 소련과 '원전건설을 위한 경제기술협력 협정 체결,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 ▶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 영변 핵 시설에서 불법 핵 활동 포착
- ▶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1992년)
 - 북한, IAEA와 핵 안전조치 협정 서명
- ▶ 1993년 합의 불이행, NPT 탈퇴 선언

북·미 협상 → 적대 관계 해소, 한반도 비핵화 합의 (1993~94년)

- ▶ 1993년~1994년 북·미 협상 (3단계 협상 진행)
- ▶ 1994년 김일성 사망 (7월 8일)
- ▶ 1994년 제네바 합의
 - 미국 대북 중유 공급 (1995년)
 - 한반도 에너지기구(KEDO)와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1995년)

김정일 시대 (2000년 이전) - 핵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

한반도 非핵화가 김일성 유흔 이라고 강조 (1994~2000년)

- ▶ 그러나 북·미 적대 관계가 非핵화의 걸림돌 주장

북·미 적대 관계 해소 시에 핵 포기 가능성 시사

- ▶ 사회주의 붕괴, 냉전 종식으로 '소련 vs. 미국' 구도에서 '조선 vs. 미국' 구도로 변화 주장
- ▶ 초제국주의 패권, 일극(一極)통치에 맞서기 위해 핵 무기 필요성 강조
- ▶ 북·미 양자 / 북·미·중 3자 / 남·북·미·중·러·일 6자 협상 진행
핵 무기를 Negotiation leverage로 활용

남북 정상회담과 화해무드(2000년)

- ▶ 2000년 6월 13~15일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 ▶ 2000년 10월 12일, 북·미 공동 코뮌িকে 발표
적대관계 종식 선언, 평화보장체제 수립, 경제무역전문가 상호교환, 제네바 기본합의문 준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테러반대, 인도적 사업(유해 발굴 포함) 지속 추진, 미 대통령 방북 등
- ▶ 2001년 9.11 테러 발발

김정일 시대 (2000년 이후) - 핵 보유국 전략 본격화

미국 정권 교체 이후, 북한의 핵 관련 합의 파기

- ▶ 2002년 부시 대통령 연두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언급
2002년 10월 북한, 농축우라늄 개발 계획 인정
2002년 12월 KEDO 집행 이사회 대북 중유지원 중단 → 북한 핵 동결 해제, 핵 시설 가동 공표, IAEA 사찰관 추방
- ▶ **2003년 1월 10일 북한 NPT 탈퇴**
2003년 2월 영변원자로(5MW) 재가동, 8월 남·북·미·중·러·일 6자 회담 시작
- ▶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발발**
2003년 12월 사담 후세인 생포 (2006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1차 핵실험과 일시적 봉합

- ▶ 2005년 2월 북한 외무성, 자위를 위해 핵무기 제조 공표
2005년 9월 미국 BDA 금융 조치, 북한 6자 회담 거부
- ▶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플루토늄 방식)**
- ▶ 2007년 2·13, 10·3 합의 채택
2008년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북한 일방적 합의 폐기하며 핵 보유 전략 노골화

- ▶ 2009년 5월 2차 핵실험 (플루토늄 방식)
- ▶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김정은 시대 - 경제·핵 병진노선 채택

헌법 수정, '핵 보유국' 명시와 6차례의 핵실험 강행

- ▶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사회주의 헌법 수정

김정일 동지께서는 (중략)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존변시키었으며 <서문 중 발췌>

- ▶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우라늄 방식)

- ▶ 2013년 3월 전원회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 채택

(김정은이)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힘을 돌리는데서 나서는 과업 과 방도를 밝혀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로동신문 3월 9일)’

- ▶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수소탄 방식 - 증폭핵분열탄)

- ▶ 2016년 9월 5차 핵실험 (수소탄 방식 - 증폭핵분열탄)

- ▶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수소탄 성공)

북한, 핵무기 포기 어려워

핵 능력을 “만능의 보검(萬能의 寶劍)”으로 인식

- ▶ 2015년 1월 19일 노동신문 논설 “선군의 기치 높이 나아가는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다”
핵 억제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안전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경제·핵 병진 노선

- ▶ 2016년 1월 8일 조선신보 논설 “무진 막강한 전쟁 억제력을 갖춰야 평화스러운 환경에서 경제건설을 다그칠 수 있다”
(2016년) 수소탄 실험은 “조선식 경제부흥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
- ▶ 2016년 1월 27일 조선신보 논설 “수소탄 시험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이라는 병진노선에 따라 준비되고 단행”
경제건설을 위한 평화적 환경 마련은 강력한 군사력, 핵무력에 의해 담보
병진노선의 방점은 ‘핵’이 아니라 ‘경제’에 있다

2016년 5월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 핵 보유국 지위 주장

- ▶ 핵 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 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 가겠다
- ▶ 핵 선제 불사용, 핵확산 방지에 노력 천명



I. 북한 핵 위기의 이해와 전망

I-1. 북한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역사와 배경

I-2. 미국, 중국의 대응과 한계

I-3. 이미 red line을 넘은 북한 핵

I-4. 투자전략 시사점

미국, 중국의 대응과 한계



Summary

- ▶ **역설적이게도, 핵이 대화의 출발점:** 북한이 핵 문제를 일으키기 이전까지는 미국과 대화 통로가 막혀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산발적인 북·미 접촉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대화 시작은 1989년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이 국제사회에 포착 되면서 부터 이다. 당시는 공산주의 몰락의 시작과 냉전 종식, 한국의 북방정책 등 급변하고 있었던 국제정세의 급변기이었다.
- ▶ **북한의 미국 불신:**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보다 핵 보유로 방향을 정한 이유로 소위 이라크, 리비아 모델의 실패 탓을 들고 있다. 미국이 제시했던 ‘대량살상무기 완전폐기→경제제재 철회 및 내정불간섭→체제 안정과 성장’의 프로세스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대신, 파키스탄과 같이 암묵적인 핵 무장국 인정의 모델을 택했다.
- ▶ **중국도 불신:** 1960년대 이후 舊소련과 중국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이는 자주노선을 표방했던 북한이 소련보다 중국으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한·중 수교에 이르게 되자, 북한과 중국과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다. 이제 북한은 주체·자주 노선에 따라 중국을 ‘대국주의 국가, 제국주의 연합세력 등으로 비판하고 있다.
- ▶ **중국의 딜레마:** 멀어진 북한과의 관계로 중국의 영향력은 과거만 못하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과 패권전략 측면에서 북한을 포기할 수도 없다. 결국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핵 포기를 유도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한반도에서 THAAD가 배치된 이후 중국의 선택은 더욱 복잡해졌다. 소위 자국의 정당한 국가안보이익 보장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 ▶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전략이 충돌:** 과거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로 미국의 관심과 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무시하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썼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핵을 동결하겠다고 한다. 반면 미국은 협상 이전에 불량국가인 북한이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핵 이전에는 막혀있던 북·미 직접대화 통로

냉전시대에 북·미 접촉 제한적

- ▶ 1968년 1월 23일 미국 해군함정 푸에블로호 나포, 승무원 83명(사망 13명 포함) 석방
- ▶ 1971년 11월 1~3일 김일성 비공개 중국 방문
한반도 문제 관련 북한 요구에 대한 미국측 입장 확인
- ▶ 1972년 2월 21일 미국 닉슨 대통령 중국 방문
- ▶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 발표
- ▶ 1974년 9월 16일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 ▶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발생
- ▶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중국 수교
- ▶ 1985년 12월 12일 북한 핵확산 금지조약(NPT) 가입

북·미 직접 대화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 제기 이후 본격화

- ▶ 1988년 12월 6일 베이징에서 북·미 사이 대사관 참사급 대화 시작
- ▶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 SPOT-2가 영변 핵 관련 시설 촬영 공개
- ▶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UN 동시 가입

북한의 '미국' 불신

미국이 제시했던 'WMD 완전폐기 vs. 경제제재 철회 및 내정 불간섭' 모델의 종말 목도

▶ 이라크

이스라엘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개발 시도. 이스라엘의 폭격, 미국의 1차 침공 등으로 포기
2003년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목표로 미국 침공해서 후세인 정권 몰락. 후세인 체포 후 사형

▶ 리비아

1969년부터 반미 자주적인 정책 고수하며 핵 개발,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핵 개발 포기
2011년 아랍의 봄 사태 당시 카다피 시민군에 체포돼 사망. 이후 리비아 내전 지속 중

▶ 우크라이나

1994년 리스본 의정서 통해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보상 받는 대신 NPT 가입 및 핵 시설/무기의 폐기와 러시아로의 이관 약속
2014년 크림사태 이후 러시아 약속 위반 및 침공

▶ 2016년 4월 17일 조선국제정치문제연구소 “만약 우리가 자위적 핵 보유의 길을 버리고 굴종했다라면 이라크와 리비아,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 피와 눈물, 재난과 불행의 비극이 그대로 재현됐을 것”

북한, 파키스탄 모델에 따른 핵 보유국 인정을 모색 중

- ▶ 파키스탄은 인도의 위협으로부터 영토통합을 유지, 주변국의 우월한 재래식 무기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 목적으로 핵무기 보유 주장
미국 군사적, 재정적 원조 철회하고 제재 부과
- ▶ 부시 정부에서 대 테러 전쟁 위한 협력 등 명분으로 현재 파키스탄은 **암묵적 핵 무장국 용인**

북한은 ‘중국’도 불신

중·소 분쟁 계기로 자주노선 강화한 북한*

- ▶ 국제 공산진영 1960년대 초 이후 소련과 중국 극단적으로 대립
- ▶ 소련의 북한에 대한 군사, 경제 원조로 내정 간섭. 김일성 개인숭배 비판
중소분쟁에서 북한은 중국 지지
- ▶ 흐루시초프 실각 이후 1964~65년 북한과 소련 관계 개선
1950년대와 달리 북한의 자주노선 인정
- ▶ 북한 1970년 제5차 당대회 이후 주체사상의 통치 이데올로기 본격화
- ▶ 김일성 “소련은 믿을 수 없고(cannot rely on), 중국은 믿지 않는다(doesn't rely on)”
최근 비밀 해제된 외교 문서. 1980년대 초 Norodom Sihanouk(전 캄보디아 원수/국왕)와 대화 중

북·중 관계 악화 한·중 수교 이후 본격화

- ▶ 1990년 9월 30일 한·소 수교
- ▶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김일성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한·중 수교 연기 요구 했으나 실패
이후 사회주의 형제국인 중국에 대한 신뢰 붕괴 본격화
- ▶ 북한은 ‘주체·자주’ 노선에 따라 중국을 ‘대국주의’ 국가, ‘제국주의 연합세력’ 으로 비판

* 7페이지 '북한의 통치 이념 변천사와 핵무기' 참고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딜레마

두 마리 토끼 잡기 = '북한 체제 유지 + 핵 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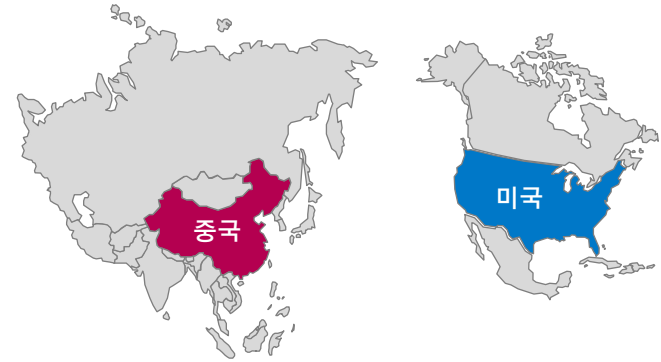
- ▶ 북핵 해결과정에서 정권교체, 체제붕괴 포함을 반대
- ▶ 소원해진 북한과 관계 불구 지정학적 중요성 포기 불가
- ▶ 중국의 지정학적 어려움

미국은 중국의 본토 면적은 비슷하나 우호적 국가들과 접경
반면 중국은 14개국과 접경이며 역사적으로 불편했던 관계
지정학적 완충 역할을 고려할 때, 북한은 포기할 수 없는 동맹국

THAAD 배치 이후 복잡해진 셈법

- ▶ 중국의 북핵 해결 3+1 원칙
기존 3원칙 = ① 한반도 비핵화 ② 한반도 평화와 안정 ③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한국 내 THAAD 이후 원칙 추가 = ④ 중국의 정당한 국가안보이익 보장
- ▶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북핵 해법
쌍잠정(雙暫停)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 vs.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쌍궤병행(雙軌並行) - 한반도 비핵화 논의 시작 vs.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시작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차이



(참고) 북·중 외부로부터 침략 받을 경우 상호 자동개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1961년 7월 11일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 제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한 경제·기술 원조를 진행하며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의 이익 및 동아시아의 평화 옹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 제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북한의 對 중국 논리

중국의 양탄일성(兩彈一星) 역사

- ▶ 각국 원자탄 개발 (1945년 미국, 1949년 러시아, 1952년 영국, 1960년 프랑스)
- ▶ 1955년 소련과 원자력 평화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
- ▶ 1964년 10월 6일 원자폭탄 실험 성공
- ▶ 1967년 6월 17일 수소폭탄 실험 성공
- ▶ 1970년 4월 25일 중국 인공위성 동방홍 1호 발사 성공, 양탄일성(兩彈一星) 완성
- ▶ 1971년 7월 9일 키신저 미 국무장관 중국 비밀 방문
- ▶ 1972년 2월 21일 닉슨 대통령 중국 방문
- ▶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정식 수교

북한, 핵무기 개발은 중국에서 배운 전략

- ▶ 1999년 9월 19일 장쩌민(江澤民) 前 중국 국가 주석, 과학자 23명 대상 ‘양탄일성’ 훈장 수여식에서
1960년대 이래 중국이 원자탄과 수소탄을 보유하지 않고 위성을 발사하지 못했다면 중국은 결코 지금처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대국이 되지 못하고 지금 같은 국제적 위치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 ▶ 2016년 1월 15일 북한 조선신보
중국이 오늘과 같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양탄일성(兩彈一星) 다시 말하여 원자탄과 수소탄 그리고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개발 소유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조선도 명실공히 강성국가의 튼튼한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북·미의 근본적 입장 차이

과거

- ▶ 북한, 핵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로 미국의 관심과 대화 국면 유도
- ▶ 미국,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무시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현재

- ▶ 북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면, 출구에서 핵 '동결'
- ▶ 미국, 북한이 협상에 들어오기 전에 흥기인 핵을 먼저 버리고 입장

본질은 '북한의 생존전략 vs. 미국의 세계전략'의 충돌





I. 북한 핵 위기의 이해와 전망

I-1. 북한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역사와 배경

I-2. 미국, 중국의 대응과 한계

I-3. 이미 red line을 넘은 북한 핵

I-4. 투자전략 시사점

이미 red line을 넘은 북한 핵



Summary

- ▶ **북한의 핵 무기 보유는 현실:** 핵 실험 횟수가 거듭될 수록 북한은 핵 보유국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3차 핵실험 이전은 방어차원의 핵 억제력 확보 강조했다. 그러나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핵 보유국임을 선언하고, 선제 불사용을 밝히고 있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현실이다. 2016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핵무기 6~12개 분량 플루토늄 50kg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 ▶ **그러나 핵 보유국 지위 획득 불가:** 북한이 주장하는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Nuclear-Weapon State) 인정은 불가능하다. 항구적 협정이 된 NPT에 의한 합법적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다. NPT 비가입 핵 무장국 (Nuclear-Armed State)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이다. 이에 반해 현재 NPT 체제하에서 북한은 '불법적 핵 무장국'이다.
- ▶ **역설적 상황:** 북한이 내심 바라는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최종 단계는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ICBM 기술 확보일 것이다. 6차례 핵실험으로 소위 '다종화, 규격화, 소형화, 병기화' 등은 이미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여전히 논란이다. 북한은 '국가 핵 무력' 완성 판단 전후에 핵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 ▶ **한반도 전쟁은 매우 낮은 확률:**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Preventive strike)은 어렵다. 첫째, 북한 내 군사 시설 정보 부족으로 완벽한 초기 제압 여부가 논란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사전 동의와 협조 없이 전쟁 수행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 내 여론이 한반도 유사시 지상군 투입 등에 지지가 낮은 등 이중적이기 때문이다.
- ▶ **중착점이 머지 않은 북한의 만다린 피쉬 전략:** 한반도 위기의 분기점은 북한의 "핵 무력 완성 판단" 전후가 중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IRBM,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 등이 변수이다. 그러나 결국 체제 보장이 궁극적 목적이기에 핵 무력 완성 전후 전쟁으로 휘발성이 큰 극단적인 긴장 고조는 피할 것이다. 때문에 머지 않은 시점에 북한은 미국에 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 先 고도화 방지, 後 폐기 정책 이미 실패

핵 실험 횟수가 거듭될 수록 핵무기 보유가 목표임을 천명

▶ 3차 핵실험 이전은 방어차원의 핵 억제력 확보 강조

2006년 10월 9일 조선중앙통신 “(중략)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 (중략) 핵 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

2009년 5월 25일 조선중앙통신 “(중략)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

2013년 2월 12일 조선중앙통신 “(중략)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일환”

▶ 4차 핵실험 핵 보유국 선언, 선제 불사용

2016년 1월 6일 조선중앙통신 “(중략)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중략)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 5차 핵실험 소량화, 경량화, 규격화 등에 성공

2016년 9월 9일 조선중앙통신 “(중략) 핵탄두를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

▶ 6차 핵실험 병기화 수준 달성

2017년 9월 9일 조선중앙통신 “(중략) 핵탄 위력을 타격 대상에 따라 (중략)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중략)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현실

▶ 북한 핵무기 6~12개 분량 플루토늄 50kg 보유 (2016년 국방백서, 2017년 1월 발간)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

핵무기 소형화 능력 역시 상당한 수준 도달 인정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 불가

핵확산 금지조약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과 북한

▶ 1969년 6월 12일 UN 총회에서 채택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 또는 그에 대한 관리를 제3국에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

비보유국은 핵무기나 기폭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

비보유국은 원자력을 핵무기나 기폭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비롯한 안전조치 받아야 함

1970년 조약 발효 후 5년간 평가 회의 개최, 1995년 이후 항구적 조약화

현재 약 190여개국 가입

북한 1985년 가입 → 1993년 탈퇴 선언, 탈퇴요건 미충족으로 보류 → 2003년 탈퇴

▶ 핵무기 보유국 (Nuclear-Weapon State)

NPT 협상에 의한 합법적 핵무기 보유국

5개국(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 NPT 비가입 핵 무장국 (Nuclear-Armed State)

NPT 비회원국으로 핵 무장, 원자력 물자와 기술 그리고 전략물자 등 교역 배제

3개국(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은 불가능

현 NPT 체제하에서 북한은 '불법적 핵 무장국'

핵무장 3개국은 당초부터 NPT 가입하지 않았으나, 북한은 NPT 탈퇴 전력

핵무장국 인정 가능성은 여지 (2015년 미국 국방수권법 개정 시, 의회에서 북한을 핵 무장국* 명시로 의결 → 오바마 대통령 거부권 행사)

* Nuclear-Armed Country

북·미 협상의 전제

협상에 대한 북·미의 현격한 입장 차이

- ▶ 북한 출구론적 해법,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면 최종 핵 동결
- ▶ 미국 입구론적 해법, 협상의 시작을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

역설적으로 북한이 '국가 핵 무력' 완성해야 협상 가능할 전망

- ▶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ICBM 기술 확보가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최종 단계
6차례 핵실험으로 소위 '다중화, 규격화, 소형화, 병기화' 등은 도달
화성-12형, 화성-14형 등 IRBM~ICBM급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논란
ICBM의 재진입 기술 확보 전까지 '도발-제재'의 악순환 지속 불가피
- ▶ '국가 핵 무력' 완성 판단 전후 핵 유예(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
북한 스스로 핵 무장국 확신 생기면, 핵 유예를 전제로 협상 요구 예상
협상 이후에도 장기적인 핵 폐쇄-봉인-불능화 실행은 불가 예상

미국, '세계 전략' 차원에서 협상 접근

- ▶ 한반도에서 미국 영향력 포기 불가
미래 중국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 수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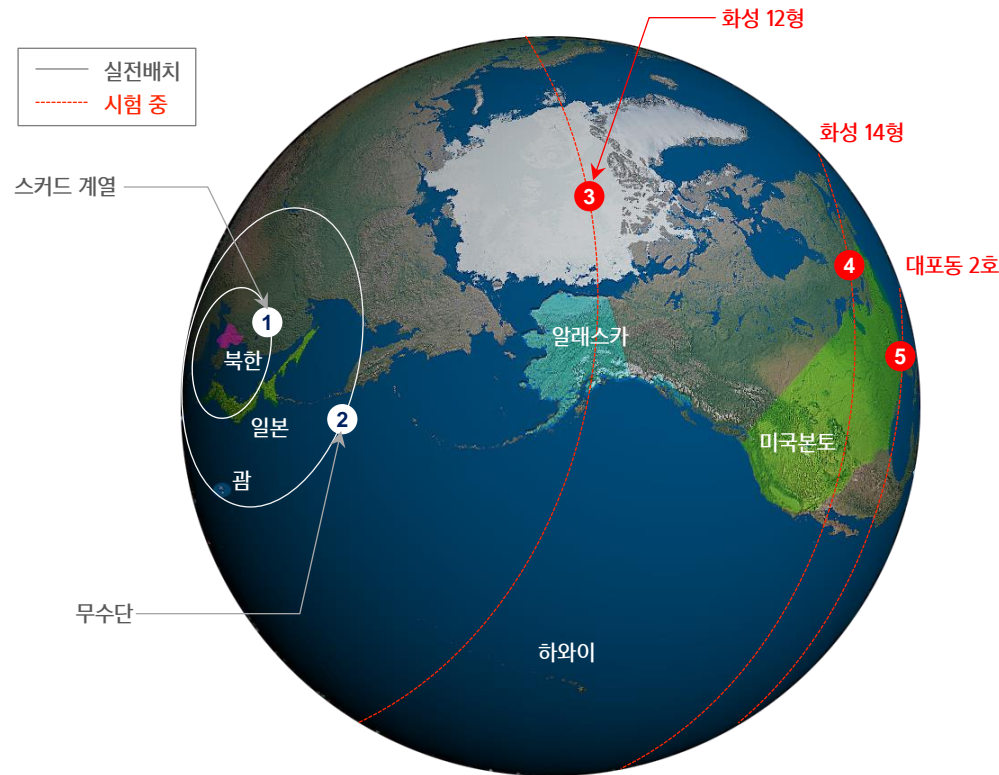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참고) 북한 보유 미사일 체계

북한의 전략적 고민은 미국 본토 타격의 증명

▶ 화성-12형(IRBM)의 수 차례 정상각 발사 시도 불구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 논란

북·미 대화 개시 또는 군사적 충돌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



탄도 미사일 종류	명칭	최대 사거리
① 단거리	KN-02	140Km
	화성-5호(스커드B)	300Km
	화성-6호(스커드C)	500Km
② 준중거리 (MRBM)	무수단(스커드ER)	1,000Km
	노동	1,300Km
	북극성-2형	2,000Km
③ 중거리 (IRBM)	대포동-1호	2,500Km
	화성-12형*	5,000Km
④-⑤ 대륙간 (ICBM)	화성-14형*	10,000Km
	KN-08*	12,000Km
	대포동-2호*	13,000Km

참고: * 추정 사거리
자료: 국방부, 주요 언론

미국 주도 한반도 전쟁 우려, 아직은 낮은 확률

미국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 어려워

▶ 북한 내 군사 시설 정보 부족으로 완벽한 초기 제압 여부 논란

한·미 군 당국 북한의 폐쇄성으로 주요 군사시설, 무기체계에 대해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예방공격 초기 북한의 완전 무력화 못해 예상하지 못한 지역과 수단으로 반격할 경우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미국 지원 기지 등 타격

▶ 한국과 일본의 사전 동의와 협조 없이 전쟁 수행 어려움

전시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등 외국인 소개(疏開)에 한국, 일본 정부의 동의와 협조가 절대 필요.
미국의 '예방타격'이 감행되면, 북한 미사일이 일본 본토를 대상으로 보복할 우려

▶ 미국 내 여론의 이중성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군사옵션 사용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지지는 갈수록 상승
그러나 지상군 투입 등에 대한 찬성은 여전히 낮아, 전쟁 발발 후 미군 희생 나오면 급속도로 전쟁반대 여론 확산 가능성 높음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이 전쟁 발발 제동

▶ 긴장의 에스컬레이션이 지속돼야 전쟁 발발

중, 일, 러 등 강대국들의 다자간 이해로 에스컬레이션에 제동

* Preemptive strike (선제공격) 상대방이 공격하기 전에 상대공격의 징후가 보일 때 먼저 공격하는 전술적 군사행동. 정당방위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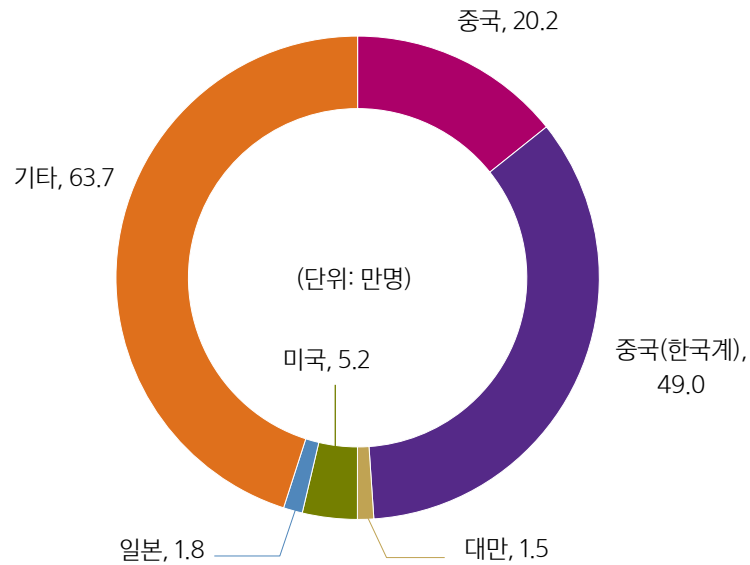
* Preventive strike (예방공격) 상대방의 계획이 달성되기 전에 상대를 공격하는 행동. 전략적 군사행동

(참고) 한국 내 거주 외국인 141만명

2016년 말 현재 한국 내 미국인 약 5.2 만명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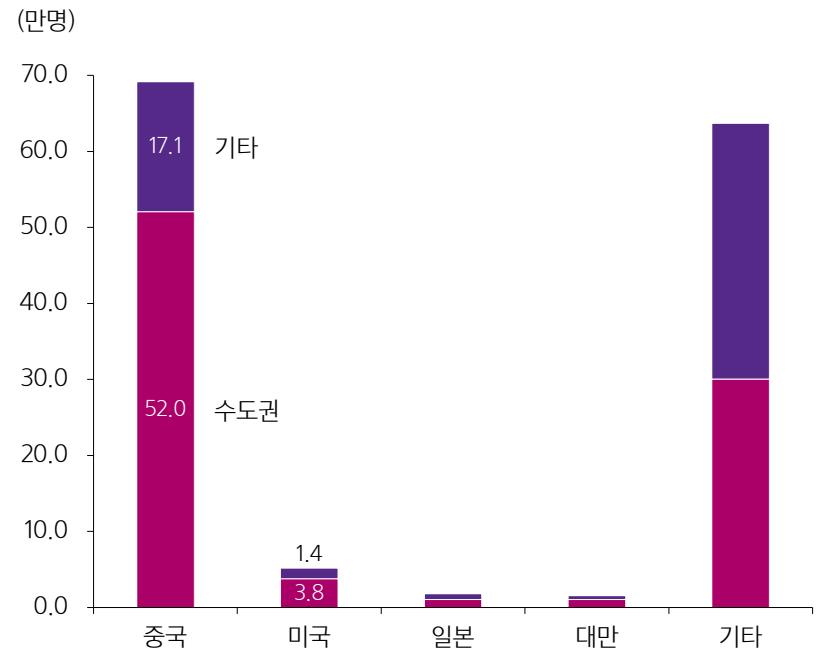
- ▶ 중국(69만명/조선족 49만명 포함), 미국(5.2만명), 일본(1.8만명), 캐나다(1.5만명) 순
수도권 거주 외국인 88만명 (중국 52만명, 미국 3.8만명, 일본 1.1만명 등)

한국 거주 외국인 현황 (2016년)



자료: 통계청

한국 거주 외국인 지역별 현황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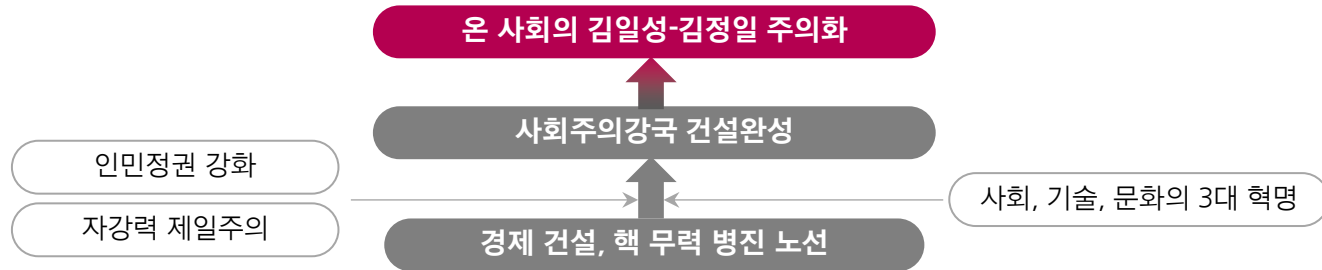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북한 역시 전쟁, 적화통일보다 생존이 우선 과제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기 보유 의도인 '남한 적화 통일' 달성은 체제 안정성 확보 이후 과제일 것

▶ 북한의 핵 무기 보유 1차 동기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김정은 체제의 장기적 유지, 안정

북한 7차 당대회 (2016년) - 주요 노선



정치사상강국 건설	군사강국 건설	과학기술, 문명 강국	경제강국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과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 강화 인민대중제일주의 철저히 구현 자주정치, 청년 중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투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과 당중앙의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 강화 자립적 국방공업, 혁명공업 강화 발전 총대 중심, 군사중심 기풍 확립 전 인민적, 전 국가적 방위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강국 건설의 기관차 역할, 첨단돌파전 우주과학기술 발전 중요 부문 기술공학, 기초과학분야 강화 전면과학기술 인재화 교육개혁, 교육체계 완비 현대적 문화정서생활기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 (새 세기 산업혁명)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 실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철저 수행 내각책임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실시, 대외경제 확대 발전

그럼에도 최대 불확실성은 ‘Allison의 제3모델’ 위험

Decision making Model of G.T. Allison*

▶ 합리적 행위자 모델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은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해 최대 이익의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가정 (전통 경제학의 가정과 유사)

▶ 조직과정 모델

국가가 완전한 합리성 가지지 못하며, 최적화된 결정대신 한정된 합리성에 의거해 일정 기준 내에서 의사 결정 (경영학적 가정과 유사)

▶ 관료정치 모델 = Allison의 제3모델

관료조직 head들의 정치 게임을 주목. 정치조직 내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그룹의 정책이 한 국가의 대외정책으로 시행

미국의 북한 봉쇄(containment) 전략 강화 과정에서 돌발적 상황 우려

▶ 봉쇄전략 성공의 키는 중국, 만약 원유차단 등을 선택한다면 북한의 극단적 반발 예상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반대하지만, 북한의 체제안정과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더 높은 가치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3불가(불가)원칙 : ① 전쟁 불가, ② 불안정 불가, ③ 핵 불가

▶ 극단적 상황 시, 북한 지도부의 ‘합리적 선택’ 여부가 최종 관건

북한의 “핵 무력 완성 → 핵 모라토리엄 선언 → 대화 요구” 프로세스 이전에 돌발 상황은 최악

미국이 북한에 핵 포기를 끝까지 요구할 경우 김정은의 선택 주목

* 미국 정치 학자인 G.T. Allison 1971년 “결정의 엡센스”를 통해서 제시. Allison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자신의 모델로 적용해 설명

한반도에서 전쟁을 촉발할 변수들

북한의 “핵 무력 완성 판단” 전후가 중요할 듯

▶ IRBM, ICBM의 대기권 재진입 성공 등이 단기적 변수

체제 보장이 최종 목적이라면 핵 무력 완성 이후 북한 입장에서 추가적인 긴장 고조는 실익 없음 → 대화 요구 가능성, 미국의 반응은?

주요 변수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

변수	현실화 가능성	전쟁 촉발 가능성
북한, 수소 폭탄 병기화 완성 (경량화, 표준화, 다종화 등 포함) → 6차 핵실험으로 성공	100%	5%
북한, IRBM,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90%	10%
북한, 남한 도서 지역 등 국지적 공격	20%	25%
중국, 對 북한 원유 및 식량 공급 전면 중단	10%	10%
미국, 한반도 및 주변(일본, 괌 등)에 병력 증파, 전략자산 추가 배치	30%	15%
북한, 괌 주변 공해상에 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 직접 위협	10%	35%
		100%

변곡점



I. 북한 핵 위기의 이해와 전망

I-1. 북한의 경제·핵 병진 노선의 역사와 배경

I-2. 미국, 중국의 대응과 한계

I-3. 이미 red line을 넘은 북한 핵

I-4. 투자전략 시사점



- ▶ **김정은과 G2 정상외 정치 상황:** 주요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북한은 2018~2020년 중 협상 1차 타결을 '목표'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2021~22년경으로 예상되는 제 8차 당대회까지 경제·핵 병진노선의 성과를 도출하고자 할 것이다. 이 기간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연임선거 등 앞두고 있고, 중국 시진핑 주석 역시 집권 후반기 한반도 안정 확보가 필요해 G2에게도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 ▶ **북미 협상 성사 이후 단기 영향:** 대체로 한국 경제와 펀더멘탈에 부정적이다. 지정학적 위기 관리 비용의 추가 부담 때문이다. 북·미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입장 반영하는 대신, 통상 측면에서 양보 요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도 더욱 강화가 예상된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주한 미군 주둔 규모 축소 가능성과 한국의 추가 국방비 지출도 예상된다.
- ▶ **북미 협상 성사 이후 중장기 영향:**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정착될 경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는 긍정적이다. 부수적으로 북한의 인력, 자원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익도 기대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장기적 체제 안정을 위해 '결국'은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북한의 미래 위협인 한국의 북한 흡수 통일을 대체할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 ▶ **과거 지정학적 위기와 주식시장:** 과거 북한의 핵실험 등 지정학적 위기 때마다 시장 영향은 불분명했다. 물론 긴장도가 현저히 높은 이번 위기가 정치적으로는 과거와 다른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주요 국제 기관은 한반도 위협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우호적이어서 한국 주식시장의 충격을 완충시키고 있다.
- ▶ **향후 전망과 판단:**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은 올해 말~내년 초가 분기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상기한 바와 같은 정치 일정으로 인해서 협상으로 방향 전환 가능성을 예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정학적 위험관리 비용 증대'와 '중장기적인 위험 축소' 중 더 중요한 영향 경로를 판단할 것이다. 우리는 후자를 더 주목한다. 과도하게 낮은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비현실적 목표 대신 국면 전환 가능성에 무게

이제 북한 비핵화는 비현실적 목표

- ▶ 북한 사회주의헌법에서 '핵 보유국' 명시(2012년)로 핵 포기 불가
'사회주의 강국 건설완성'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인 '경제·핵 병진노선'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미래에 대한 보장 수단으로 핵 인식
제7차 당대회(2016년)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 주의화'를 노선으로 채택
- ▶ 트럼프 행정부 현재의 대북 기조 '최대 압박과 관여' → 실현 가능한 목표로 스탠스 전환 불가피
전략적 효용성과 압박 및 관여의 한계 인식 중

북한의 태도변화 시점은 변수

- ▶ '국가 핵 무력' 완성 판단 전후 핵 유예(모라토리엄) 선언 가능성
북한 스스로 핵 무장국 확신 생기면, 핵 유예를 전제로 협상 요구 예상
- ▶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에 따른 협상 레버리지 차이
본격 협상 이전까지 북한은 ICBM 기술 향상 위한 미사일 발사 예상 vs. 외교적, 군사적 압박 강화
ICBM의 미 본토 타격 기술 확보 어려울 경우 조기에 협상 국면 진입 가능성도 존재

중장기적인 위기 확산 제어가 현실적 목표

- ▶ 한반도에서 우발적 전쟁 발발 방지
- ▶ 북한의 핵 무기 사용 억제

북한의 시간표 엿보기

주요국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북한은 2018~2020년 중 협상 1차 타결을 '목표'할 가능성

▶ 리더십을 증명하고 안정적인 장기적 집권 체제 구축 바라는 김정은과 G2 정상외 정치 상황

제 8차 당대회까지 경제·핵 병진노선 성과 도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연임선거 등 앞두고 있어 북핵 이슈에 대한 해결 여부가 중요

중국 시진핑 주석, 집권 후반기 한반도 안정 확보 필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북한	-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20주년 (10월 8일) - 1차 핵실험 11주년(10월 9일) - 노동당 창당72주년(10월10일) - 북·미 코뮌니케 17주년 (10월 12일)			- 노동당 창당 75주년 (10월) - 북·미 코뮌니케 20주년 (10월)	- 김정일 탄생 80주년 (2월) - 김일성 탄생 110주년 (4월) - 제8차 노동당대회 ; 경제·핵병진 정책 성공 선언 (?)	
	핵 무력 완성	협상을 통한 제재 해소			정권 안정, 김정은 장기 집권	
미국		- 연방의회선거 (=중간선거, 11월)		- 제46대 대통령, 연방의회 선거 (11월)		- 연방의회선거 (=중간선거, 11월)
중국	- 제19차 공산당대회 (10/18)					- 제20차 공산당대회 (10~11월)
한국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6월) ; 개헌투표 동시 실시 가능성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5월)		- 제20대 대통령 선거 (3월)

북·미 협상 성사 경우 향후 영향

부정적 영향 - 대체로 단기적

▶ 지정학적 위기 관리 비용 추가 부담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 반영하는 대신, 통상 측면에서 양보 요구 가능성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더욱 강화 예상

▶ 북·미 협상 과정에서 주한 미군 주둔 규모 축소 가능성

주한미군 축소될 경우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한 한국의 국방비 부담 증가 (미국 산 무기 구입, 국방 예산 증대)

긍정적 영향 - 대체로 중장기적

▶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될 경우, 지정학적 불확실성 크게 하락

▶ 북한의 인력, 자원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익 기대

장기적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해 '결국'은 한국의 동의도 필요

▶ 북한의 과거 위협 - 국제사회의 제재

▶ 북한의 현재 위협 -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 북한의 미래 위협 - 한국의 북한 흡수 통일

북·미 협상 최종 단계에서 한국의 통일 정책 변경 요구
장기적으로 남북한 독립국가 공동체 모색할 전망

지정학적 위험 관리 비용 증가는 불가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연 1조원 수준, 향후 부담 증가 예상

- ▶ 제 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2018년 말 만료 예정. 내년부터 새 협상 개시
美 트럼프 행정부 강경 스탠스로 분담금 증액 우려
한국 측 방어 논리: GDP 대비 높은 부담 수준, 불용액 누적

주한미군 축소 시 위험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

- ▶ 인원·장비·전시 증원전력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대체비용)는 최대 500조 원까지 추정
- ▶ 미 국방예산을 통한 단순 추정 시 한국 방위에 연 8조 원 소요

위기 이전에 비해 향후 국방비 지출 확대 예상

- ▶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2018년 국방 예산 GDP 대비 2.4% → 2022년 2.9%까지 증가할 계획
향후 국방 수요 증가로 국방비 비중 증가 예상 (세금 인상 우려)

한·중 관계 악화 우려로 인한 부담

- ▶ 1992년 수교 이후 한국의 對 중국 경제적 의존도 큰 폭 확대
미국은 중국에 대한 secondary boycott 고려 중 →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것
THAAD 배치로 인한 한중 불신, 전술핵 배치 가능성 등으로 중국 불만 최고조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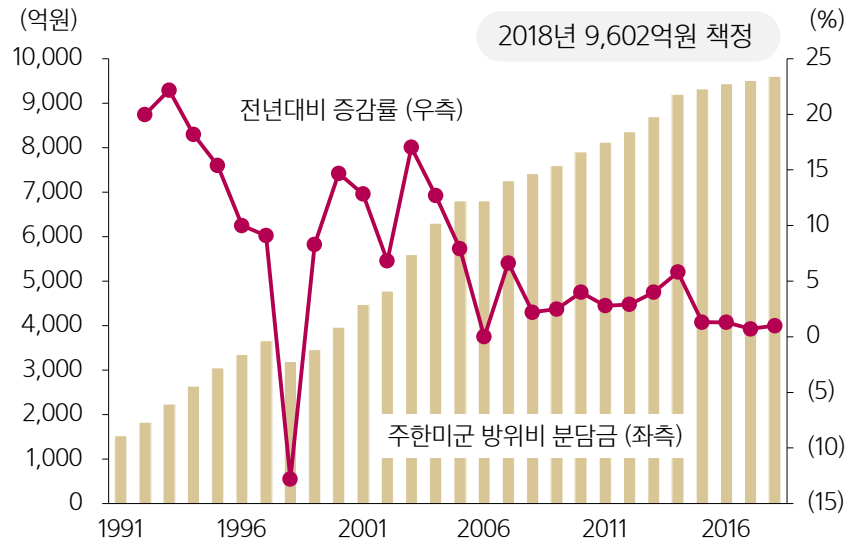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예상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총 2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절반 가량 부담 중

- ▶ 현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년 체결)은 2018년 말까지 유효 → 2019년 이후의 협정 절차 내년부터 시작
- 미국 측은 북한의 위협 증가와 THAAD 비용 등을 이유로 분담금 인상 요구 가능성
- 한국 측은 GDP 대비 부담 수준, 불용액 누적* 등을 근거로 방어 가능

*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에 따르면 책정된 방위비 분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축적된 금액이 6,223억 원에 이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자료: 국방부, 외교부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수준: 타 국가와의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독일
GDP (조달러)	1.15	5.98	3.37
국방예산 (억달러)	290	594	404
방위비분담금 (억달러)	7.8	38.2	5.2
GDP 대비 (%)	0.068	0.064	0.016
국방예산 대비 (%)	2.7	6.4	1.3
정규군 (명)	655,000	247,450	196,000
미군 (명)	28,500	36,700	50,500
미군 비중 (%)	4.4	14.8	25.8

참고: 2012년 기준
자료: 외교부, 국방부, 예산정책처

주한미군 축소 시 방위비용 증가 가능성

병력·장비·전시증원전력 등을 모두 고려한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는 최대 500조 원까지 추정

- ▶ 인원: 한국군에 배정된 예산 규모에 주한미군의 인원 수 비중을 적용하면 약 1조원 부담
- ▶ 장비: 주한미군 운용 장비(예비 탄약 포함)의 경제적 가치는 23 ~ 36조 원 (한국의 한 해 국방예산과 맞먹는 수준)
- ▶ 전력: 평시 및 전시 증원전력을 포함한 전투력의 경제적 가치는 153 ~ 467조 원

병력 대체비용 추정

구분	한국군에 배정된 국방예산		주한미군 병력 수 비율 (한국군 대비)		유지비용 (대체비용)
육군	13.5조 원	×	3.3%	=	4,431억 원
해군	5.4조 원	×	0.8%	=	413억 원
공군	6.3조 원	×	13.6%	=	8,520억 원
합계					1,3조 원

평시 전력의 경제적 가치

구분	한국군에 배정된 국방예산		주한미군 전투력 비율 (한국군 대비)		주한미군 전투력의 경제적 가치
육군	13.5조 원	×	12.5%	=	1.7조 원
공군	6.3조 원	×	16.7%	=	1조 원
합계					2.7조 원

장비 대체비용 추정

연구	주한미군 운용 장비의 경제적 가치
국회 국정감사자료 (2008)	36조 원
통일연구원 (2003)	35조 원
한국국방연구원 (2003)	24조 원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23조 원

참고: 국방예산 금액은 2011년 기준
자료: 국방대학원 재인용

전시 증원전력의 경제적 가치

연구	증원 전력의 경제적 가치
통일연구원 (2003)	464조 원
국방대학원 (2011)	150 ~ 400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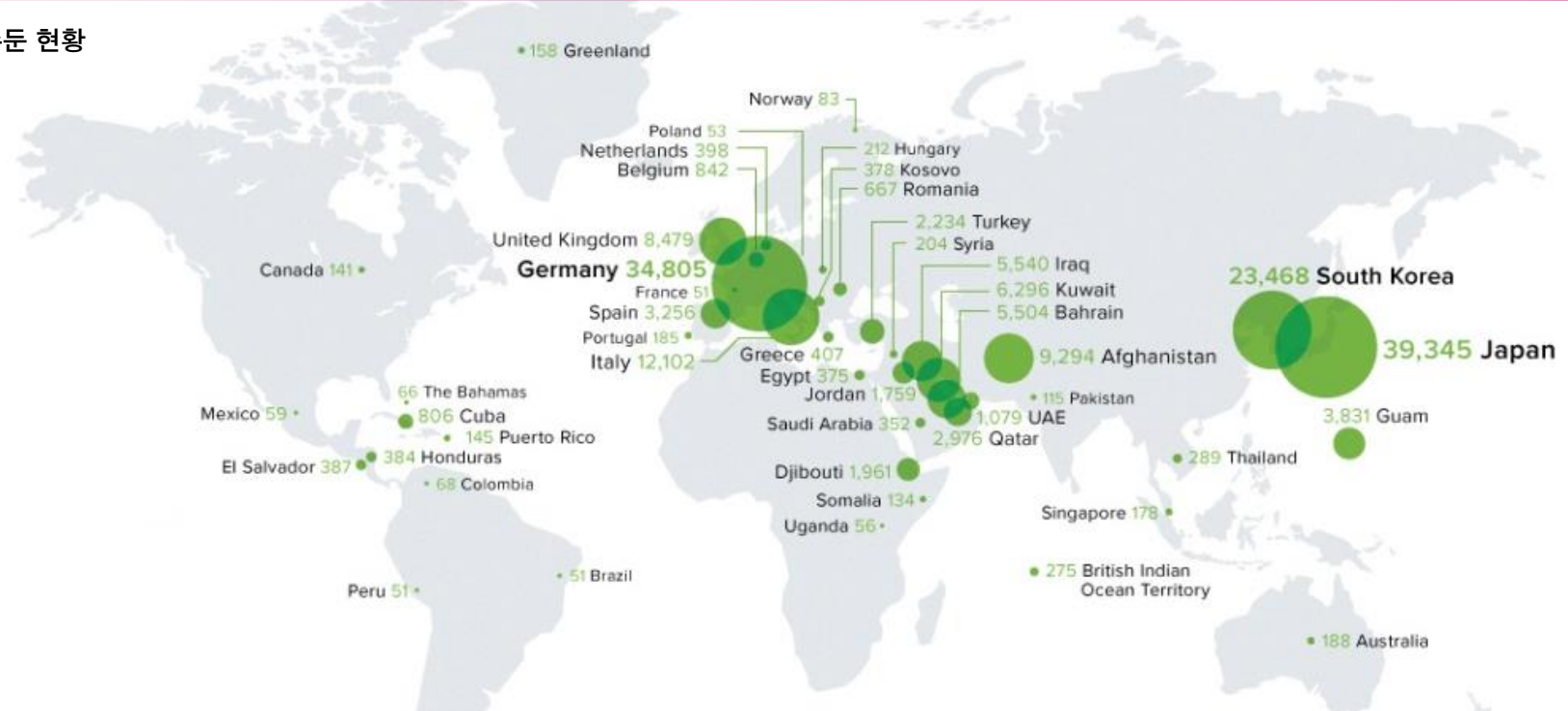
참고: 국방예산 금액은 2011년 기준
자료: 국방대학원 재인용

(참고) 미국 국방예산과 한국 방위 비용

미군의 해외 방위 전력 중 11.7%가 한국에 주둔

- ▶ 2018년 미국의 국방예산 총 6,400억 달러 중 650억 달러가 해외 방위 비용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Budget)
- ▶ 2015년 기준 해외 주둔병력 199,485명 중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23,468명 (11.7%)

미군의 해외 주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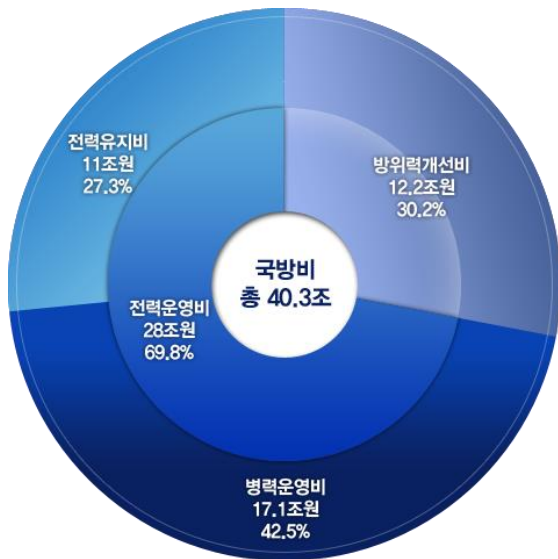
자료: visualcapitalist.com

(참고)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 로드맵

정부 방침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현 40조 원 수준에서 2022년 60조 원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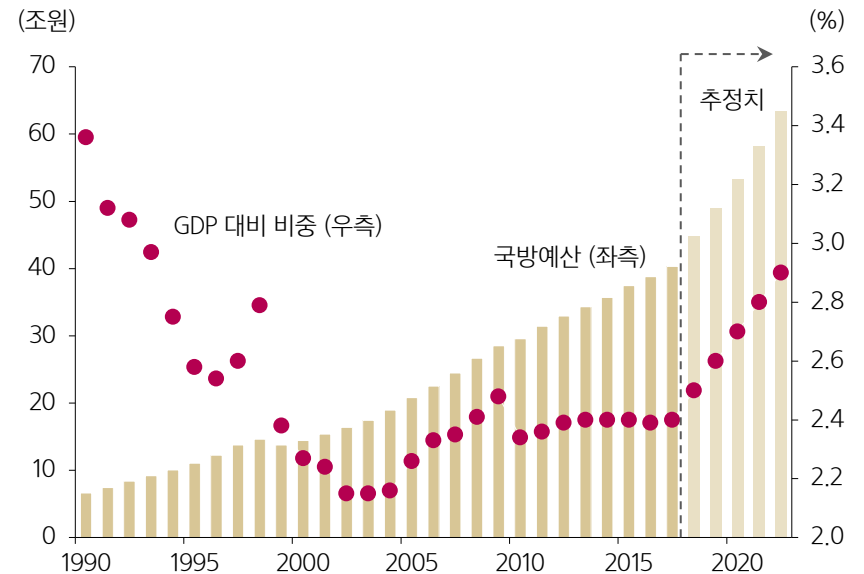
- ▶ 정부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 2.4%를 임기 내 2.9%까지 인상할 계획
- ▶ 향후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을 연 0.1%p씩 5년 동안 늘린다면, GDP 증가분까지 고려 시 2022년 국방예산 60조 원 상회 예상

2017년 국방예산: 40.3조원 (GDP 대비 2.4%)



참고: 일반회계 기준
자료: 국방부

국방예산 규모: 추이와 전망



참고: 2018년 이후 GDP 전망치는 IMF 수치, 2022년까지 GDP 대비 비중 1%p씩 상향 가정
자료: 국방부, IMF

(참고) 2018-2022 국방중기계획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직간접 소요 자원: 5년간 총 238조 원

방위력 개선비: 총 78조 원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2020년대 초~중반)
<p>전력 신규 반영 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 복합유도폭탄 등</p> <p>전력화 시기 및 기간 단축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자항기뢰 등</p> <p>전력의 수량 증가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II 등</p>
현존 및 잠재적 위협 대비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
<p>접적지역 대응능력 보강 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신규 반영</p> <p>전술 지대지유도무기 조기 전력화 등</p> <p>미래 국방환경에 적합한 첨단 전력 확보 K-2 전차, 230mm 급 다련장, 3천 톤 급 잠수함, F-35A(스텔스기) 등</p>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R&D 확대
R&D 비중 향상, 신무기 개발 역량 확대, 국방·민간 기술협력 강화

전력운영비: 총 160조 원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보장	사이버공격 및 對테러 대응능력 보강
성과기반군수지원무기체계 확대 F-15K 장비가동률 향상 군 차량 상용화율 향상	사이버공격 대비 대응능력 강화 폭발물탐지기 등 장비 보강
작전 및 지원시설 보강	장병 생활 여건 개선
노후 통합정비고 개선율 향상 K-9 자주포 포상 유개화 완료 이글루 탄약고 신축	기본 급식비 인상 기능성 내의류 추가 보급 GOP 상시 군수지원시스템 구축
실전적 과학화 훈련 여건 조성	장병 복지 향상
소대급 마일즈장비 확보 군단급 과학화 훈련장 확대 사단급 전술종합훈련장 증설	사이버지식정보방 완전 무료화 격오지부대 독서카페 설치 완료 의무 전용 헬기 교체

자료: 국방부

한·중 관계의 악재 (1) 미국의 제 3자 제재(secondary boycott)

북한과 정상적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 고려 중인 미국

- ▶ 북한 교역의 80% 이상 차지하는 중국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 철광석, 화학 관련 기업 등이 제재 대상

실제, 중국에 대한 secondary boycott 제재 시 무역 전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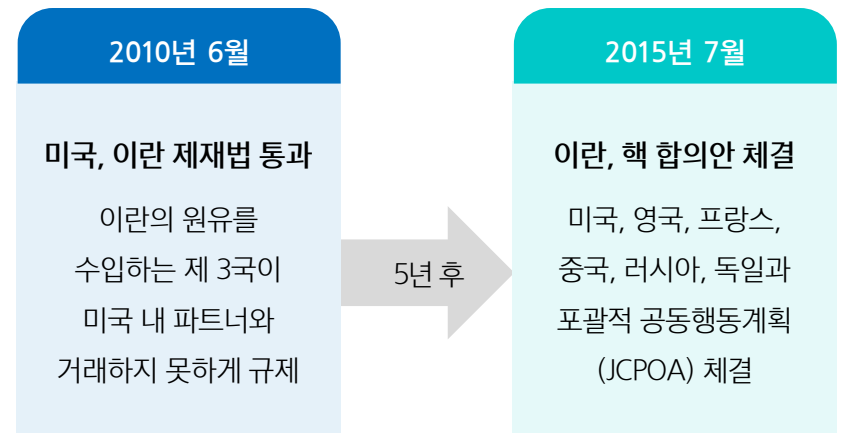
- ▶ 한국, 일본 등 미국 동맹국의 제재 자동 참여로 중국과 갈등 최악 진입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미국에도 큰 부담돼 논쟁 여지

행정명령 13810호 대북제재 대상 명단

구분	대상	비고
기관 (북한 은행)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기존 제재 대상인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도 포함
개인	제재 대상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현지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	

자료: 언론, 삼성증권 정리

이란에 대한 secondary boycott 사례



자료: 언론, 삼성증권 정리

한·중 관계의 악재 (2) 전술핵, THAAD

한국에 전술핵 배치 경우 중국 반발

▶ 북·미 협상 카드로 전술핵 배치 가능성 제기

일각에서 한국에 전술핵 전격 배치 후, 북한과 협상과정에서 핵 폐기를 전제로 철수 전략 중국의 불만 최고조 가능성 → 일본, 대만 등 주변국 핵무장 빌미 우려

THAAD 배치로 형성된 한중 불신 해소 여부

▶ 북·미 협상 타결 이후에도 한국 내 THAAD 철수 난망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 유지하고 중국 견제하기 위한 미국 전략과 중국의 해양진출 전략 충돌

1992년 수교 이후 對 중국 경제관계 의존도 심화

구분	1992년		2016년	
	한국 → 중국	중국 → 한국	한국 → 중국	중국 → 한국
수출	전체 수출의 3.5% (6위)	전체 수출의 3.1% (5위)	전체 수출의 25.1% (1위)	전체 수출의 4.5% (4위)
수입	전체 수입의 4.6% (5위)	전체 수입의 5.2% (5위)	전체 수입의 21.4% (1위)	전체 수입의 10.0% (1위)
투자	전체 해외투자의 10.0% (3위)	-	전체 해외투자의 9.4% (2위)	전체 해외투자의 0.9% (10위)
관광	전체 방중외국인의 1.1% (5위)	전체 방한외국인의 2.7% (6위)	전체 방중외국인의 3.4% (4위)	전체 방한외국인의 46.8%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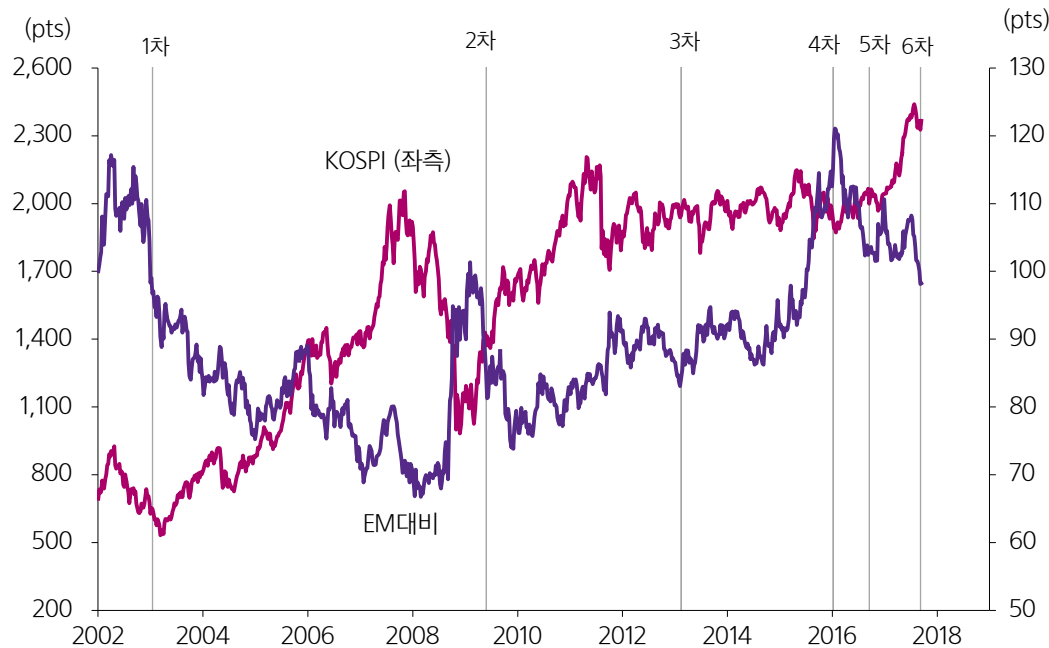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재인용

북한 지정학적 위기와 주식시장

과거 5차례 북한 핵실험의 KOSPI 영향 불분명

- ▶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특징, 실질적인 군사적 위기까지 진전 제한 등이 이유
무력 충돌 상황, 주요 교역국과 관계 악화 경우 시장 영향 커질 수 있음

북한 핵 실험과 KOSPI



발생 일시	핵실험	KOSPI 등락 (이벤트 발생일 대비, %pts)		
		1개월	2개월	3개월
2006년 10월 09일	1차	0.52	(4.40)	(5.70)
2009년 05월 25일	2차	(1.17)	(1.28)	1.87
2013년 02월 12일	3차	2.24	2.06	0.84
2016년 01월 06일	4차	2.19	(1.48)	(1.07)
2016년 09월 09일	5차	0.20	(1.43)	0.83
2017년 09월 03일	6차	1.56	-	-

자료: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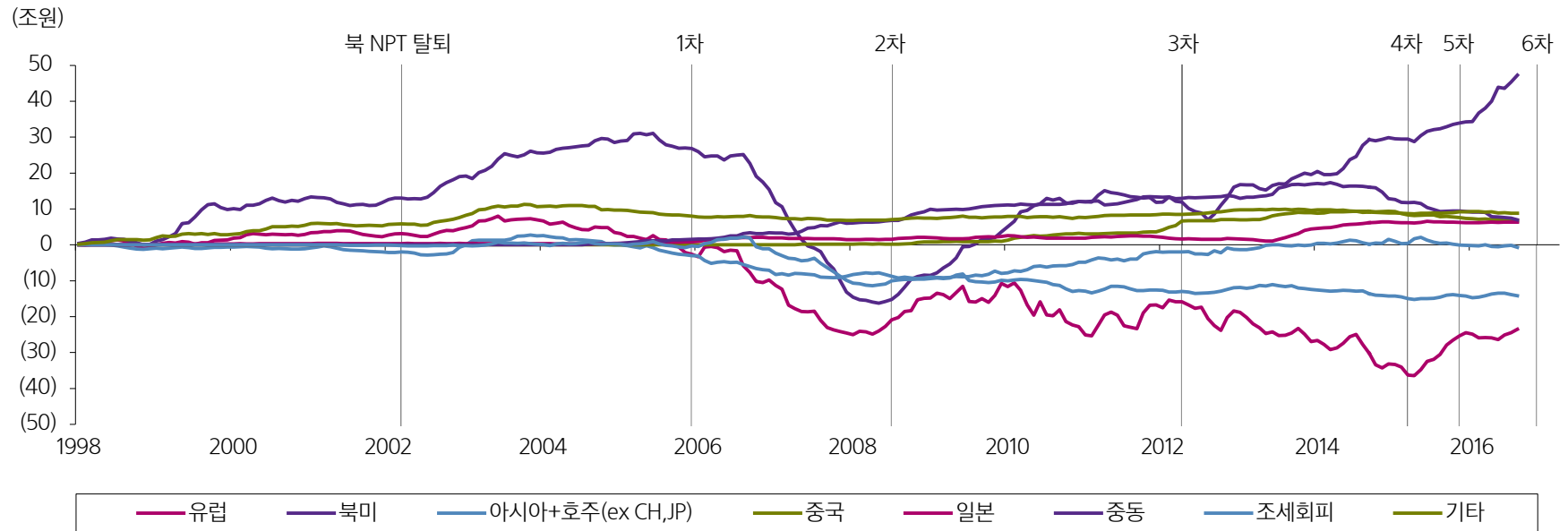
북한 지정학적 위기와 외국인 투자 flow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외국인 자금 흐름 불분명

▶ 글로벌 펀드 flow에 따른 한국 투자 비중 결정

누적 순매수 기준 최대 투자국은 미국으로 추정

북한 핵 실험 vs. 주요 국적별 한국 주식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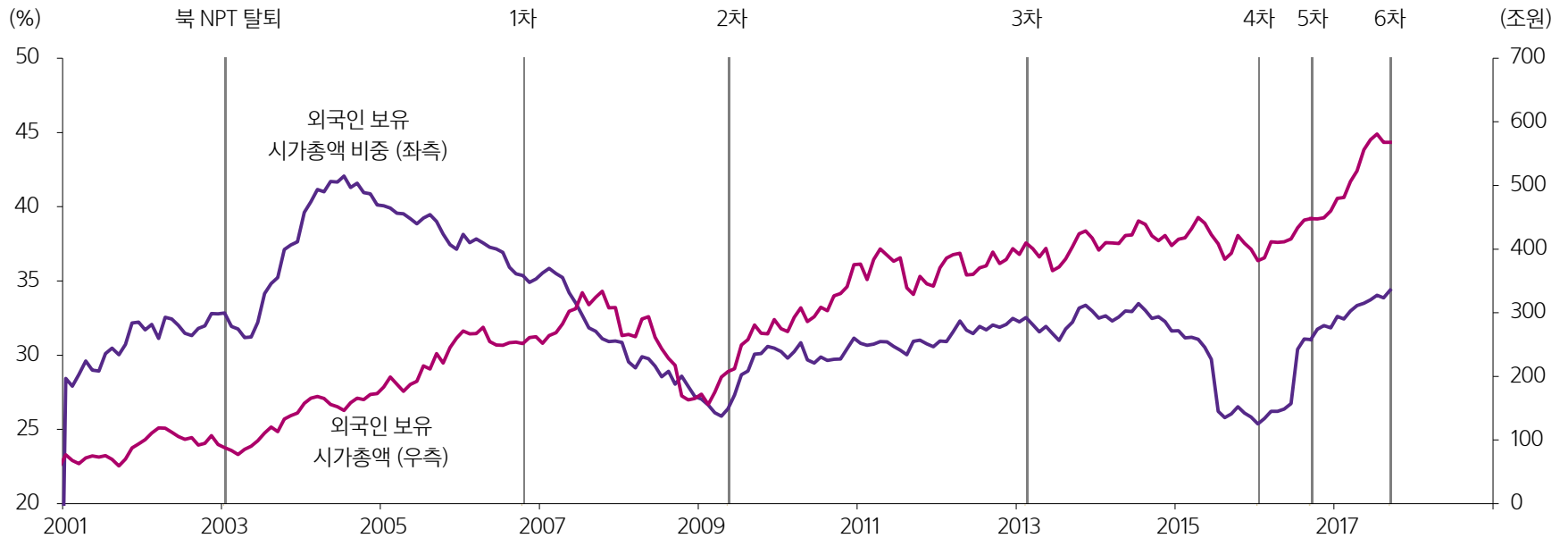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삼성증권

(참고) 외국인 투자자 한국 주식 보유

2017년 9월말 현재 한국 증시 시총 중 외국인 34.4% 보유

- ▶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 불구, 외국인 보유 비중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 9월말 현재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 평가액 568조원

북한 핵 실험 vs. 외국인의 한국 주식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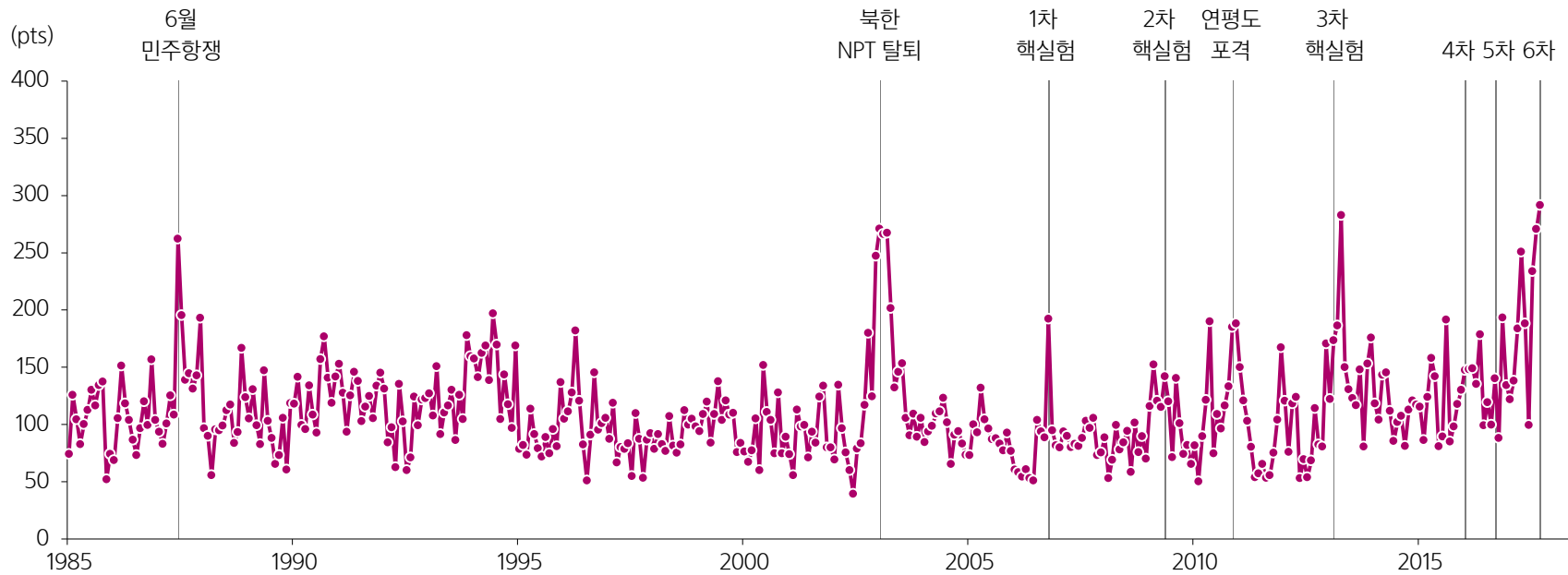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삼성증권

과거보다 한반도 위험 수준 크게 상승

북한의 핵 무력이 완성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과거와 다른 상황

- ▶ 9월 핵실험 이후 한국 GPR index 사상 최고치 기록
향후 갈등고조, 대화 개시 여부에 따라 위험 인식 달라질 것

Geopolitical Risk Index :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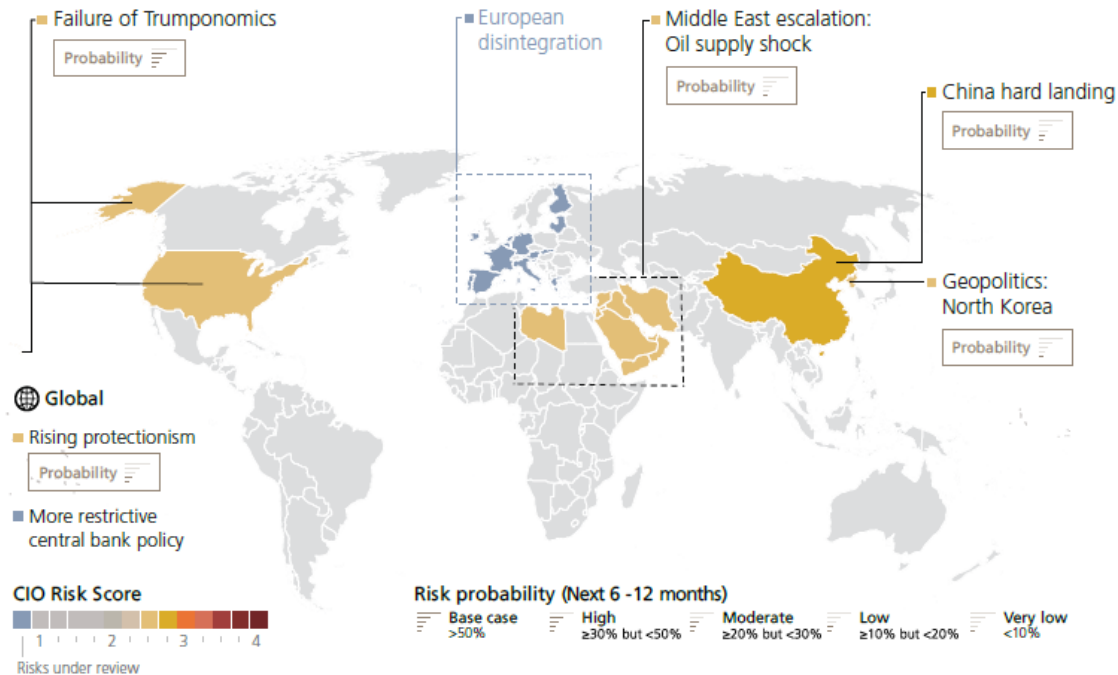
자료: FRB (Caldara and Iacoviello)

주요 기관 아직은 한반도 위험 '낮은 수준'으로 평가

물리적 충돌 가능성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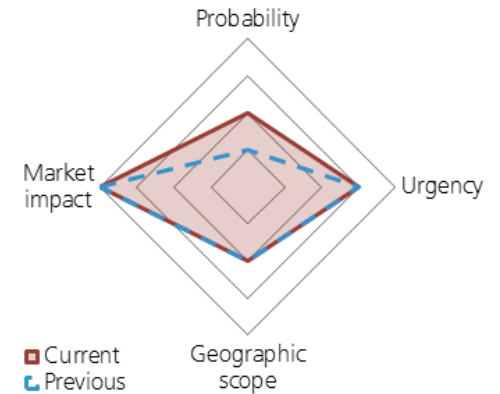
- ▶ Moody's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관여하는 무력충돌 가능성 기준 'Very Low'에서 'Low'로 상향 조정 (9월 7일)
- ▶ UBS는 북한 관련 tail risk의 발생 확률은 기존 '1'에서 '2'로 상향 조정했으나, 총 위험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 (8월)

UBS Global Risk Map: CIO risk score (2017년 8월)



참고: UBS, Global risk rad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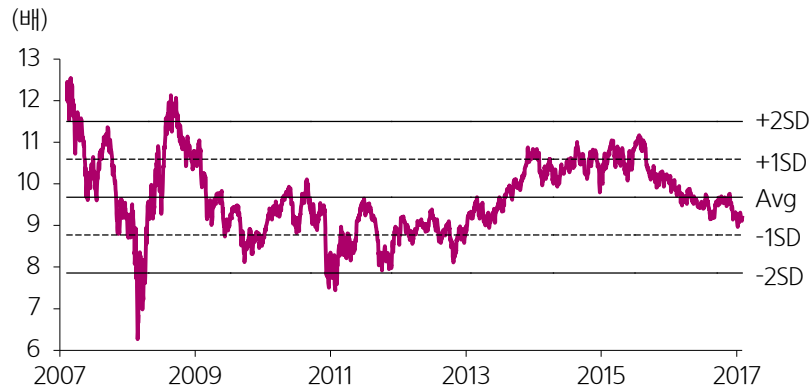
North Korea tail risk (2017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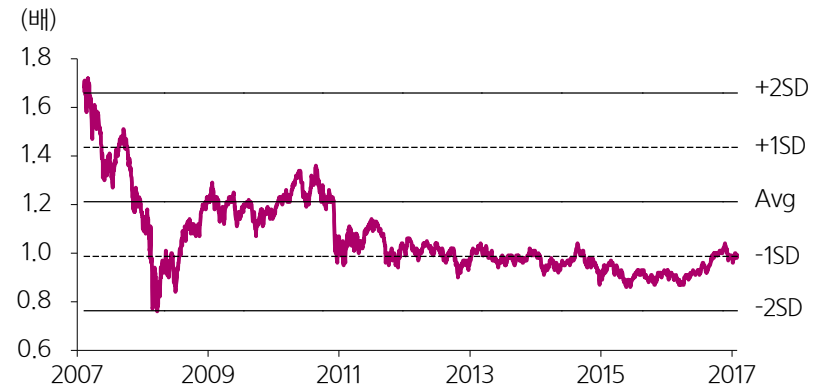
참고: Distance from center (1-4) represents the dimension score.
The CIO risk score is an average of the four risk dimensions.
자료: UBSO

지정학적 위험으로 한국 증시 과도하게 할인 중

KOSPI 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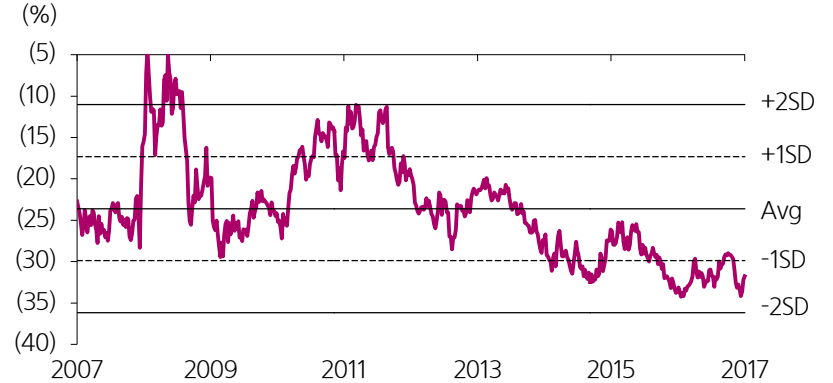
KOSPI P/B



EM 대비 할인율 : MSCI Korea P/E



EM 대비 할인율 : MSCI Korea P/B



참고: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
자료: WiseFn,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참고: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
자료: WiseFn,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II. 북한 경제와 대북 제재의 유효성 논란

II-1. 북한의 경제 현황

II-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 UN과 미국의 제재를 중심으로

II-3. 대북 경제제재의 유효성 검토



- ▶ **국제제재 불구 경제 개선:** 2016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3.9%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및 비공식 부문의 자생적 시장 발전, 전년도 농업생산 및 대외무역 부진의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기준 북한의 경제규모(명목GDNI)는 36조 4천억 원으로 남한의 1/45 수준이다.
- ▶ **1차 산업 중심의 개도국형 산업구조 지속:** 2004년 대비 2016년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부문의 비중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업, 중화학 공업의 비중은 확대되었고, 경공업 부문은 미세 증가하였다. 2016년 전기, 가스, 수도업의 성장은 전년도 가뭄에 따른 수력발전 감소의 기저효과이며, 광공업 부문의 성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 ▶ **무역구조 편중 심화:** 대중 교역 의존도가 2016년 기준 92.7%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그 뒤를 러시아, 인도, 태국이 따르고 있다. 식량 및 에너지로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는 무역 역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 특히 무연탄과 석유, 금속 등으로 이들의 비중이 전체의 84% 이상을 차지한다. 수입은 품목별로 다변화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석유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지는 추세다.
- ▶ **자율화 및 시장경제화의 시도:** 1990년대 경제난으로 당국의 계획경제 및 배급제는 상당 부분 와해되고, 시장경제시스템의 도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공동작업농장의 작업반 단위를 세분화하여 작업 효율성을 부여하고, 초과생산물과 기업 유보이익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등이다. 사금융 활성화와 외자유치 방면에서도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으나,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 지속으로 실질적 투자 유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제성장률

2016년 경제 성장률은 2005년 이후 최고치(3.9%)로 같은 기간 남한의 성장률(2.8%)을 상회

-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 및 자생적 시장화(비공식 부문)의 영향
- ▶ 2016년 기준 북한의 경제규모(명목GNI)는 36조 4천억 원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1만원으로 남한의 4.6% 수준

북한 경제 성장률

(전년대비, %)



자료: 한국은행

북한 GNI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은행 (원화 기준)										
GNI (조원)	24.8	27.3	28.6	30.0	32.4	33.5	33.8	34.2	34.5	36.4
1인당 GNI (만원)	104	114	119	124	133	137	138	139	139	146
UN (달러 기준)										
GNI (십억원)	144	133	120	140	157	159	166	174	161	-
1인당 GNI (만원)	597	551	494	570	638	643	666	696	6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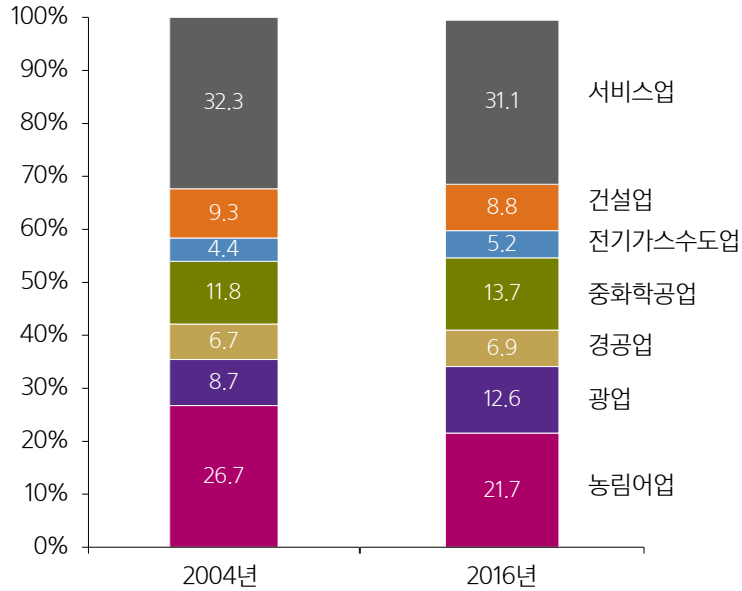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산업구조

1차 산업 중심의 개도국형 산업구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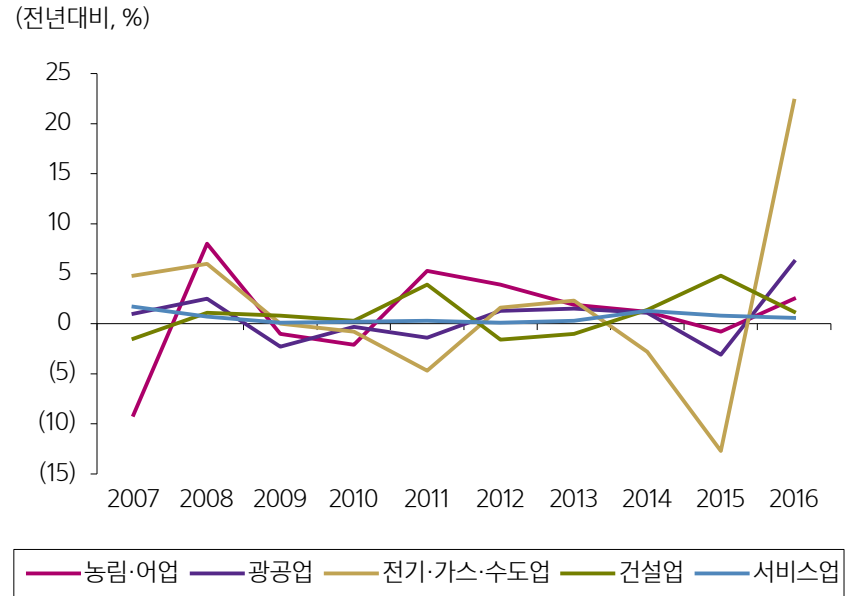
- ▶ 2016년 농림어업 부문 비중 축소, 광업/중화학 공업 부문 확대. 경공업 부문 미세 증가
- 전기·가스·수도업의 성장은 전년도 가뭄에 따른 수력발전량 감소의 기저효과
- 광공업 부문의 성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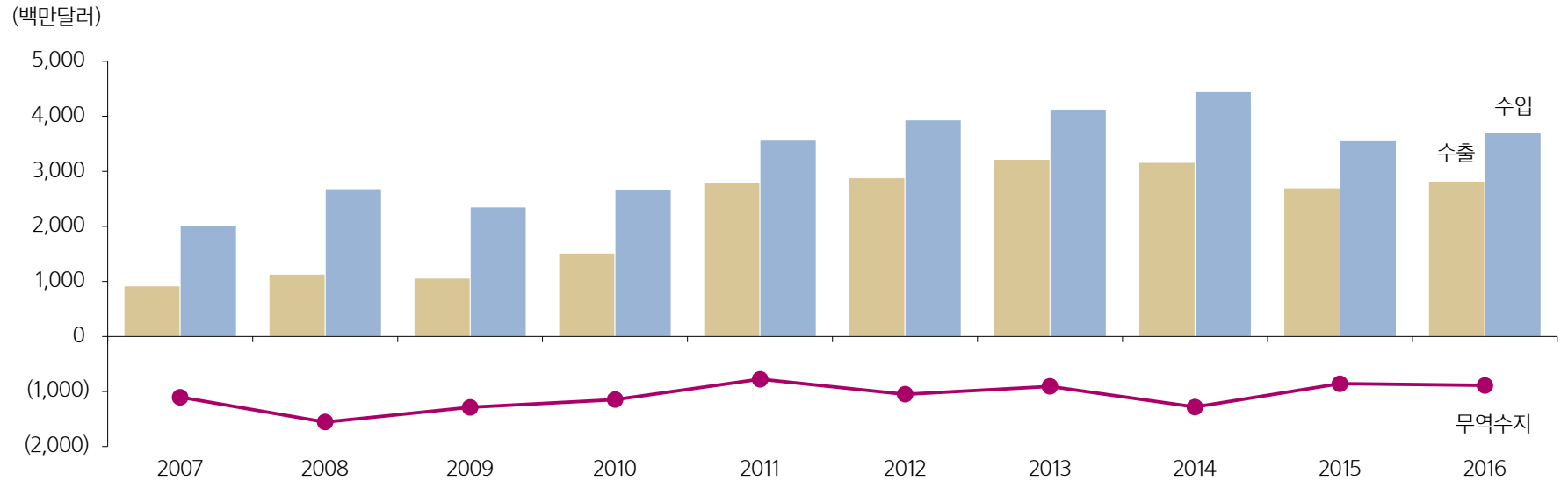
산업별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무역수지

수출입과 무역수지



(백만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918.8	1,130.2	1,062.8	1,513.6	2,789.4	2,880.1	3,218.4	3,164.7	2,696.5	2,820.9
수입	2,022.3	2,685.5	2,351.0	2,660.8	3,567.7	3,931.2	4,126.4	4,446.2	3,555.3	3,710.8
수출입계	2,941.1	3,815.7	3,413.8	4,174.4	6,357.1	6,811.3	7,344.8	7,610.9	6,251.8	6,531.7
무역수지	(1,103.5)	(1,555.3)	(1,288.2)	(1,147.2)	(778.3)	(1,051.1)	(908.0)	(1,281.5)	(858.8)	(889.9)

자료: KOTRA

주요 교역 시장과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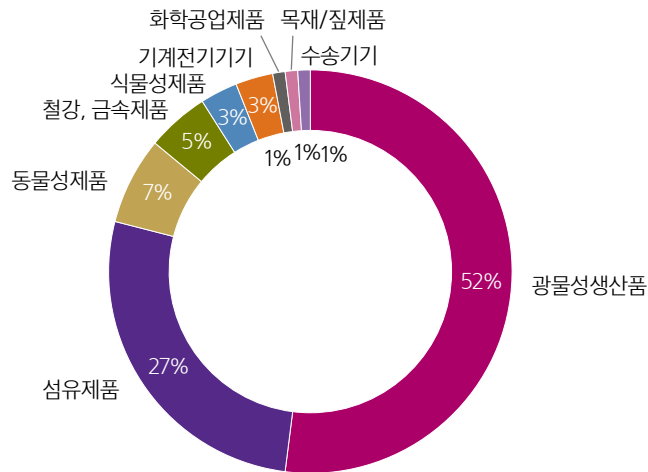
주요 교역 지역은 아시아

- ▶ 국가별로는 중국의 교역 의존도 매우 높음 (2016년 기준 92.7%)

식량 및 에너지난으로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는 무역 역조 현상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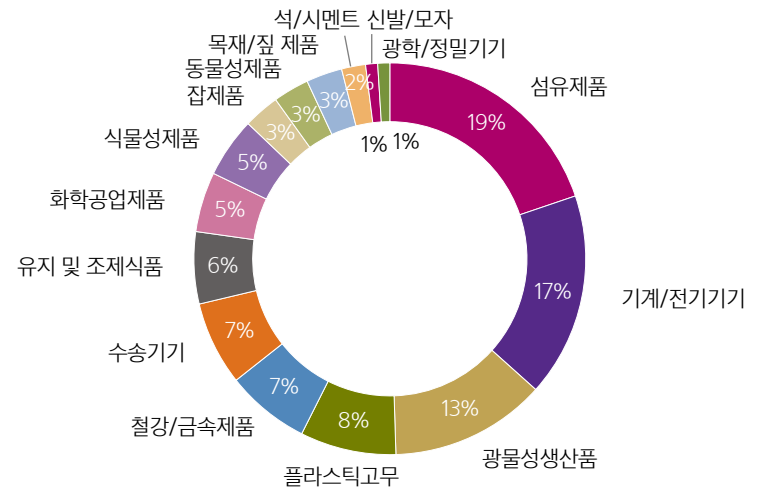
- ▶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특히 무연탄), 섬유, 금속 등으로 이들의 비중이 84% 이상을 차지
- ▶ 수입은 품목별로 다변화 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섬유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지는 추세

북한의 수출 품목 비중 (2016년)



자료: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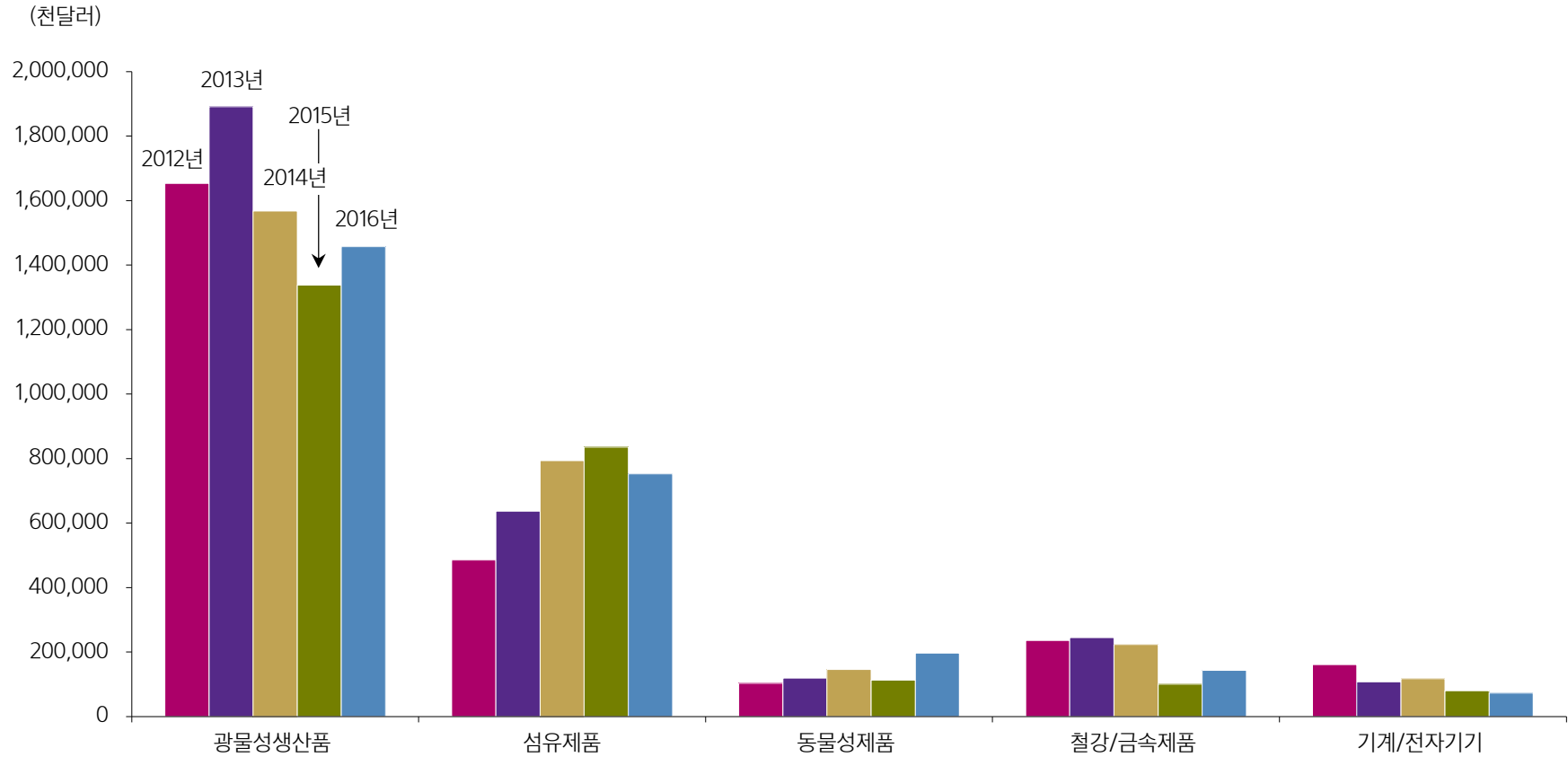
북한의 수입 품목 비중 (2016년)



자료: KOTRA

주요 수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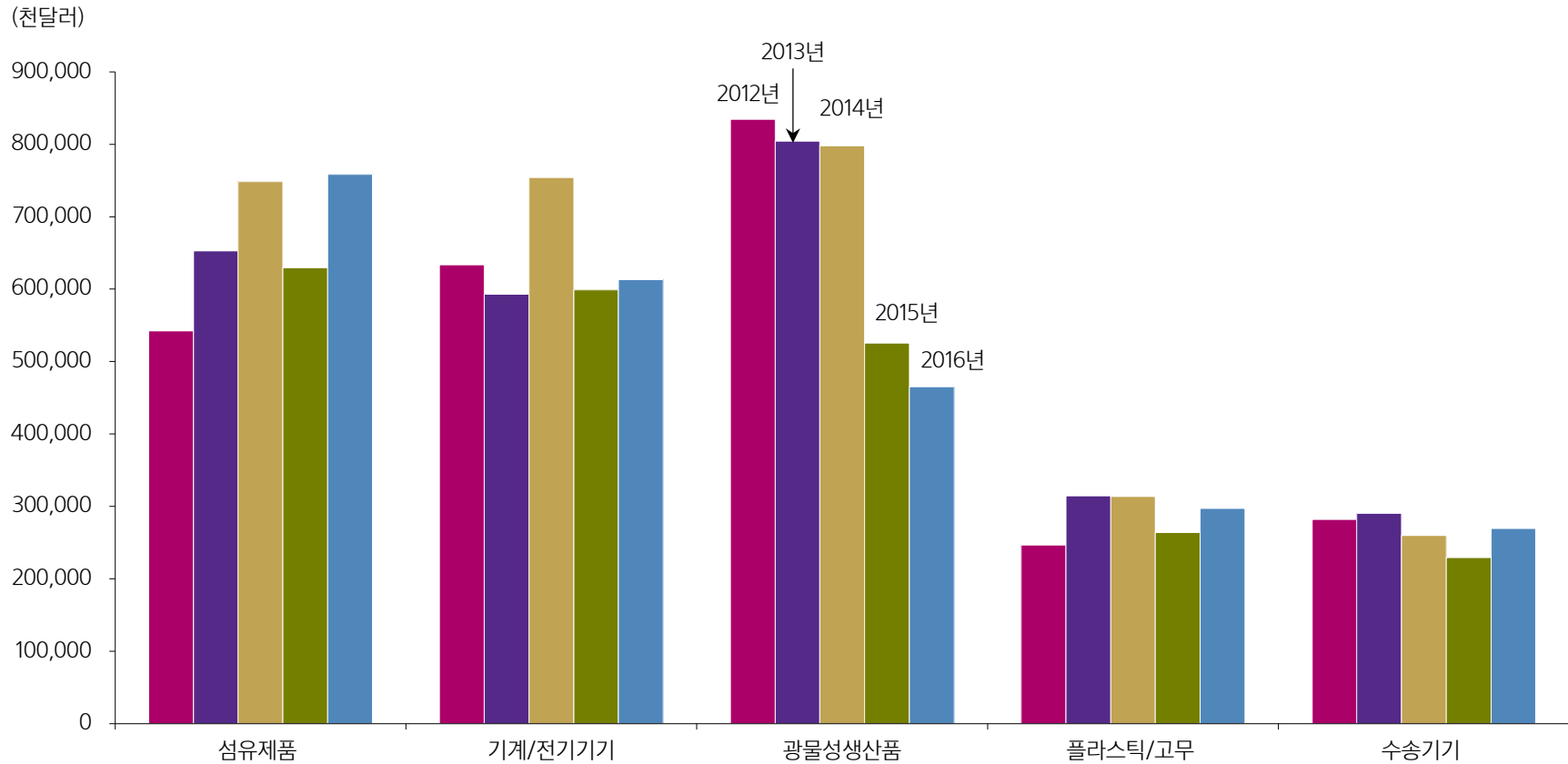
주요 5대 수출 품목 추이



자료: KOTRA

주요 수입 품목

주요 5대 수입 품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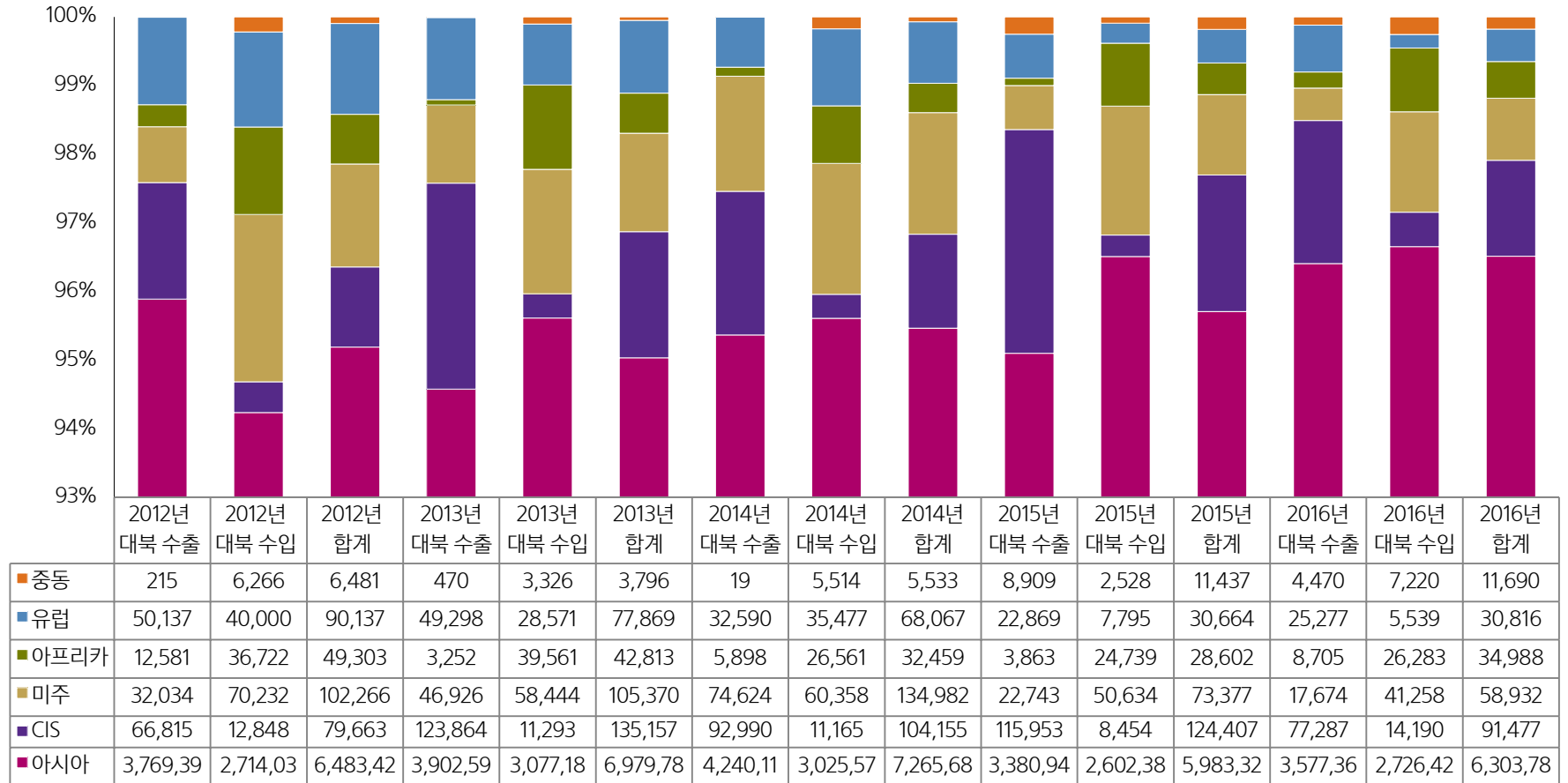


자료: KOTRA

주요 교역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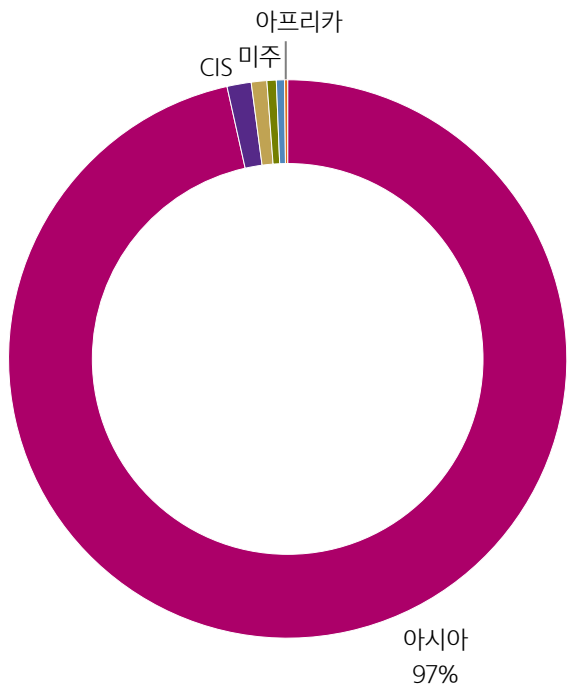
과거 5년간 지역별 대북 교역 추이

(단위: 천 달러)



주요 교역 지역 (2016년 기준)

지역별 교역 규모 및 비중



순위	지역명	대북 수출금액 (천 달러)	대북 수입금액 (천 달러)	합계금액 (천 달러)	비중 (%)	주요 교역국
1	아시아	3,577,365	2,726,424	6,303,789	96.51	중국
2	CIS	77,287	14,190	91,477	1.4	러시아
3	미주	17,674	41,258	58,932	0.9	브라질
4	아프리카	8,705	26,283	34,988	0.54	모잠비크
5	유럽	25,277	5,539	30,816	0.47	독일
6	중동	4,470	7,220	11,690	0.18	터키

자료: KOTRA

10대 교역 국가 (2016년 기준)

순위	국가명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 합계		비중 (%)	전년 순위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금액 (천달러)	증감률 (%)		
1	중국	2,634,402	6.1	3,422,035	6.1	6,056,437	6.1	92.7	1
2	러시아	8,853	46.5	68,047	(13.1)	76,900	(8.9)	1.2	2
3	인도	14,678	(35.3)	44,316	(17.7)	58,994	(22.9)	0.9	3
4	태국	2,945	(57.8)	46,795	8.7	49,740	(0.6)	0.8	4
5	필리핀	16,150	170.5	28,821	80.2	44,971	104.7	0.7	8
6	파키스탄	25,691	23.5	0	-	25,691	23.5	0.4	9
7	싱가포르	127	(90.5)	12,865	(54.8)	12,992	(56.4)	0.2	7
8	대만	12,190	(59.2)	507	422.7	12,697	(57.7)	0.2	6
9	스리랑카	8,958	52.8	3,528	160.6	12,486	73.0	0.2	15
10	우크라이나	3,826	89.3	7,685	(77.2)	11,511	(67.8)	0.2	5

자료: KOTRA

북한 경제정책 변화 (1) 자유화(liberalization)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 ▶ 경제계획의 분권화, 가격의 자유화, 기업 무역의 자율화

농업 생산 방식의 개혁, 시장경제 법제 구축 등

- ▶ 초과생산물과 기업 유보이익에 대한 자율성 부여
- ▶ 개인과 기업의 투자, 경영활동 허용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내용

구분	분야	내용
자유화	계획경제의 재정비	독립채산제, 경영 분권화 확대
	가격 자유화	기업 간 시장가격 기준 거래 허용
	무역 자유화	기업에 대한 무역 및 합영·합작권 부여
사경제화	농업 개혁	협동농장의 작업반 단위를 세분화
	국유기업 사유화	초과생산물과 기업 유보이익 활용 자율화
	사적 경제활동	개인이 상점, 식당, 운송 등 투자·경영 가능
법제도 개혁	시장경제 법제 구축	경제개발구법 제정
	재정 개혁	돈주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부활 움직임
	금융 개혁	기업의 현금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허용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재인용

북한 경제정책 변화 (2) 사경제화(privatization)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Privatization

- ▶ 1990년대 경제난으로 당국의 계획경제 및 배급제 사실상 와해되며 시장화 급진전
 신흥부유층(돈주)에 의한 사금융(私金融) 활성화, 토지이용권, 주택시장, 운수업, 통신업 등 사경제화

북한의 부문별 사경제화 진전 현황

구분	배경	현황
소규모 사경제화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 80% 이상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소규모 자발적 사유화 진행 중
토지이용권	식량난 지속으로 농민들의 식량 확보 필요 증대	농민들의 자가 소비 및 시장 판매 목적 토지 경작 확대
주택시장	주택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비공식적 주택 거래 활성화	기존의 주택 이용권 단순 거래에서 돈주에 의한 신규 주택 건설로 확대
운수업	철도 중심의 수송 체계 와해	여객/화물 수송 개인 운수업 확대
통신업	정부의 휴대전화 가입자 확대 의지	북한 인구 9명 중 1명은 휴대전화 사용 추정 (2014년 기준)
금융업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 능력 상실 돈주들의 부상	수요와 공급 구조를 갖추며 체계화·전문화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재인용

북한 경제정책 변화 (3) 외자유치 정책 변화 과정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은 2012년 이후 3차 준비기를 지나고 있음

- ▶ 1984년 합영법 도입 이후 본격 추진
- ▶ 개방 지역 범위의 확대, 특구 형태의 다양화, 투자 유치 대상의 다변화, 관련법 정비 등

북한 외자유치 정책 변화 과정

시기	연도	내용
1차 준비기	1984 ~ 1997	합영법 도입 (1984) : 외국인 투자 장려 목적 최초의 경제특구 설치 (1991) : 라진·선봉 자유무역지대
2차 준비기	1998 ~ 2011	남북 경험 본격화 (1998) :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험 본격화 신의주 특구 실패 (2002) : 중국과의 신의주 특구사업 추진 실패 나선·황금평 개발 (2010) : 중국과 나선·황금평·위화도 지대 공동 개발
3차 준비기	2012 ~ 현재	5대 중앙 특구 (나선·금강산·신의주·황금평·위화도) 개발 지속 경제개발구 대거 신설 : 21개 경제개발구 신설, 기능별로 육성 계획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재인용

북한 경제정책 변화 (4) 외자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실질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 ▶ 개방의 지역적 범위 확대, 특구 형태의 다양화, 투자유치 대상 다변화 등의 성과 도출
- ▶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 지속, 선진적 법제 미비 등으로 실질적 투자 유치 난망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구분	성과	한계
개방의 지역적 범위 확대	과거 남북 또는 북·중 접경지역 중심이었으나 최근 전국 단위로 확대 움직임	아직은 총 26개 특구 중 11개가 북·중 접경지역에 집중
특구 형태의 다양화	단일형·복합형 특구 개발 병행	실질적 투자 유치로 이어진 사례는 별로 없음
투자 유치 대상 다변화 노력	투자 대상 다양화 노력 지속	북핵 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한계
외자유치 관련 법제 구축	외자유치 관련 법제와 인프라 점차 진화	선진적 기업친화 법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재인용



II. 북한 경제와 대북 제재의 유효성 논란

II-1. 북한의 경제 현황

II-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 UN과 미국의 제재를 중심으로

II-3. 대북 경제제재의 유효성 검토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UN과 미국의 제재를 중심으로)



Summary

- ▶ **경제제재의 정의와 방법:** 경제제재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제재국의 정책 목표나 대상국의 특정 변화를 달성하려는 외교적 수단이다. 크게 무역제재와 금융제재로 나눌 수 있으며, 무역제재의 경우 일부 품목에 선별적인 제한을 가하며 대상국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출을 통제한다. 무역 대체국을 찾기가 어렵지 않아 대상국이 지불하는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제재의 고통이 일반 기업과 주민에게도 분산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금융제재는 통상 무역제재와 결합하여 사용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무역흐름을 방해하는 효과를 가진다. 대상국의 결제능력을 저하시켜 필요한 물자의 입수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제재가 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대체 금융시장을 찾기가 어렵고 제재의 고통이 대상국의 지도층 내지 정부 관리에 미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 ▶ **UN의 대북 경제제재:** UN의 대북 경제제재는 UN 헌장 7장을 근거로 한다. UN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과 관련된 조치를 담고 있으며, 이 중 41조는 UN 안보리의 비군사적 제재 형태 결정 및 회원국에 대한 실행 요구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UN 결의는 이전 제재 결의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7년 9월 11일, UN 안보리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11번째 결의안(제2375호)을 채택했으며, 이는 대북 유류 제한, 북한의 석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조치들을 도입함으로써 북한의 외화수입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는 행정명령과 의회에 의해 통과되는 법령으로 이루어지며,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국이 대북 제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9월 21일 발표된 행정명령 13810호로 사실상의 Secondary boycott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은행을 제재할 수 있으며,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선박과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는 등 북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해외교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제재란

경제제재의 정의

- ▶ 사전적 의미: 경제적 방법을 통해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 ▶ 통상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 수단
- ▶ 대외정책 목표를 위해 정상적인 무역관계나 금융관계 등을 의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 (Meghan L. O'Sullivan)
- ▶ 대상국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로 또는 위협상으로 경제자원을 철회하는 조치 (Chan and Drury)

“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제재국의 정책 목표나 대상국의 특정 변화를 달성하려는 외교적 수단”

경제제재의 목적과 유형

경제제재는 경제적 방법을 활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대외정책의 틀

- ▶ 제재의 목적은 경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에 가까움
대상국의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제재국의 입장을 제고시키고 잠재적인 정책이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

제재의 유형

- ▶ 목적성 경제제재(purposeful economic sanctions)
제재국이 대상국에 경제적 타격을 가해 반대하는 정책을 변경하도록 강요하려는 목적
- ▶ 경고성 경제제재(palliative economic sanctions)
대상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대상국의 정책이나 행동에 대한 제재국의 불만족을 알리기 위한 목적
- ▶ 응징성 경제제재(punitive economic sanctions)
대상국의 정책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대상국에 손해를 입히기 위한 제재
- ▶ 제한적 경제제재(partisan economic sanctions)
기업이나 무역단체 등의 제한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 예를 들어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식되는 것에 보복조치를 취하는 행위

제재의 목표는 범위가 넓고 유형도 다양

- ▶ 목표가 자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시된 목표와 의도된 목표가 상이한 경우 등이 상존

대북 경제제재의 궁극적 목적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정책의 변화

- ▶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반입 차단 및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조성

경제제재의 방법

무역제재 (가장 전형적인 수단)

- ▶ 모든 품목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보통 하나 내지 일부 품목에 제한을 가하는 선별적(selective)인 경우가 일반적
가능한 한 많은 물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거나, 대상국의 주요 외화 획득원이 되는 물자를 규제할 경우 효과적
- ▶ 대상국의 수입제한: 대상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가 대상국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수단
- ▶ 대상국의 수출통제: 대상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 구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도록 하는 수단
- ▶ 무역 대체국을 찾기가 어렵지 않아 대상국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 제재의 고통이 제재 대상국의 기업이나 주민에게도 분산됨

금융제재 (통상 무역제재와 결합)

- ▶ 대상국의 결제능력을 저하시켜 필요한 물자의 입수를 어렵게 하는 것
- ▶ 통상 무역제재와 결합하여 활용하나, 무역제재가 수반되지 않아도 상당 범위의 무역흐름 방해 가능
- ▶ 가장 보편적 형태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지이며, 가장 강력한 수단은 제재국 내 대상국 소유의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것
- ▶ 제재가 주는 불확실성 때문에 대체 금융시장을 찾기 어렵고 상당한 신용확보가 필요해 대체 시장을 찾아도 높은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
- ▶ 제재의 고통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층이나 정부관리에 더 큰 영향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과 여론을 제재국에 유리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UN (다자제재)

- ▶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채택
- ▶ WMD 및 핵실험과 관련된 무역/금융/여행을 제약하는 것에 초점

미국 (양자제재)

- ▶ 안보위협, 공산주의, 테러지원국, WMD 확산 등 4가지 이유로 1950년대부터 시작
- ▶ 대북 금수조치, 원조 및 금융지원 금지, 북한 관련 자산 동결, 무기 수출입 금지, 관련자 입국 금지 등

일본 (양자제재)

- ▶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시작
- ▶ 2006년 대북 수입금지 및 관련 항공/선박 입항 금지, 관계자 입국 금지, 2009년 대북 수출 금지

한국 (양자제재)

- ▶ 2008년 금강산 민간인 피격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
- ▶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2016년 개성공단 중단 등

UN의 대북 경제제재 (1)

UN 헌장 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과 관련된 조치

- ▶ 7장 41조는 UN 안보리의 비군사적 제재 형태 결정 및 회원국에 대한 실행 요구 가능성을 명시

2017년 10월 15일 기준, UN 안보리는 북한을 대상으로 총 11번의 결의안을 채택

- ▶ 본격적인 대북 경제제재는 2006년 결의 1718호부터 시작
- ▶ UN 결의안은 이전 제재 결의에 더해 추가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됨

	825호 (1993.5.11)	1695호 (2006.7.15)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NPT) 탈퇴 ●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7월 5일, 북한이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미사일 발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T 탈퇴를 재고할 것을 요구 ● NPT 조약 이행을 재확인 ● IAEA의 안전조치 이행을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 ● 미사일과 미사일관련 물품 및 기술이 북한에 이전되는 것에 대한 주의 요청 ● 북한의 미사일과 이와 관련된 물품조달 및 미사일,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자산 이전에 대한 주의 요청

UN의 대북 경제제재 (2)

	제1718호 (2006.10.14)	제1874호 (2009.6.12)
주요 목표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핵무기 프로그램 및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 촉구 ● NPT와 IAEA 안전규정 복귀 요구 ● 6차 회담 복귀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도미사일,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 촉구 ● NPT와 IAEA 안전규정으로 복귀 요구 ● 6자 회담 복귀 촉구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동참 요구 ● 1718호 이행 촉구
무기 금수 관련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 대한/북한으로부터 아래 품목의 이전 금지, 관련 용역 제공 금지;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 전자, 장갑차,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등 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8호의 금수품목을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로 확대 ● 다만 북한의 소형무기 및 경화기 수입 예외 인정, 북한에 소형무기 및 경화기를 이전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최소 5일 전 위원회에 통보
화물 검색 및 해운,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유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 가는 북한 유출입 화물 회원국 영토 내에서 검색 ● 공해상에서 의심 선박 검색 강화, 금지 품목 적발 시 압류 및 처분
운송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 등 지원 제공 금지
금융, 무역 등 경제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들은 북한 핵,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내 자금과 금융 자산, 경제적 자원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MD,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가능성 있는 금융거래 및 무역관련 공적 금융지원 제공 금지 ● 인도주의, 개발, 비핵화 등 목적의 무상원조 등만 허용 ● 이외의 무상원조, 양허성 차관 등의 신규 북한 제공 금지
제재대상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출입국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단체 5개와 개인 5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

UN의 대북 경제제재 (3)

	제2087호 (2013.1.23)	제2094호 (2013.3.7)
주요 목표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제재 확대 강화 ● 북한 추가 도발 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 ●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 제재위원회 업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세밀화 ● 우리농 농축 프로그램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최초 명시 ● 미사일, 핵 실험 시 추가적 중대 조치 취할 것을 강력 표명
무기 금수 관련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ch 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안보리 결의가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미사일, 화학무기 관련 금수 품목 7개 추가 ● 모든 회원국에 대해 금지활동, 결의 위반, 제재회피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 유출입 품목의 공급, 판매, 이전을 막도록 하는 Catch-all 촉구
화물 검색 및 해운,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상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영토 내에서 북한 유출입 금수 품목 적재 의심 화물 검색 의무화 ● 공해상에서 검색에 불응 시 회원국 항구 입항 불허
운송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수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촉구
금융, 무역 등 경제관련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금융기관(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 포함)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bulk cash) 이용 수법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대량 현금 이전 통제 포함하여 WMD 및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의무화 ● UN 결의 반하는 북한 은행의 회원국 내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활동 금지 촉구 ● 결의안 위배 대북 무역관련 공적금융지원서비스 제공 금지
제재대상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4명, 단체 6개 제재 대상 추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3명, 단체 2개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

UN의 대북 경제제재 (4)

	제2270호 (2016.3.2)	제2321호 (2016.11.30)
주요 목표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자금줄 차단 통해 제재 실효성 확보 모든 북한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화 북한산 광물 수출입(민생목적 제외) 금지 전면적 무기 금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결의안 틈새 보완을 통해 제재 실효성 증대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및 수출 금지 품목 추가 북한 내 제3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WMD 연관성 조항 삭제)
무기 금수 관련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성발사, 우주발사체,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협력 금지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전면적 무기 금수조치 회원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WMD 기술 습득 원천 차단 목적)
화물 검색 및 해운,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국의 모든 북한 유출입 화물검색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인 여행용 수하물 검색 의무화 및 철도/도로 화물 검색 의무 강조 북한에 대한 선박, 항공기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운송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선박, 항공기 등록, 보험 제공 금지
금융, 무역 등 경제관련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거래 시 북한 외교관 및 대표 추방 회원국 내 북한 은행 지점, 사무소 신규 개설 금지 회원국 금융기관 북한 내 신규활동 금지 WMD 관련 노동당 소속단체 자산 동결 북한산 석탄, 철광석, 희토류 등 수출, 공급, 이전 금지 (민생목적 제외) 대북 항공유 판매, 공급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탄 수출액 4억불 또는 수출량 750만톤 초과 금지 (낮은 기준 적용) 수출 금지 품목 추가(은, 동, 아연, 니켈 등 광물 및 조형물) 모든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 및 90일 내 기존 사무소, 계좌 폐쇄 (이전 결의안의 WMD 연관성 조항 삭제)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외화벌이 착취 우려 제기
제재대상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16명, 단체 12개 제재대상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WMD 개발 또는 무기 조달 관여 북한 인사 11명 및 단체 10개 추가 지정

UN의 대북 경제제재 (5)

	제2356호 (2017.6.2)	제2371호 (2017.8.5)
주요 목표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9월 9일 이후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무기 개발 활동 규탄 자산동결과 국외 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명단 확대에 초점 새로운 내용을 담기 보다는 기존 결의 강화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7월 4일, 7월 28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 석탄 등 수출 규제로 상당량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 발생 예상
무기 금수 관련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WMD 및 재래식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통제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로 WMD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 차단
화물 검색 및 해운,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제재위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금융, 무역 등 경제관련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 도입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제재대상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 활동 및 이를 위한 자금원 확보 등에 관여해온 단체 4개, 개인 14명 신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 단체 4개 신규 제재대상 지정

UN의 대북 경제제재 (6)

제2375호 (2017.9.11)	
주요 목표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 조치 도입 ● 이번 결의로 북한의 외화수입원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유류공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유제품: 올 4분기 50만 배럴, 내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 (현재 북한에 공급되는 양의 55% 감축 전망) ● 원유: 결의안 채택 시점의 現 수준 유지 (現 원유 공급량 400만 배럴로 추산) ●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
제재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1명, 단체(노동당 소속) 3개 추가: 개인은 여행금지외 자산동결, 단체는 자산동결 ● 김정은, 김여정 남매는 직접 제재대상에 지명되지 않음
해상 검색 및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품목 적재의심에 대해 기국 동의 하에 공해상에서 검색 가능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 ●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해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북한 해외 노동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북한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 기존 노동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 연장 안됨
북한 섬유제품 수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직물, 의류 완제품/부분품 수출 금지
북한과 합작사업 전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합작 사업체는 120일 내에 폐쇄해야 함 ● 공공 인프라 사업은 제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 법적 기반 (1)

- ▶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과 의회에 의해 통과되는 법령(statutes)으로 이루어짐
- ▶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이 대북제재의 중심적 역할 수행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국가 안보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테러리스트, 국제마약단체,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활동에 대한 제재 관리 및 집행

제재 배경	제재 내용	법적 기반
	물품 및 서비스 수출 제한	수출 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 증가로 이어지는 국제기구에 대한 비례적 분배 제한	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일반 대외 정책	양자간 지원 금지	대외활동수권법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경제지원기금 금지	대외활동수권법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국방부 기금 금지	국방예산법 (Department of Defense Appropriations 2016)
외교 관계 단절	대부분의 대외지원 및 농작물 판매 금지	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국가안보통제, 공산주의	수출 물품 및 서비스 제한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공산주의	대외지원 금지	대외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마르크스 레닌주의 국가에 수출입은행 기금 제공 금지	수출입은행법 (Export-Import Bank Act of 1945)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지원 금지	브레튼우즈 협정법 (Bretton Woods Agreements)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 법적 기반 (2)

제재 배경	제재 내용	법적 기반
공산주의	수출 물품 및 서비스 제한	수출 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공산주의	무역 특혜 조항 금지	무역법 (Trade Act of 1974)
비시장경제와 이주통제	무역특혜 조항 금지	무역법 (Trade Act of 1974)
비시장경제와 이주통제	무역특혜 조항 금지	무역법 (Trade Act of 1974)
공산주의와 시장 교란	무역특혜 조항 금지	무역법 (Trade Act of 1974)
공산주의	외교 목적으로 미국에 자산획득 금지	국무부 기본 권한법
테러리즘, 미국에 비협조	국방 물자나 서비스 관련 거래 금지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과도한 군비사용 및 인권침해	특정 부채 감면 금지	기타 예산법 (Miscellaneous Appropriations)
국가비상, 대량살상무기 확산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하여 지정된 개인 및 기관 자산 동결	대외경제비상조치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가비상법 (National Emergencies Act)
국가비상	교통 관련 수출입 및 거래 금지	대외경제비상조치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가비상법 (National Emergencies Act)
국가비상,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천안함 사태, 핵 및 미사일 발사 시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물품 및 화폐 위조, 돈 세탁, 밀수, 마약 거래, 지역 안보 위협	자산 동결 제재 대상과 이들을 대신한 개인 및 기관의 자산 동결	대외경제비상조치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가비상법 (National Emergencies Act) 유엔참가법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 of 1945)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 법적 기반 (3)

제재 배경	제재 내용	법적 기반
유엔 안보리의 수입 제한 실시	행정명령 13570에 규정된 경우 제외, 북한으로부터의 상품, 서비스, 기술의 직간접적 수입 금지	대외경제비상조치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가비상법 (National Emergencies Act) 유엔참가법 (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 of 1945)
사이버 테러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인권침해 등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위	북한 당국이나 노동당 관계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	대외경제비상조치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가비상법 (National Emergencies Act)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미사일	다양한 거래 금지-미국 정부 계약, 수출 라이선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핵농축 이전	대외 지원 및 군사 원조 금지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핵재처리 이전, 핵 발사	인도지원을 제외한 대외 지원, 군사 원조, USG 방어 판매 및 이전, USML 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 라이선스, 미국 정부의 신용 제공, 국제은행에서의 지원, 농업관련 신용 및 금융, 미국 상업은행 금융, 특정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관련 라이선스 금지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핵 발사	수출입 은행 금융 금지	수출입은행법 (Export-Import Bank Act of 1945)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핵 발사	수출입 은행 금융 금지	대외활동수권법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 법적 기반 (4)

제재 배경	제재 내용	법적 기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미사일	다양한 거래 금지 미국 정부 계약, 수출 라이선스, 미국으로의 수입 등	수출 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다양한 거래 금지 무기 판매 및 수출, 이중용도 수출, 계약조달, 국제은행에서의 지원, 수입, 신용, 대여권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인신매매	인도지원이 아닌 대외지원, 문화 교류,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지원 금지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
위조, 돈세탁	특정 상업은행 거래 금지	미국 애국법 (USA Patriot Act)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 행정명령

행정명령	일자	내용
13382호	2005년 6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및 지원자들의 자금 동결
13466호	2008년 6월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정부 소유 자산 동결
13551호	2010년 8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466호를 확대 미국 내 혹은 국민이 소유한 북한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
13570호	2011년 4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551호 확대 UN 결의 1718호, 1874호와 관련된 수입 금지 실시
13687호	2015년 1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정부 및 노동당 관리와 산하 단체, 북한 정부를 재정적/물질적/기술적으로 지원한 개인 등의 자금 동결, 입국 금지
13722호	2016년 3월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북제재강화법 시행령 성격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보완
13810호	2017년 9월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 재무장관의 재량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선박,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드나들 수 없음 건설, 에너지, 어업, 정보기술, 의료, 광업, 섬유, 운송 활동까지 제재 분야 확대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



II. 북한 경제와 대북 제재의 유효성 논란

II-1. 북한의 경제 현황

II-2.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 UN과 미국의 제재를 중심으로

II-3. 대북 경제제재의 유효성 검토



- ▶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2016년까지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2005년 이래로 대북 경제제재의 강도를 높여왔으나, 북한 경제는 제재 외의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으며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2016년까지 건조한 흐름을 보인 대중 수출과 비공식 부문의 자생적인 시장 발전이 경제성장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재 강화 후에도 북한의 시장 환율과 상품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 ▶ **한계:**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는 UN 제재의 경우 회원국의 제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회원국들의 실행 의지 또한 높지 않으며, 회원국들이 저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재의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인 중국의 경우 대북 제재 실행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해옴으로써 제재의 유효성을 낮추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경우 북한과의 직접 교역 규모가 미미했기 때문에 Secondary boycott이 없이는 제재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 ▶ **향후 전망:** 올해 제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UN 결의 제2375호와 미국 행정명령 13810호 이후 제재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Secondary boycott 도입 이후 중국은 대북 석유제품 수출 제한 및 북한산 석유제품의 금수 조치를 발표했고, 현존하는 모든 북중 합작, 합자 기업의 폐쇄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수출물량 70%가 차단되며 북한의 외화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제품의 수입을 제한한 UN 결의 제2375호 이후 북한 내 석유가격이 급등하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식량가격에는 아직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운임 상승 및 식량 가격의 상승 또한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제재의 파급 경로



수출통제

광물 수출 제한 및 금지 → 외화 수입 감소 → 국가 재정 규모 축소 → GDP 감소, 제재 품목 관련 산업 성장성 저해, 화폐가치 절하



수입제한

제재 대상국의 물자 부족 사태 초래 → 해당 및 관련 품목의 물가 상승 야기, 투자 위축



금융제재

외화 유동성 감소 → 자금 조달 및 금융부문의 거래 비용 상승, 투자 위축

제재 강화에도 북한 경제는 성장

국제사회는 2005년 이래로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여 왔으나, 북한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시현

▶ 북한 경제성장률은 대북제재 外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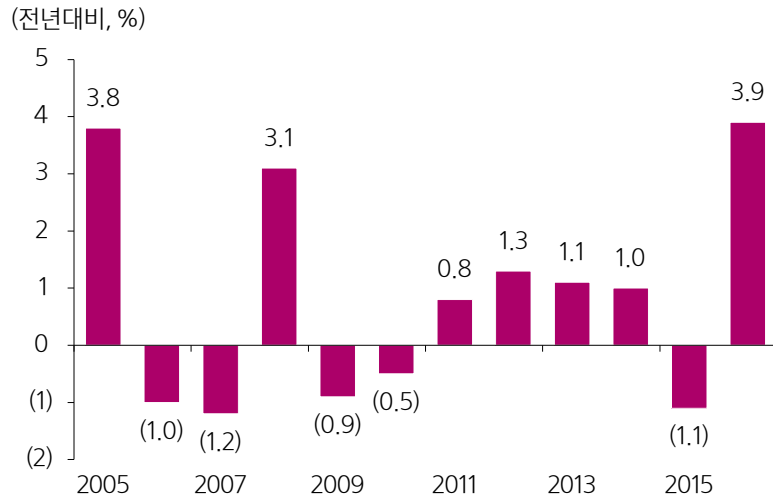
2006~7년 성장률 하락은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림어업 생산 감소 영향

2009년은 시장통제와 화폐개혁, 남북교역 감소 등으로 성장률 하락하였으나 줄어든 남북교역을 북중무역이 대체하며 성장세 회복

2015년의 마이너스 성장은 원자재 가격 하락, 가뭄에 따른 농업생산성 저하, 수력발전량 감소에 따른 전력난, 공적 부문의 대규모 노력 동원 등이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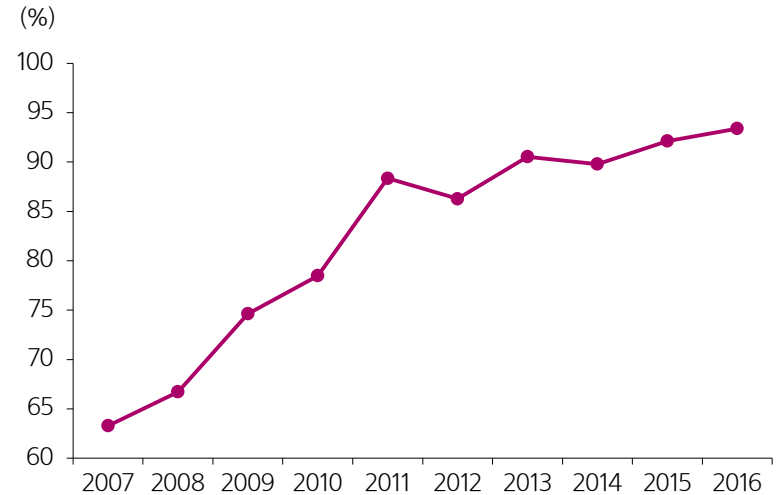
▶ 견조한 대중 수출과 비공식 부문의 자생적 시장 발전이 경제성장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북한 경제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북한의 對중국 수출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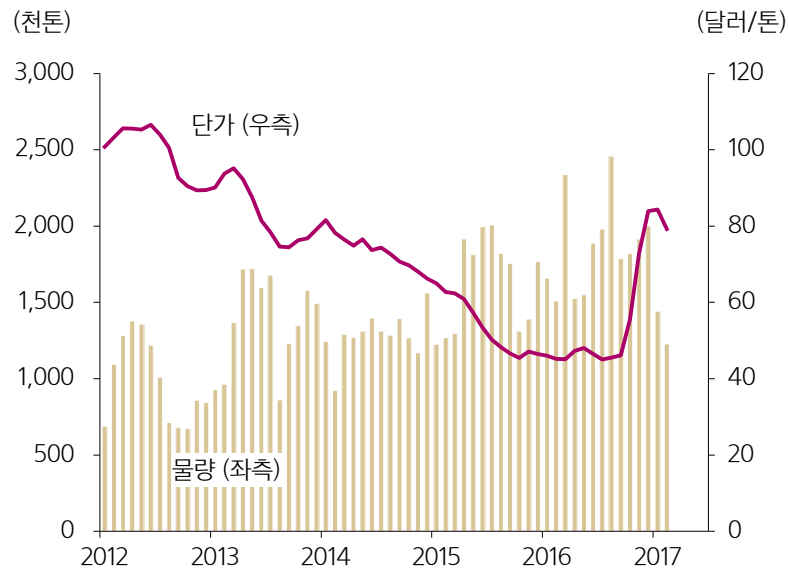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KOTRA, KDI

북한에 대한 흑기사 역할을 수행해온 중국

북한의 대중 수출은 2016년까지 견조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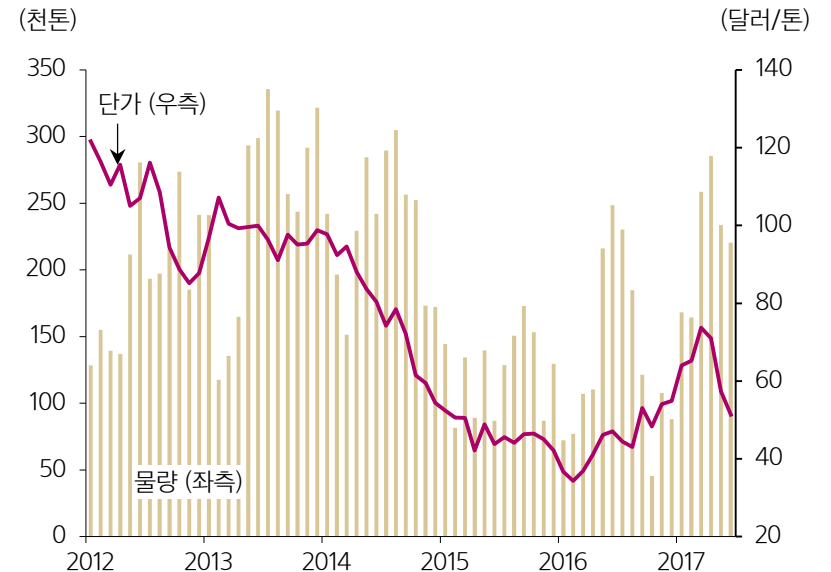
- ▶ 광물 수출 금지를 포함한 UN 결의 제2270호 발표 이후 대중 무연탄 수출물량 감소하기 시작
- ▶ 이후 남한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대중 수출 물량 재차 증가. 여기에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며 2016년 대중 무연탄 수출 큰 폭 증가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물량과 단가



참고: 2017년 3월 이후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의 중국 向 무연탄 수출 중단
 자료: 한국은행, KOTRA, KDI

북한의 대중 철광석 수출 물량과 단가



자료: 한국은행, KOTRA, KDI

북미간 직접적 경제관계 미미, Secondary boycott이 필요한 이유

미국은 독자적 대북제재를 시행함과 동시에 UN의 다자제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 그러나 북미간 교역이 매우 미미하여 미국의 대북제재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

북미간 교역액은 매우 적으며 연도별로 추세적인 패턴을 보이지 않음

미국의 대북 수입은 거의 없으며, 주요 대북 수출 품목은 인도적 차원의 곡물과 구호품이 대부분

미국의 대북제재가 유효성을 득하기 위해서는 Secondary boycott이 가능해야

미국의 대북 무역

(천달러, %, kg)	수출				수입				무역 수지
	금액	전년대비 증감	중량	전년대비 증감	금액	전년대비 증감	중량	전년대비 증감	
2006년	3	(100)	0	0	0	(100)	0	0	3
2007년	1,728	57,500	0	0	0	0	0	0	1,728
2008년	52,151	2,918	0	0	0	0	0	0	52,151
2009년	903	(98)	0	0	0	0	0	0	903
2010년	2,867	217	0	0	8	0	0	0	2,859
2011년	9,406	228	4,501	0	0	(100)	0	0	9,406
2012년	11,952	27	1,461	(68)	0	0	0	0	11,952
2013년	6,583	(45)	2,550	75	0	0	0	0	6,583
2014년	24,029	265	1	(100)	0	0	0	0	24,029
2015년	4,752	(80)	0	(100)	0	0	0	0	4,752
2016년	139	(97)	0	0	0	0	0	0	139
2017년 1~7월	3	(98)	0	0	0	0	0	0	3

자료: KOTRA

북한의 무기 수출 제재 효과 존재

UN은 2006년 결의 제1718호부터 북한의 무기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

- ▶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방지하고 외화 획득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함임
- ▶ 제재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는 UN 결의 제2270호를 통해 재래식 무기를 비롯한 전면적인 무기 금수를 결정
 제1718호 이후 무기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
 특히 제2270호가 나온 2016년 무기수출액은 0원으로 기록되며 제재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
 그러나 무기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0.6% 수준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외화 획득 통로 차단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

북한의 무기 수출액 (2000~2010년)

(달러, %)	북한 무기수출액 (A)	북한 총수출액 (B)	비중 (A/B)
2000년	2,125	1,041,829,630	0.00
2001년	740,781	960,685,600	0.08
2002년	294,214	1,064,158,930	0.03
2003년	3,965	963,217,095	0.00
2004년	7,477,333	1,280,591,909	0.58
2005년	1,396,499	1,428,764,172	0.10
2006년	3,117,064	1,872,711,310	0.17
2007년	45,500	1,724,191,456	0.00
2008년	574,901	2,259,415,899	0.03
2009년	3,500,007	1,449,753,080	0.24
2010년	1,730,098	2,024,110,373	0.09

자료: KDI, UN Comtrade

북한의 무기 수출액 (2011~2016년)

(달러, %)	북한 무기수출액 (A)	북한 총수출액 (B)	비중 (A/B)
2011년	10,000	2,788,590,000	0.00
2012년	88,000	2,880,104,000	0.00
2013년	282,000	3,218,382,000	0.01
2014년	32,000	3,164,650,000	0.00
2015년	244,000	2,696,538,000	0.01
2016년	0	2,820,914,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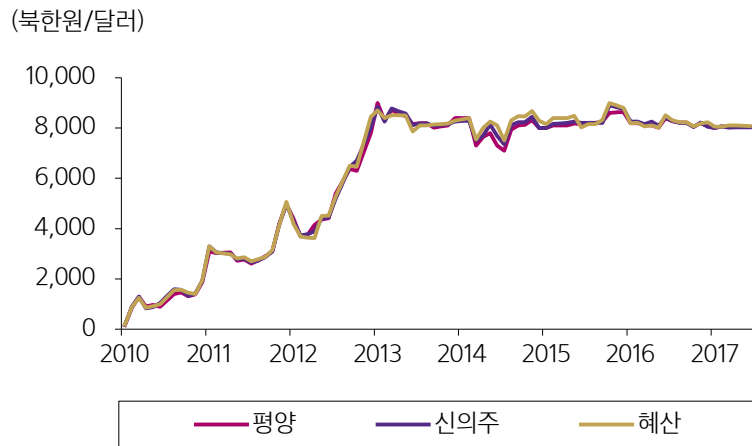
자료: KOTRA

경제제재의 북한 시장환율 및 상품 가격 영향 제한적

경제제재 강화에도 북한의 쌀 가격 및 시장 환율은 안정적인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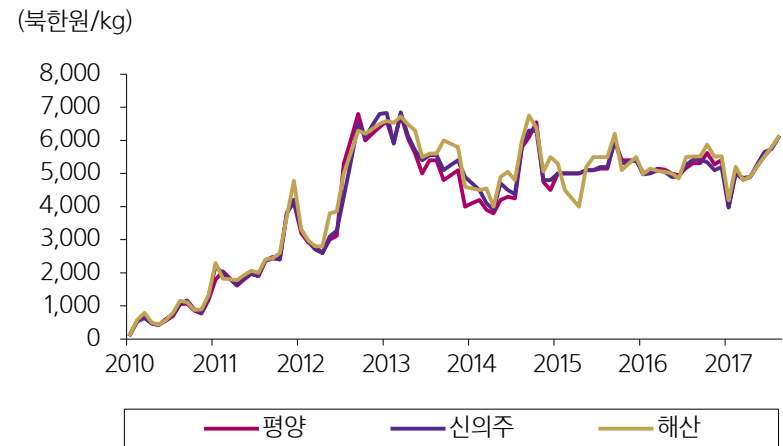
- ▶ 북한의 쌀 가격 및 시장 환율은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급등했으나 2012년 4분기를 정점으로 안정화
- ▶ 가격 안정의 원인
 - ① 화폐개혁 이후 북한 주민들이 원화보다는 달러화나 위안화를 선호하면서 필수품 구매 시에도 외화를 사용
 - ② 북한의 곡물 생산 증가
 - ③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장마당을 비롯한 비공식 부문에 대한 국가 개입이 감소하면서 시장 거래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에 도달
- ▶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쌀 가격의 경우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모습

북한의 시장환율 추이



참고: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단행
 자료: 데일리NK, KDI

북한의 시장 쌀 가격 추이



참고: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단행
 자료: 데일리NK, KDI

대북 경제제재 평가 및 전망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

- ▶ UN 제재의 경우 회원국들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회원국들의 실행 의지가 강하지 않고 이해관계도 달랐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 특히 제재의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의 실행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
- ▶ 미국 제재의 경우 미국과 북한의 직접적인 경제 교류가 적었던 점이 한계로 작용. Secondary boycott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 오랜 제재로 북한의 저항력이 높아짐; 전력수급 다변화, 자생적 시장 발달 등

최근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는 중

- ▶ 미국의 Secondary boycott 도입 이후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본격화
9월 23일 대북 석유제품 수출 제한, 북한산 섬유제품 금수 조치 발표
9월 28일 현존하는 모든 북중 합작, 합자기업을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토록 통보
→ 북한의 수출물량 70%가 막히면서 외화수입의 급감이 예상됨
- ▶ UN 결의 제2375호 채택 이후 북한 내 석유가격 급등
휘발유 가격 연초대비 3배까지 급등
식량 가격에는 아직 큰 변동이 없으나 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운임 상승, 식량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도가 높아질수록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도 심해질 것
경제제재 강화 후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



III. 주요 사례 분석: 핵 개발, 통일

III-1. 주요국 핵 개발사

III-2. 독일 통일 case

주요국 핵 개발사



Summary

- ▶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케이스 모방 중:** 1970년대 이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들은 외교 분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지속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내/외부 요인으로 중도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국가들은 이후 지도자 암살, 외부 침공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등의 성공 케이스를 벤치마킹하여 자신의 발언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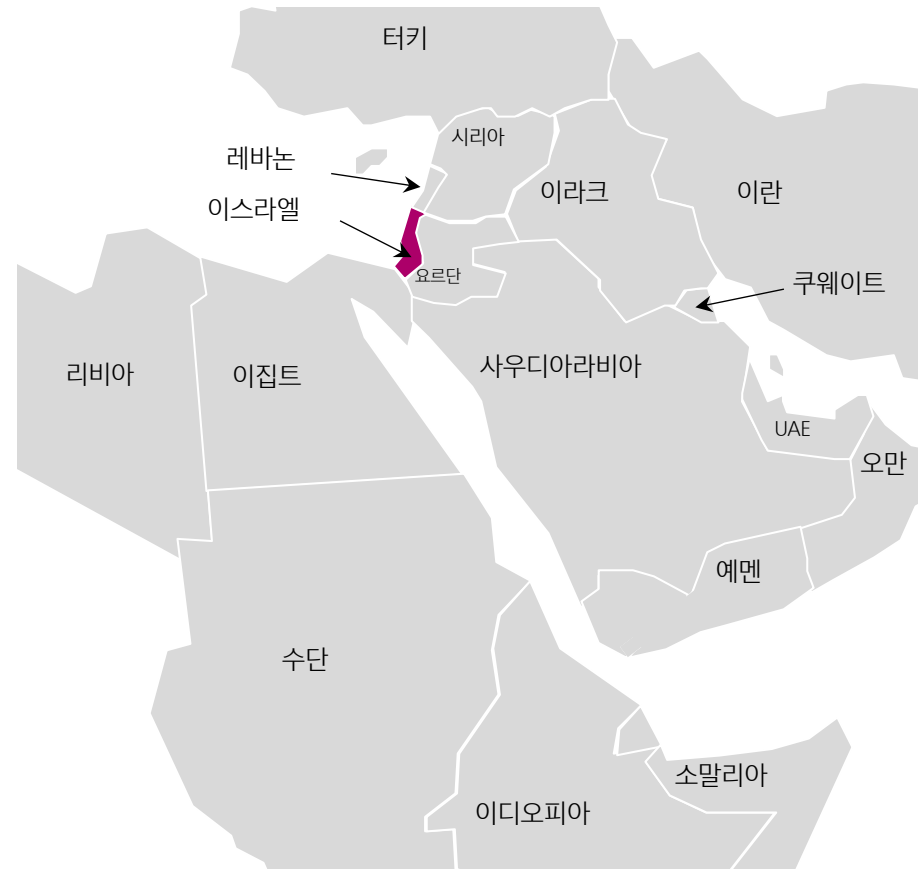
개발 시기	국가	내용	성공/실패
1953년	이스라엘	핵 개발 전후 전략적 모호성 유지, 미국의 암묵적 승인으로 핵 무장국 지위 유지	성공
1955년	중국	핵무기 개발 중 소련과의 분쟁, 이후 갈등 심화. 미국은 소극적 대처에 그침	성공
1962년	쿠바	소련제 핵 미사일 배치 기지 건설, 미국과 소련의 최후 협상 후 미사일 철수	성공
1970년대	인도	중국과의 국경 분쟁 및 중국 핵 개발로 본격 핵무기 개발 시작, 미국은 외교적 문제로 모호한 대응	성공
1970년대 후반	파키스탄	인도의 핵 개발에 따른 위협으로 핵무기 개발, 인도와의 국경 분쟁 심화	성공
1970년대 후반	남아공	주변국 공산화 및 국제적 입지 악화로 핵 개발 시작, 이후 개발 동인 해소되며 자진 폐기	성공
1980~90년대	이란	아랍권 주도권 확보, 이스라엘, 이라크 등 핵 개발국 대응 위해 핵무기 개발, 국제사회의 제재 끝에 협상 타결	성공
1979년	이라크	지속적 핵 개발 시도. 이스라엘 폭격으로 1차 시도 저지, 2차 시도 또한 국제적 압박으로 전면 중단	실패
1991년	우크라이나	소련 해체 후 소련의 핵무기 1/3을 우크라이나가 보유. 경제적 문제 등으로 핵 폐기 합의	실패
2002년	리비아	자발적으로 핵무기 포기선언 및 외교 관계 복원. 이후 리비아 민주화 운동 일어나며 독재자 카다피 암살	실패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배경

주변 아랍 국가들의 위협 대비 생존권 보장

- ▶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사우디 등 이스라엘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둘러싸인 형태
- ▶ 1948년 독립전쟁 후에도 주변 아랍 국가들과 여러 차례 전쟁
1955년 이집트와의 첫 번째 전쟁이 핵무기 개발의 결정적 계기
- ▶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어 재래식 전력 구축에 불리. 높은 징병률, 무기 개발 외에도 압도적인 전력 확보 필요

이스라엘 주변국 분포



자료: 삼성증권 정리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배경

1~4차 중동전쟁

제1차 중동전쟁 (1948)

- 이스라엘 건국과 이로 인한 팔레스타인 문제
- 아랍 연합군(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와의 전쟁
- 미국 지원으로 연합군 폭격하며 이스라엘 승리

제2차 중동전쟁 (1956)

- 이집트,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하며 점령
- 영국, 프랑스가 수에즈를 폭격하자 이스라엘도 함께 이집트 침공
- 미소 압력으로 군대 철수하며 종료

제3차 중동전쟁 (1967)

- 이스라엘, 아랍 게릴라 기지가 된 시리아에 대규모 공격
- 이집트, 대군을 시나이반도에 투입하여 아카바만 봉쇄
- UN안보리, 즉시 정전 결의. 쌍방의 결의 수락으로 정전

제4차 중동전쟁 (1973)

- 이스라엘 종교 축제일인 욘 키푸르에 이집트 기습선제공격
- 개전 48시간만에 이스라엘 17개여단 전멸. 미국 지원으로 반격
- 미소 제안으로 휴전

이스라엘 전략적 모호성 下 핵 개발

이스라엘의 핵 개발 과정

- ▶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아랍 연합국과의 독립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독립 후에도 여러 차례 전쟁 지속
- ▶ 1953년 프랑스와 상호 간 원자력 협력 비밀리에 합의
- ▶ 1955년 제2차 중동전쟁
핵무기 개발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프랑스와의 협력 긴밀해짐
- ▶ 1962년 핵무기용 원자로 건설. 플루토늄 소량 생산 추정
- ▶ 1967년 이스라엘 정부,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및 핵무기 생산 기술 보유 공개적 언급
- ▶ 1986년 英 선데이 타임즈 誌,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관련 폭로 인터뷰 대서특필

이스라엘의 핵 개발과 주요국 반응 및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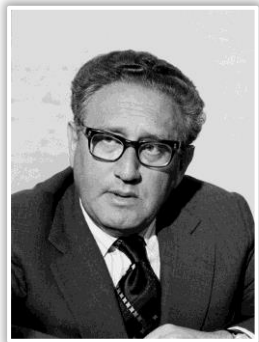
미국: Don't ask, don't tell

- ▶ 1970년 닉슨 대통령-메이어 수상 간 회담 시 NPT 가입 압력 및 핵 시설 사찰 중단 결정
이스라엘은 대신 핵실험 및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

주변 아랍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동인

- ▶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이집트 등 핵 개발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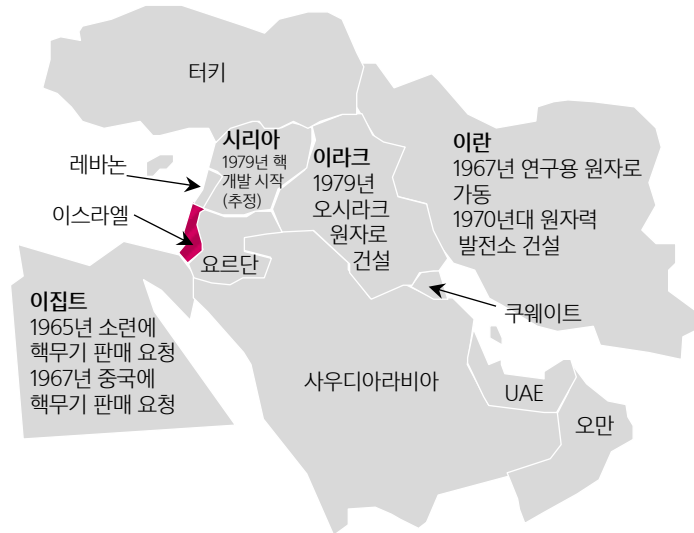
이라크 핵 실험 관련 키신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의 메모



“이스라엘이 무기 개발을 위해 1965년께 미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핵 분열성 물질을 취득했다는 정황 증거가 있다(...) 이스라엘의 관련 시설을 모두 사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 동결을 요구해 봐야 소용 없을 것이다 (...)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그저 모른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료: 미 국립문서보관소

1960~1970년대 아랍 지역의 핵무기 개발



자료: 삼성증권 정리

쿠바 미사일 위기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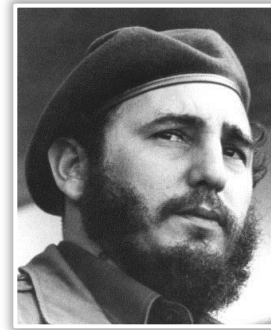
쿠바 혁명

- ▶ 친미 군사정권 몰락, 사회주의 정권 수립
쿠바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미국 영향력 축소 우려

피그만 침공

- ▶ 미국, 쿠바의 피그만 침공. 쿠바의 승리로 마무리
쿠바는 이후 친소련 노선 강화
- ▶ 1960년 3월 백악관과 CIA에 의해 브루투스라는 작전명 下 계획
약 1,500여명의 쿠바 망명자 출신 지원자 모아 군사훈련
- ▶ 1961년 4월 4일 케네디 대통령, 피그만 작전 승인
- ▶ 1961년 4월 15일 미국 전투기, 쿠바 공군기지 공습
- ▶ 1961년 4월 17일 미 상륙부대, 피그만 상륙 시작
쿠바군, 해안 봉쇄 및 반격. 미국 100여 명 사망, 1,000여 명 생포
- ▶ 1961년 12월 쿠바, 몸값으로 5,300만 달러를 받고
미군 포로 1,113명 송환

쿠바 혁명 이후 카스트로의 정책



- 반미주의, 민족주의
→ 피그만 침공 이후 친소, 공산주의 노선
- 토지개혁: 미국계 기업, 대지주 토지 몰수
- 산업 국유화: 대기업 국유화법 제정.
미국인 소유의 설탕, 석유회사 국유화
- 미군 철수
- 집단농장 운영

쿠바 미사일 위기 전개

미국과 소련, 핵 전쟁 직전 합의

- ▶ 1962년 9월 소련, 쿠바에 대미 중거리 미사일 기지 건설 개시 및 핵탄두와 미사일 이송
- ▶ 1962년 10월 16일 미국, 정찰기를 통해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 및 관련 시설 확인
- ▶ 1962년 10월 22일 미국, 대국민 담화를 통해 쿠바 미사일 기지 내용 공개 및 철거 요구
- ▶ 1962년 10월 24일 미국, 쿠바 영해 봉쇄
카리브 해 건설자재 적재선박 강제수색 및 거부 시 격침 명령
- ▶ 1962년 10월 26일 소련, 서신을 통해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미사일 철수하겠다는 조건 제시
- ▶ 1962년 10월 27일 미국, 소련의 요구 받아들임. 소련은 쿠바서 미사일 철수 의사 회신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주요국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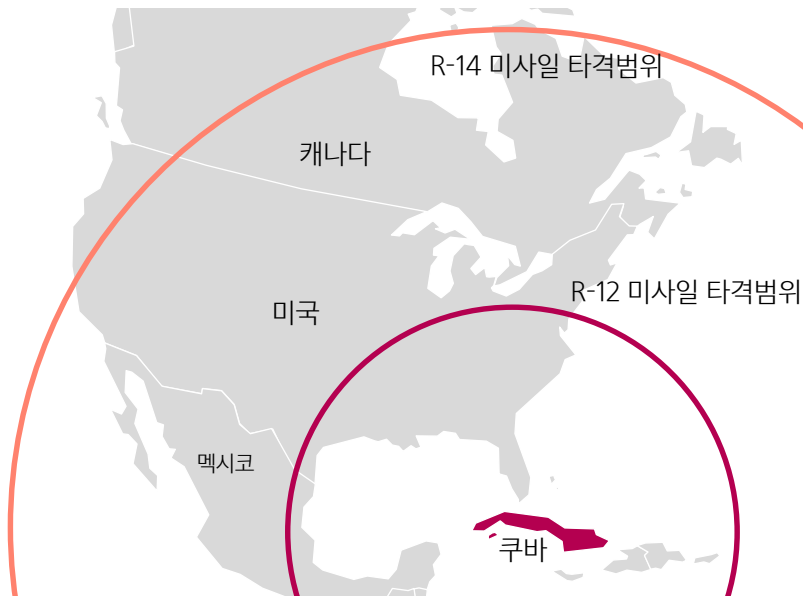
미사일 철수

- ▶ 소련, 약속대로 쿠바에 배치했던 미사일 철수. 이후 터키에 배치됐던 미국의 핵미사일도 철수

미소 대내 정치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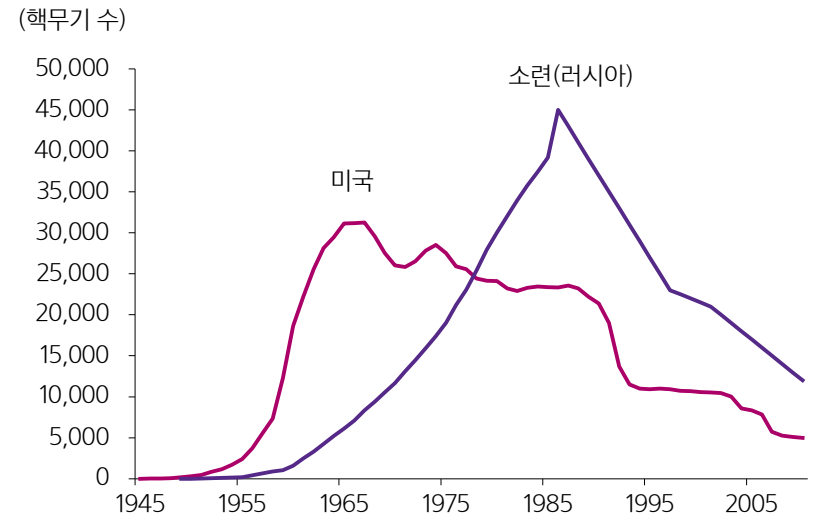
- ▶ 케네디, 피그만 침공에서의 대국민 신뢰도 하락 만회. 반면 흐루쇼프는 소비에트 연방 위신 실추 명목으로 이후 실각
미소 군비경쟁 확대, 냉전 강화 계기

쿠바에 배치됐던 미사일의 미국 타격범위



자료: The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미소 군비경쟁 양상



자료: Norris & Kristensen(2010), "Global nuclear weapons inventories, 1945-2010",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중국의 핵무기 개발 배경

미소 핵무기 개발, 소련과의 갈등

- ▶ 중국은 냉전 시기 미소 양극체계에서 중국이 포함된 삼각체계로의 전환을 시도
- ▶ 중국, 소련과 공산주의 사상 대립으로 갈등. 이후 소련 핵우산에 대한 의심

한국전쟁, 타이완 위기

- ▶ 미국, 실제 핵폭탄 사용 가능성 언급 → 대미억제력 필요성 상승

중국과 소련, 사상 갈등

소련 (흐루쇼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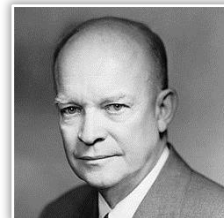
- 스탈린을 '용서받을 수 없는 독재자'로 규정, 비판
- 광신적 지도자 숭배 완화, 정치문화 온건화
- 자본주의 지역과의 평화공존론 주장
-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현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야

중국 (마오쩌둥)

- 소련을 '수정주의 배신자'로 규정
- 마오쩌둥에 대한 숭배 문화 지속
- 자본주의 지역에 대해 호전적 태도 유지 주장
-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당성 신봉

자료: 삼성증권 정리

미국의 핵폭탄 사용 언급



아이젠하워 대통령, 1차 타이완 위기 시

“시민들이 해를 입지만 않는다면 전략 핵무기를 재래식 무기와 같은 방식으로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맥아더 장군, 한국전쟁 시 요청 사항

- 1950. 12. 9 원폭 사용재량권 요청
- 1950. 12. 24 26개 목표 목록 제시
- 1951. 3. 10 핵전력 요청
- 만주 나들목에 30~50발의 핵폭탄 투하 계획

자료: 이종학, “6.25전쟁이란 무엇인가”, 충남대학교 출판부.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1957,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중국, 소련과의 갈등으로 독자적 핵 개발

중국의 핵무기 개발 전개

- ▶ 1955년 1월 공산당 지도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추진 결정
- ▶ 1957년 10월 15일 중소 신국방기술협정 체결
소련, 중국에 핵무기 기술전수 약속
- ▶ 1959년 6월 20일 소련, 중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지원 철회
중국, 독자적 연구 지속
- ▶ 1964년 10월 16일 원자폭탄 실험 성공
- ▶ 1967년 6월 17일 수소폭탄 실험 성공
- ▶ 1970년 4월 24일 인공위성 발사 성공. 양탄일성 목표 전부 달성

중국의 핵 개발 이후 주요국과의 관계

소련

- ▶ 중소분쟁 이후 중국 독자노선, 모든 합작사업 파기
1962년 중인전쟁 이후 소련-인도, 중국-파키스탄 관계가 긴밀해지며 소련과의 갈등 심화

중소분쟁 전개

- ▶ 1956년 흐루쇼프, 스탈린을 비판하는 비밀 연설
스탈린의 정책을 모델로 삼았던 마오쩌둥의 반발
- ▶ 1958년 7월 흐루쇼프, 마오쩌둥과 소련 잠수함 중국 배치 협상
마오쩌둥, '누구에게도 중국의 영토를 빌려줄 수 없다' 며 거절
- ▶ 1958년 8월 2차 타이완 위기
소련은 중국이 미리 폭격 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충격
중국의 폭격으로 소련까지 미국의 위협에 직면하자 중국에 크게 분노
- ▶ 1960년 소련, 중국에 주둔하던 전문가와 기술자 전원 철수시킴
양국 간의 200여 개 과학 프로젝트도 전부 취소
- ▶ 1962년 중국, 쿠바 미사일 위기를 두고 흐루쇼프 비판
소련, 중인전쟁에서 인도 편에 서며 중국과 대립

미국

- ▶ 핵개발이 완연해지자 타이완, 소련 등과의 협력을 통한 폭격 등 각종 저지수단을 강구
실제로는 언론 압력 수준의 소극적 대처

중국의 핵 개발 이후 주요국과의 관계

중국의 첫 번째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책안

군사공격

- 타이완의 군사공격 요구가 커지면서 검토
- 피그만 공습 실패로 군사공격에는 회의적인 시각
- 타이완 특수부대원 공중강습 등 비밀작전 실제로 준비

비밀 선전운동

- 자유진영의 힘을 인식시키고 중국의 비이성적인 위협 무력화
- 국제적인 언론을 활용한 선전활동
- CBS가 핵실험 임박 사실 보도, 기자회견에서 메시지 전달

소련과의 협력

- 독일의 비핵무장을 조건으로 소련에게 중국 핵개발 억제에 나서줄 것을 요구
- 소련은 중국의 핵이 소련에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협상 실패

자료: 손한별(2015), "미국의 선택적 비확장정책 분석: 중국과 인도의 핵무기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인도의 핵무기 개발 배경

반핵 주의자 네루 수상

- ▶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핵 개발에 비판적 입장 견지
대내적으로는 원자력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핵 개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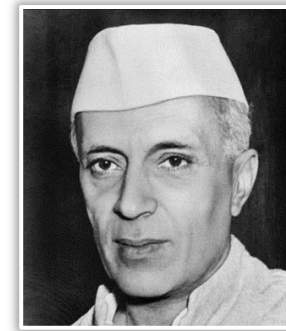
중국과의 분쟁 및 중국의 핵 개발

- ▶ 중국 핵실험에 대한 위기감으로 핵 개발 확대
- ▶ 중국과의 국경 분쟁(중인전쟁)
중국에 전력이 밀리면서 인도의 위기감 증대

중인전쟁의 전개

- ▶ 1962년 9월 20일 인도 Thag La 지역에서 중국과 소규모 전투
- ▶ 1962년 10월 20일 중국, 인도와의 국경 동, 서쪽에서 동시 침공
- ▶ 1962년 10월 24일 중국, 기존 인도 통치 지역까지 진출
중국, 인도에 협상 서한 보냄. 인도는 거부
- ▶ 1962년 11월 14일 협상 결렬, 전쟁 재개
중국, 여러 전선에서 인도와의 전투 승리
- ▶ 1962년 11월 21일 중국, 일방적 휴전 선언

원자력법 제정 당시 네루 수상 발언



“우리는 전쟁과는 거리가 먼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진정으로 나는 평화적 목적에 이용할 원자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다른 목적에 쓰이도록 인도가 강요를 받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것이다”

자료: “핵무기와 국제정치”, 안준호, 열린책들. 삼성증권 정리

인도의 핵 개발 주요 사건

대내외 압력으로 핵 개발 장기화

- ▶ 1948년 원자력법 제정
네루 수상, 평화적 원자력 개발 천명하였으나 핵 무기 개발에 대한 여지 남김
- ▶ 1960년 캐나다와 미국 지원 하에 CIRUS 원자로 가동
평화적 목적 사용이라는 조건이 붙었으나 이를 위반할 시의 제약 사항은 없었음
- ▶ 1964년 10월 중국 핵실험 성공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여 핵무기 보유 유인 강화
- ▶ 1974년 5월 18일 1차 핵실험
핵 실험 성공하였으나 대외 압박 및 정치적 문제로 추가 실험은 연기됨
- ▶ 1996년 5월 11일~5월 13일 5차례의 핵실험 연속 강행
중국의 지속적 핵실험 및 포괄 핵실험 금지조약(CTBT) 발효가 가까워 오자 서둘러 진행
- ▶ 2004년 7월 인도-미국 원자력 협정 체결
핵 보유 암묵적 인정. 미국의 경제 제재조치 철회, 인도의 국제사회 내 지위 상승

인도의 핵 개발과 주변국 반응

미국: 공식적으로는 비난, 이면적으로는 모호한 태도 견지

- ▶ 대소 핵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할 필요

파키스탄: 핵개발 도화선

- ▶ 인도가 인도-파키스탄 국경 근처에서 핵실험 시행, 안보 우려 확대 이후 파키스탄의 핵 개발 배경(핵 도미노 현상)

인도의 핵 개발 관련 미국의 이중적 대응

공식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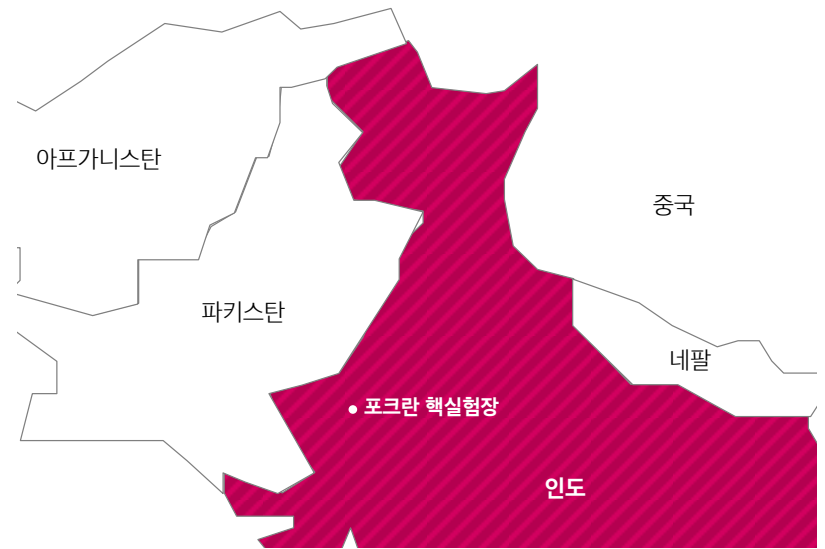
- 미 상원, IAEA 승인 없이 핵원료 재처리와 농축 장비 도입 국가에 대한 경제, 군사적 지원 중단 결의안 채택
- 1998년, 클린턴 대통령 인도에 경제 제재 부과

이면적 대응

-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어떤 협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결론, 농축 우라늄 추가 지원
- 1999년, 1년 만에 경제 제재 해제

자료: 삼성증권 정리

인도의 핵실험 장소



자료: 삼성증권 정리

남아공의 핵 개발 동기

국제적 입지 약화

- ▶ 나미비아 불법점거, 인종차별정책 등으로 국제 사회의 반대 직면
남아공 집권층 일부는 핵무기 보유를 외교적 방패로 간주

남아공 인종차별 관련 국제연합총회 결의안 및 각종 제재

- ▶ 1950년 남아공의 인종차별이 국제규범 위반임을 명시
- ▶ 1961년 남아공에 대한 제재 가능성 경고
- ▶ 1965년 남아공 국제연합 회원권에 대한 도전 발생
- ▶ 1970년 對남아공 무기수출 금지 촉구
- ▶ 1974년 남아공, 국제연합 활동에서 제외됨

대외적 안보환경 악화

- ▶ 앙골라, 모잠비크 등 독립 후 남아공에 적대적으로 변화
앙골라 내전에 쿠바와 소련이 개입하며 체감 안보 위협 상승

남아공 주변 대외환경 악화



자료: 삼성증권 정리

남아공의 핵 개발 경과

미국과의 협력 단절 이후 이스라엘의 지원으로 핵무기 개발

- ▶ 1957년 7월 미국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 체결
- ▶ 1965년 3월 미국의 기술 지원 붙은 연구용 원자로 가동
- ▶ 1976년 NPT 가입 거부
미국의 NPT 가입 제의 거부, 미국-남아공 간 원자력 협력관계 단절
- ▶ 1977년 미국과 소련 정보위성이 남아공 칼라하리 사막에서 핵실험으로 보이는 섬광 포착
- ▶ 1979년 9월 22일 남아공-이스라엘 합동 핵실험 (Operation Phoenix)
- ▶ 1982년 12월 이스라엘의 기술 지원으로 핵폭탄 제조 성공

남아공의 핵 폐기

핵 무기 폐기 배경

- ▶ 주변국에 주둔했던 소련군 철수로 아프리카 역내 공산국가 영향력 감소
- ▶ 미국 등 서방진영의 지속적 압력과 건설적 포용 정책의 병행 추진
- ▶ 인종분리정책 종식이 불가피한 상황 下 흑인국가의 핵 보유 시 아프리카 내 타 흑인국가 및 불량국가로의 핵확산 가능성 우려

주요 사건 일지

- ▶ 1989년 9월 데클레르크 대통령 당선, 비핵화 정책 추진
- ▶ 1990년 7월~1991년 6월 핵무기 6발 비밀리 해체
- ▶ 1991년 7월 NPT 가입
- ▶ 1991년 11월~ IAEA 핵 사찰 115회 실시
- ▶ 1993년 3월 데클레르크 대통령, 남아공 핵무기 완전 폐기 선언

파키스탄의 핵 개발 배경

인도-파키스탄 전쟁, 인도의 핵 개발

- ▶ 인도와의 전쟁에서 연패, 동파키스탄 지역 방글라데시로 독립
- ▶ 인도의 핵 개발로 안보 위협 확대

인도-파키스탄 전쟁

제1차 인-파전쟁 (1947)

- 인도, 파키스탄 분리독립 시 카슈미르 지역 귀속 정하지 못함
- 파키스탄에서 카슈미르 진입 시작, 인도도 무력 개입
- UN 개입으로 정전, 결과적으로 카슈미르 60%는 인도 지배

제2차 인-파전쟁 (1965)

- 1962년 중인전쟁으로 중국 악사이친 지역 실효지배
- 이에 영향 받은 파키스탄, 인도 지배지역에 무장세력 파견
- UN 압력으로 양군 철수 합의, 전쟁 이전 위치로 철수

제3차 인-파전쟁 (1971)

- 동파키스탄 독립 주장, 서파키스탄 중앙 정부 무력 행사
- 동파키스탄 주민 인도로 망명, 인도 정부 개입
- 파키스탄,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독립 승인

파키스탄의 핵 개발 배경

남아시아 내 주도권 분쟁

- ▶ 주변국(네팔, 스리랑카) 인도 영향력 下 편입, 남아시아 내 파키스탄 입지 약화

남아시아 지역



자료: 삼성증권 정리

파키스탄의 핵 개발 경과

초기 개발: 미국의 저지

- ▶ 키신저 미 국무장관, 1976년 파키스탄 방문서 핵 재처리 시설 반입 계획 취소 요구

후기 개발: 미국의 묵인과 방조

- ▶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미국이 파키스탄에 기지 세우며 핵심 동맹국으로 부상
- ▶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확인하였으나, 묵인 후 원조 지속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자료: 삼성증권 정리

미국의 변화된 스탠스



1976년 8월 키신저,
파키스탄 부토 대통령에게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끔찍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1986년 10월 레이건,
파키스탄이 핵 개발 중이라는 CIA 보고에 의회에서
원조 중단 논쟁이 제기되자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원조를 계속하라”

자료: 삼성증권 정리

파키스탄의 핵 개발 경과

인도와의 분쟁이 도화선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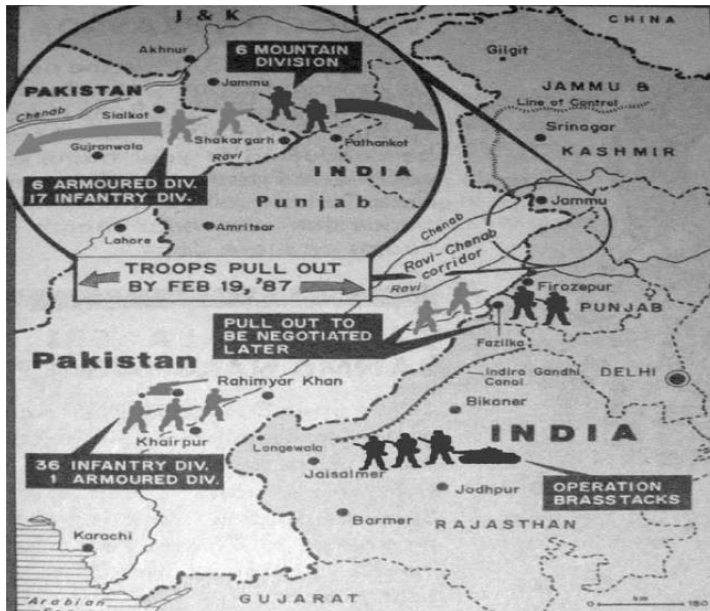
- ▶ 1965년 미국에서 연구용 원자로 도입. 출력이 낮아 핵폭탄 제조용으로는 쓰기 어려움
- ▶ 1971년 인도-파키스탄 전쟁
동-서 파키스탄 분쟁 중 인도 정부 군사 개입.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독립
- ▶ 1972년 캐나다로부터 발전용 원자로 도입
이후 파키스탄이 NPT 가입 거부하자 캐나다는 핵연료 공급 중단
- ▶ 1974년 5월 인도 핵실험으로 파키스탄의 안보 위협 확대
- ▶ 1990년 미국에서 1965년 도입했던 원자로를 기존 대비 두 배의 출력을 내도록 개조
- ▶ 1998년 5월 인도의 5차례 핵실험에 대응하여 6차례 핵실험 감행

파키스탄의 핵 개발과 주변국 반응

인도 무력 시위

- ▶ 1987년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
(Operation Brasstacks: 동원 인원 20만; 2개 기갑부대, 1개 기계화보병부대, 다수 보병부대 및 기갑/보병 여단으로 구성)
→ 안보 위협 느낀 파키스탄, 핵 개발 가속
- ▶ 카슈미르 지방 분쟁 지속되며 갈등 심화 양상

Operation Brasstacks



자료: Khalid(2012), Brasstacks Crisis 1986-87, South Asian Studies

카슈미르 지방



자료: Naver

이란의 핵 개발 동기

아랍 내 주도권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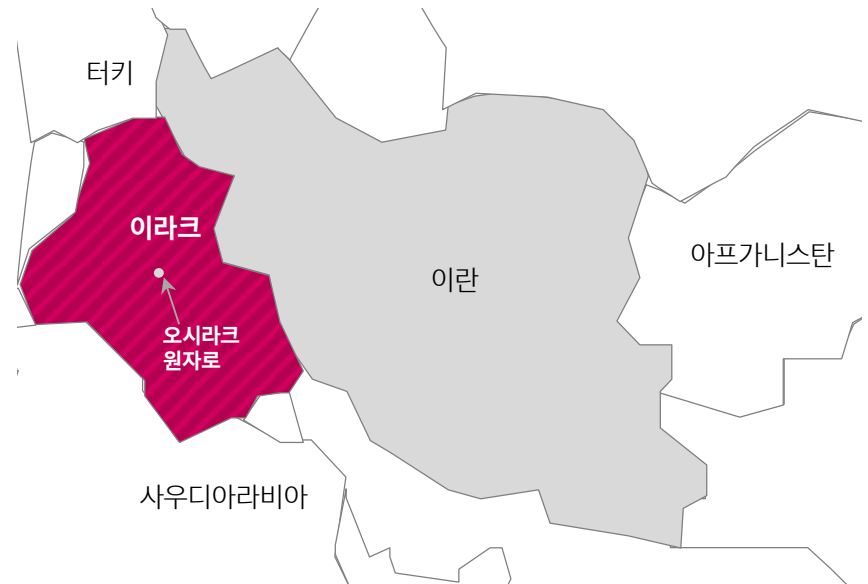
- ▶ 주변 국가의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불안정 상황은 이란이 이슬람권의 중심국가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 이란-이라크 전쟁 중 오시라크 공습 이후에야 이라크의 핵 개발 사실을 알고 안보 강화 목적으로 본격 핵개발 착수

이슬람권 국가의 정권교체

이라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8년 카심 장군 군사 쿠데타, 왕정 붕괴 및 공화국 수립● 1963년 바트당 쿠데타로 카심 총리 공화국 정권 붕괴● 1979년 사담 후세인 정권 장악, 철권 통치(합법적 권력 이양)
아프가니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9년 독립 이후 왕정 지속● 1973년 국왕 해외순방 중 국내 쿠데타, 공화국 수립● 1978년 공산 쿠데타, 1인 공산 독재정권 수립
시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61년 인민단 군사 쿠데타 계기로 아랍 연합 공화국에서 독립● 1970년 시아파 출신 장군 쿠데타, 정권 장악

자료: 삼성증권 정리

이란-이라크 전쟁



자료: 삼성증권 정리

이란의 핵 개발 경과

파키스탄, 러시아와 협력하며 장기간 핵 개발

- ▶ 1967년 9월 미국 지원으로 테헤란 핵 연구센터 설립, 소규모 연구용 원자로 공급받아 운전
- ▶ 1980년 9월 이란-이라크 전쟁
파키스탄, 러시아 등과 협력하며 대규모 원자로 건설 공사
- ▶ 1987년 파키스탄과 원자력 협정 체결, 이후 우라늄 원심 분리기 대량 수입
- ▶ 1995년 러시아와 대규모 원자로 건설 계약, 핵연료 공급 등의 협력 사업 진행
- ▶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단체 국민저항위원회(NCRI), 이란 정부의 군사목적 핵 개발 폭로
- ▶ 2005년 8월 이스파한 지역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이란의 핵 개발과 협상

협상 일지

▶ 경제제재로 국내 경제난 지속, 2013년 정권교체 후 협상 우호적 스탠스로 전환

對이란 경제제재

1차 결의안 (2006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란 원자력 기구 포함 단체 11곳, 12명 금융자산 동결● 핵무기 제조 물질 및 기술 이전 금지
2차 결의안 (2006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주요 개인 및 기업 자산 동결 의무화● 제재 조치 이행 감시 위원회 설립
3차 결의안 (2007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기 금수 조치 부과● 이란 자산 동결 확대
4차 결의안 (2008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란 은행 활동 감시, 선박 및 항공기 검사● 여행 제한, 핵 및 미사일 관련 이중 용도 제품 이란 수출 금지
5차 결의안 (2008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의 네 가지 결의안 재확인
6차 결의안 (2010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란 혁명 수비대와 이란해운의 자금과 자산 동결● 이란 은행 타국 업무 및 타국 은행의 이란 관련 업무 제한

자료: 삼성증권 정리

이란의 핵 개발과 협상

협상 일지

- ▶ 2013년 10월 주요 6개국(미,러,중,영,프,독)과 이란 간 첫 협상 개시
- ▶ 2015년 7월 14일 핵 협상 최종안 공식 타결

이란 핵 협상 합의안 주요 내용



핵무기 사찰 허용

- 핵무기 개발이 의심되는 모든 시설에 IAEA 사찰단 접근 허용
- IAEA의 특별 사찰 요구는 주요 6개국과 함께 조율



우라늄 생산 제한적 허용

- 평화적 목적에 한해 우라늄 생산 가능
- 이란의 핵 기술 연구개발 시설 및 우라늄 농도, 규모 제한
- 이란 미공개 시설에서의 우라늄 농축, 연구 핵물질 저장 금지



각종 제재 해제

- IAEA 사찰이 끝난 후 對이란 경제금융제재 해제
- 협상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 복원
- 무기 금수 조치와 탄도미사일 관련 제재는 각각 5년, 8년간 유지

(실패 모델) 우크라이나의 핵 보유 역사

구 소련의 핵무기 일부 보유, 경제적 문제로 폐기

- ▶ 소련 해체 이후 소련 보유 핵무기 중 약 1/3을 우크라이나가 보유
세계 3위 핵 강국으로 부상
- ▶ 경제적으로 전력을 유지할 여건이 되지 않아 대규모 군축 강행
- ▶ 1994년 러시아, 미국과 함께 구 소련 전략무기 폐기 성명에 서명

우크라이나의 핵 폐기 timeline

- ▶ 1991년 12월 민스크 협정
구소련 핵보유 4개국, 영토 내 핵무기 러시아 이관 합의
- ▶ 1992년 5월 리스본 협정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NPT 가입 합의
- ▶ 1994년 1월 미국, 러시아와 회담
3년 내 핵탄두 이관 및 7년 내 NPT 가입 합의
- ▶ 1994년 5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
핵 폐기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영국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 ▶ 1994년 12월 NPT 가입

在우크라이나 소련 핵 기지



자료: 삼성증권 정리

(실패 모델) 이라크

이스라엘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핵 개발 노력

- ▶ 1979년 프랑스의 기술 지원으로 오시라크 핵 시설 건설 시작
세계 3위 핵 강국으로 부상
- ▶ 1981년 이스라엘, 전투기를 이용 건설 중이던 오시라크 폭격. 원자로 원전 파괴
- ▶ 1990년 걸프전 시기 파키스탄, 이집트 등과 협력하며 핵무기 개발 재개
- ▶ 1991년 4월 IAEA, 이라크가 제출한 핵무기 개발 관련 보고서 인정 거부
- ▶ 1991년 10월 이집트, 알 아티어 지역에 핵무기 개발 연구소가 있다는 사실 공개
- ▶ 1992년 이라크 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중지, IAEA에 의해 모든 핵 시설 파기 등 핵 개발 전면 중단

(실패 모델) 리비아

리비아의 핵 개발사

- ▶ ~2002년 파키스탄으로부터 원심분리기 구매, 일부 설치 및 운전
- ▶ 2003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몰락
이를 본 카다피는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은 어렵다고 판단
- ▶ 2003년 12월 리비아, 반미정책 중단 및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
핵무기 개발 계획 IAEA에 자진 통보
핵무기 개발시설 일체 파기처분에 동의
- ▶ 2004년 1월 원심 분리기를 비롯한 모든 부품 제거
- ▶ 2004년 4월 구 소련에서 공급받은 핵 연료 러시아에 반환
- ▶ 2006년 6월 미 국무부, 리비아와 모든 외교관계 복원
- ▶ 2011년 리비아 민주화 운동, 카다피 독재정부 붕괴

리비아의 WMD 프로그램 포기 결정 후 조치사항

모든 핵무기 및 화학무기 프로그램 폐기

모든 핵활동을 IAEA에 보고

사정거리 300km, 적재량 500kg 이상의 탄도미사일 폐기

NPT 이행을 위해 국제사찰을 허용하고 추가의정서 서명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고 화학무기금지조약(CWC)에 가입

이들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즉각적 사찰과 감시 허용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지침 순응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II. 주요 사례 분석: 핵 개발, 통일

III-1. 주요국 핵 개발사

III-2. 독일 통일 case



- ▶ **통일 전: 서독 대비 약 ¼ 규모, 공산권 중 상대적 부국:** 통일 이전의 동독은 서독 대비 영토 25%, 인구 26%, 1인당 GDP 27.4%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동독은 60~70년대까지 소련의 지원 등에 힘입어 인구 대비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하였으나, 80년대 말 공산권 경제 전반의 불황으로 인해 경제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 통일 과정

시점	사건
아데나워 수상 (1949-1963)	서독을 독일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 통일은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브란트~슈미트 수상 (1969-1982)	중도 좌파인 사민당이 집권하며 동독을 인정하고 동구권 국가와 수교하는 등 화해 무드 조성
콜 수상 (1982-통일)	중도 우파 기민당 출신이었으나 동독과 교류, 접촉을 확대하여 민족 통일성 유지
1989년~	동독 주민들이 대규모 탈출, 반정부 집회 이어지며 베를린 장벽 붕괴
1990년	2차 대전 전승 4개국과 조약 체결로 통일 독일의 주권 공식적으로 인정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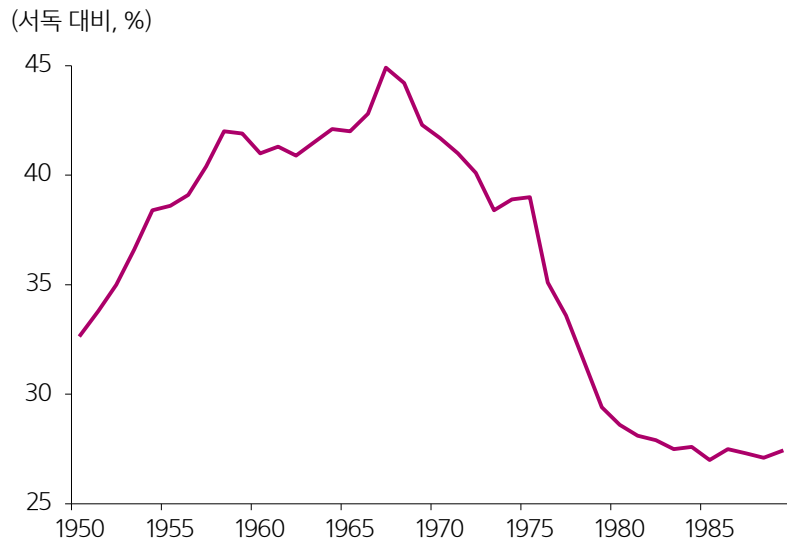
- ▶ **통일 후: 舊 동-서독 지역간 차별화:** 구 동독지역 경제는 통일 초기에는 급성장하였으나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며 구 서독지역과의 격차가 지속되었다.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노동비용 급증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급락하였고, 이에 따라 구 동독 지역에서는 구 서독 지역으로 청년층 위주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나타났다. 독일 증시는 공식 통일 이전에 미리 급등하였으며, 이후 4~5년간 박스권에 머물렀다.

통일 이전 동독의 경제

통일 당시 서독 대비 동독 경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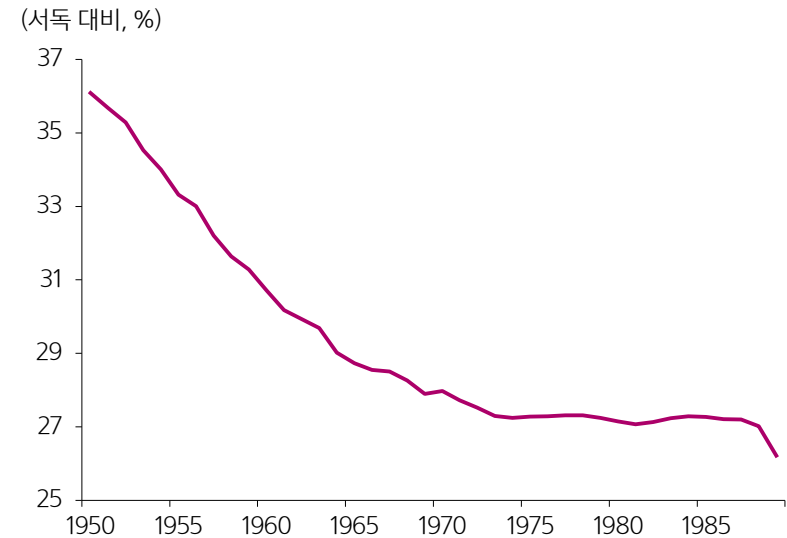
- ▶ 서독 대비 영토 25%, 인구 26%, 1인당 GDP 27.4%
- ▶ 1960~1970년대 소련 지원 등에 힘입어 인구 대비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하였으나 70년대 말 이후 급감

통일 이전 동독의 서독 대비 1인당 GDP



자료: Blum(2011), An Economic Life in Vain, mimeo

통일 이전 동독의 서독 대비 인구



자료: CEIC, 삼성증권

서독 역대 수상 별 통일·외교 정책

<p>중도 우파 연정 (1949- 1963)</p>		<p>콘라트 아데나워</p>	<p>자석이론: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경제성장으로 보여주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서독을 독일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 동독과 수교한 나라와는 수교 맺지 않음 서독을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군에 통합시키려는 정책. 통일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림</p>
<p>중도 좌파 연정 (1969- 1974)</p>		<p>빌리 브란트</p>	<p>동방정책: 동독 체제 인정, 동유럽 국가와의 화해정책으로 긴장 완화 추구 독일인이 주체가 되어 독일의 문제를 해결하면 소련 및 동유럽 체제변화도 이어질 것 동방정책에 대한 서방 동맹국 의구심 해소를 위해 동맹에 대한 적극적 실천 의지 표출</p>
<p>중도 좌파 연정 (1974- 1982)</p>		<p>헬무트 슈미트</p>	<p>전반적으로 브란트의 데탕트 정책을 유지,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 미국 뿐 아니라 소련 및 동유럽 국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외교정책 구체적 문제 해결 지향, 경제외교 및 유럽통합에 중점을 두는 실용주의적 특성</p>
<p>중도 우파 연정 (1982-통일)</p>		<p>헬무트 콜</p>	<p>미국과의 동맹관계 강조, 서방측의 서독에 대한 신뢰 재확보 동독과 실용주의적 협력 지속, 선언적 차원에서는 동독에 대한 규범적 공세 전개 서독의 민주주의적 모습 동독에 부각, 양독 간 교류와 접촉을 확대하여 민족 통일성 유지</p>

자료: 손기웅,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통일연구원

통일 전후 독일 사회

사회 분위기 변화

- ▶ 동서독간 교류 증대: 양독 간 서신/전화 건수 급증, 동독 내 서독 TV 시청 합법화, 방문 허용인원 확대 등
- ▶ 공산권 동유럽 국가들과 교류 확대: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 서독-동유럽 국가들과의 국교 정상화

통일 시기 주요 연표

- ▶ 1974년 동-서독 간 외교관계 수립, 대표부 개설
- ▶ 1989년 5월 헝가리 정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지역에 설치된 장벽 철거
이후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 러시
- ▶ 1989년 10월 동독 성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의 기도회'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
- ▶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 ▶ 1990년 3월 18일 동독 조기총선 실시
서독 마르크화 도입과 조기 통일을 공약한 독일연합 승리
- ▶ 1990년 5월 18일 동-서독,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 서명. 독일 통일 기금 조성
- ▶ 1990년 7월 1일 동-서독, 경제·사회적 통합 개시. 동독 마르크화 서독 마르크화와 1:1로 교환
- ▶ 1990년 9월 12일 2차 대전 전승 4개국(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와 동-서독, 독일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 체결
공식적으로 통일 독일에 대한 주권 인정받음
- ▶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일 선언

통일 이후 독일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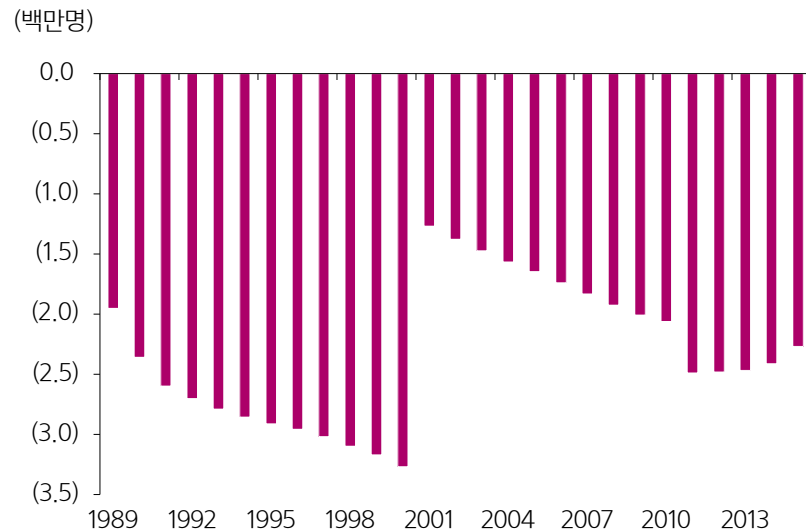
동독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

▶ 통일 초기 동독에서 서독으로 청년층 위주 대규모 이동, 동독 지역의 고령화 현상 심화

동-서독 지역 주민 간 의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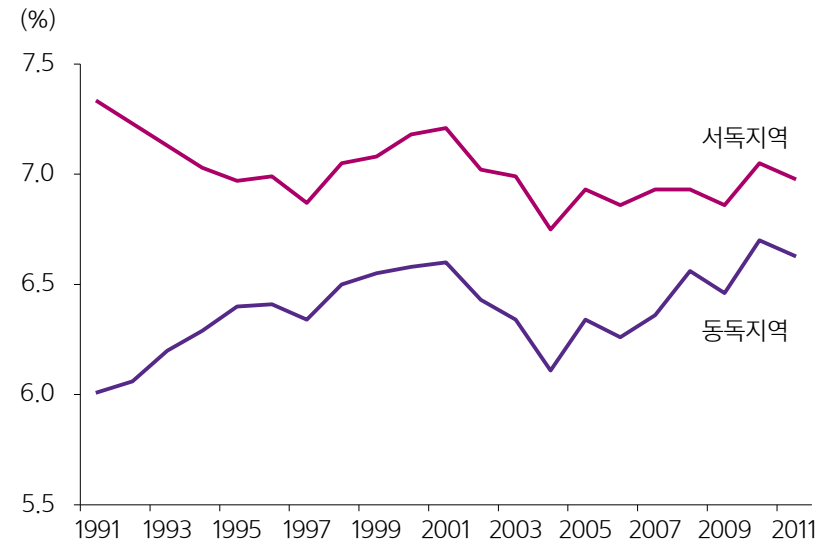
▶ 동-서독 경제 격차 지속, 동독 주민들은 자신이 '2등 국민'이라는 인식 확산

통일 이후 동독 지역 인구 누적 순증



자료: CEIC, 삼성증권

통일 이후 생활만족도



자료: SOEP, 한국정치학회(2013), "통일편의 연구" 재인용

통일 이후 독일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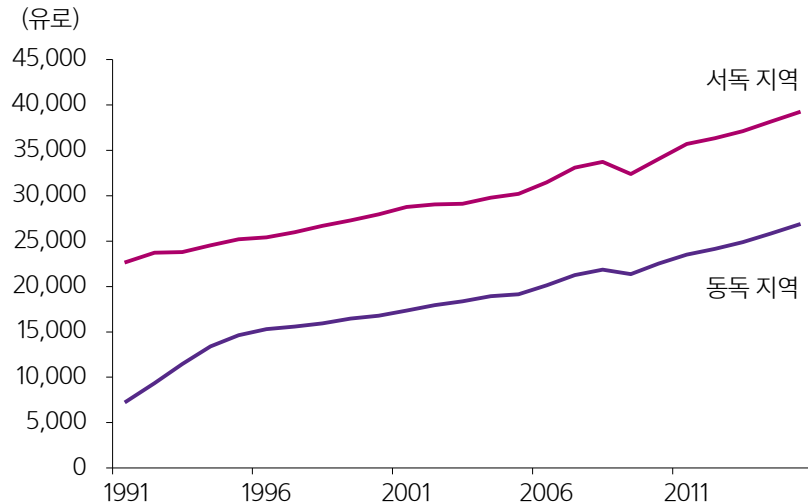
경제 규모: 수렴되나 속도 매우 둔화

▶ 동독 산업 붕괴,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 급락 → 동독경제 부흥 특수 → 특수 소멸 후 저성장의 3단계 거침

재정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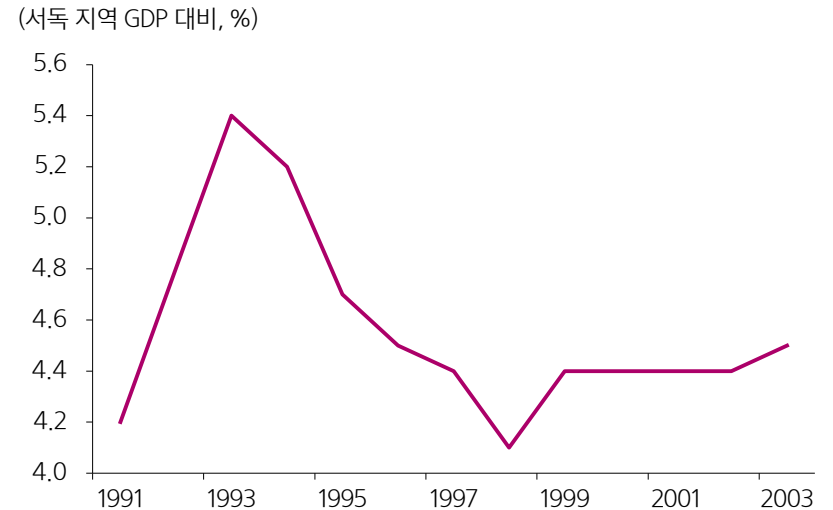
▶ 구 동독지역 대상 공공 지원금은 통일 직후 2~3년간 급증, 지원금의 절반 가량은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 1인당 GDP 추이



참고: 동, 서독 지역 모두 베를린 제외
자료: CEIC, 삼성증권

동독지역 지원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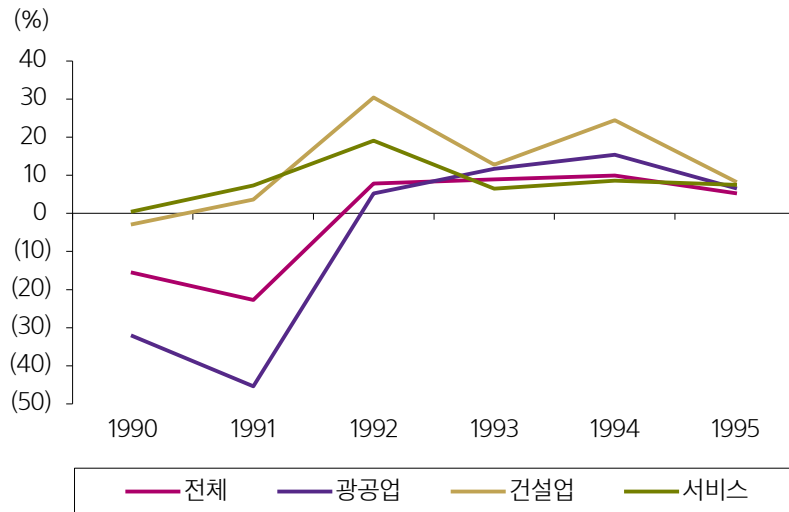
참고: 베를린 제외, 공공부문 지원금 대상
자료: 김석진(2010), "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통일 이후 독일 산업

동독 지역의 산업 변화

- ▶ 투자청 주도로 동독 내 대규모 콤비나트의 민영화·구조조정 단행
- ▶ 서독으로부터의 막대한 재정·자본이전 기반, 건설과 서비스업 산업 부흥
반면 경쟁력 상실한 제조업은 부진
- ▶ 노동시장 제도의 동독 이전으로 노동비용 급상승, 교역재 산업 규모 축소
수입으로 대체 어려운 비교역재 비중 상승

통일 초기 동독 산업별 GDP 증가율



자료: Paus, E. A.(1998), "Structural adjustment and manufacturing sector competitiveness: lessons from post-unification East Germany", 김계환(2008), "독일 통일과 산업구조조정: 남북산업협력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에서 재인용

통일 이후 동-서독 지역 교역재, 비교역재 비율 변화

(%)	1990	1992	1994
교역재			
동독지역	64.4	42.8	43.4
서독지역	66.0	64.0	63.1
비교역재			
동독지역	35.4	57.2	56.6
서독지역	34.0	36.0	37.0

자료: Gerling, K. & K-D Schmidt(1997), "Restructuring and competitiveness in the transition process: evidence from an Eastern German firm panel", 김계환(2008), "독일 통일과 산업구조조정: 남북산업협력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에서 재인용

통일 이후 독일 증시

통일 전후 MSCI Germany (vs MSCI World) 추이

- ▶ 공식 통일 이전 이미 증시 급등, 이후 4~5년 간 박스권
- ▶ 통일 이후 독일 증시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지속적 순매수

MSCI DM 대비 MSCI Germany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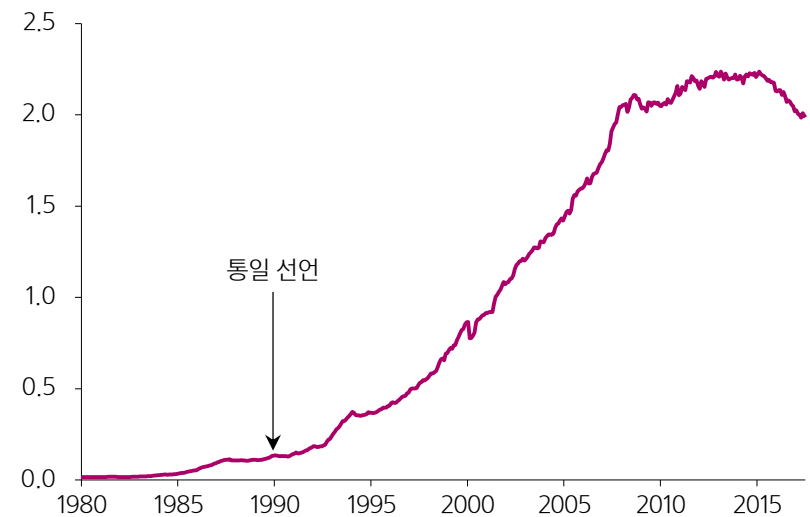
(지수: 1985년 12월 31일 = 100)



자료: Thomson Reuters, 삼성증권

독일 포트폴리오 투자

(조유로)



참고: 1971년 이후 누적
자료: CEIC, 삼성증권

IV.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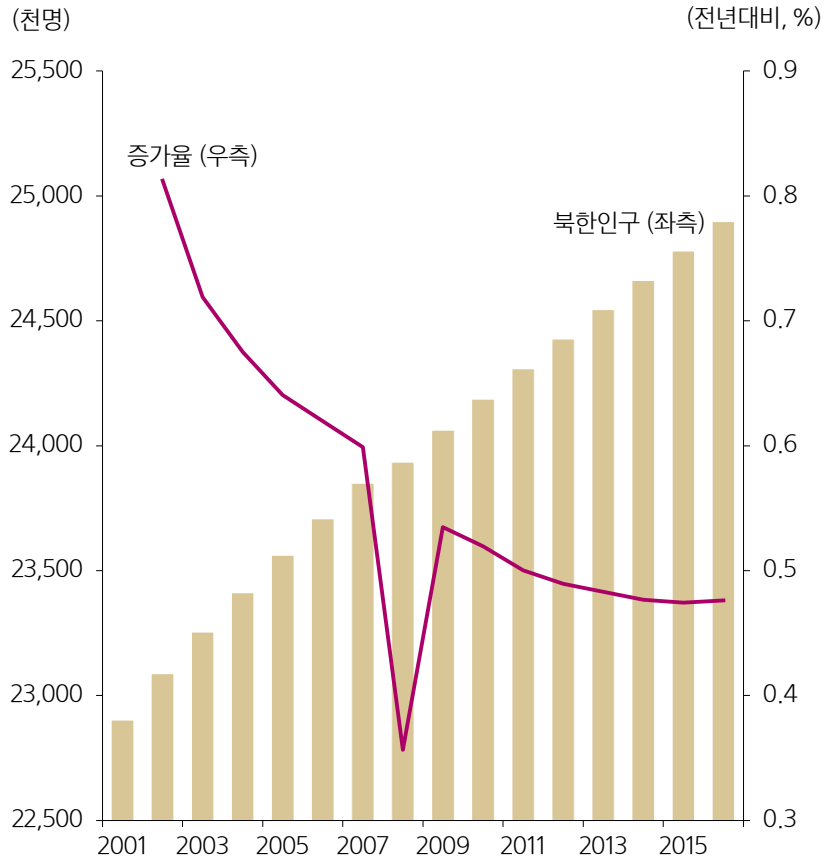
북한의 지리적 위치



자료: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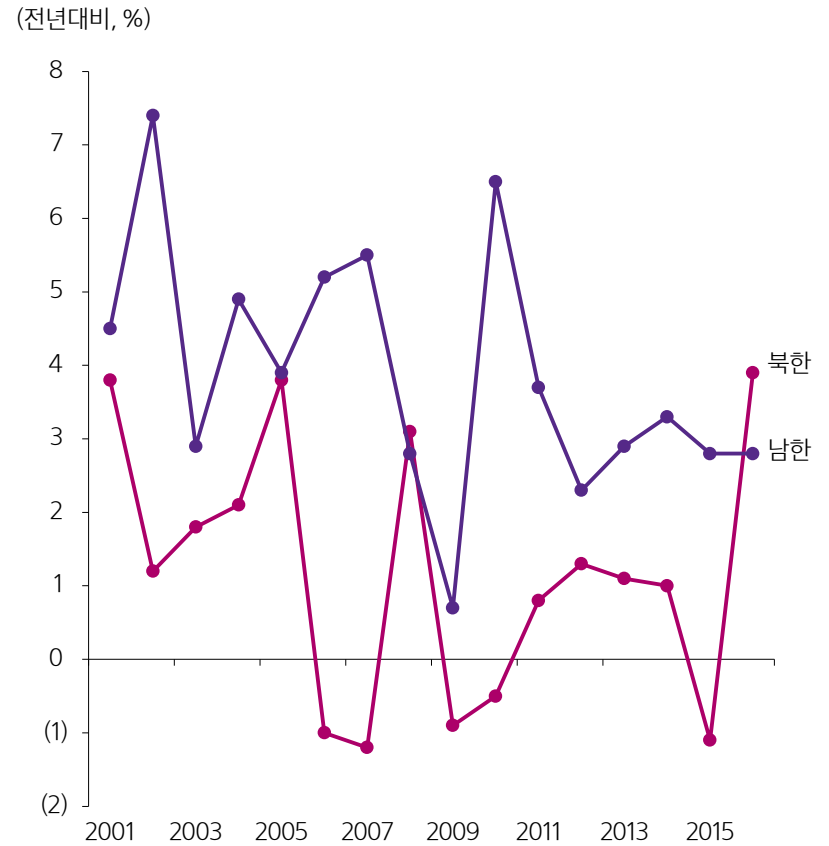
인구와 경제성장률

북한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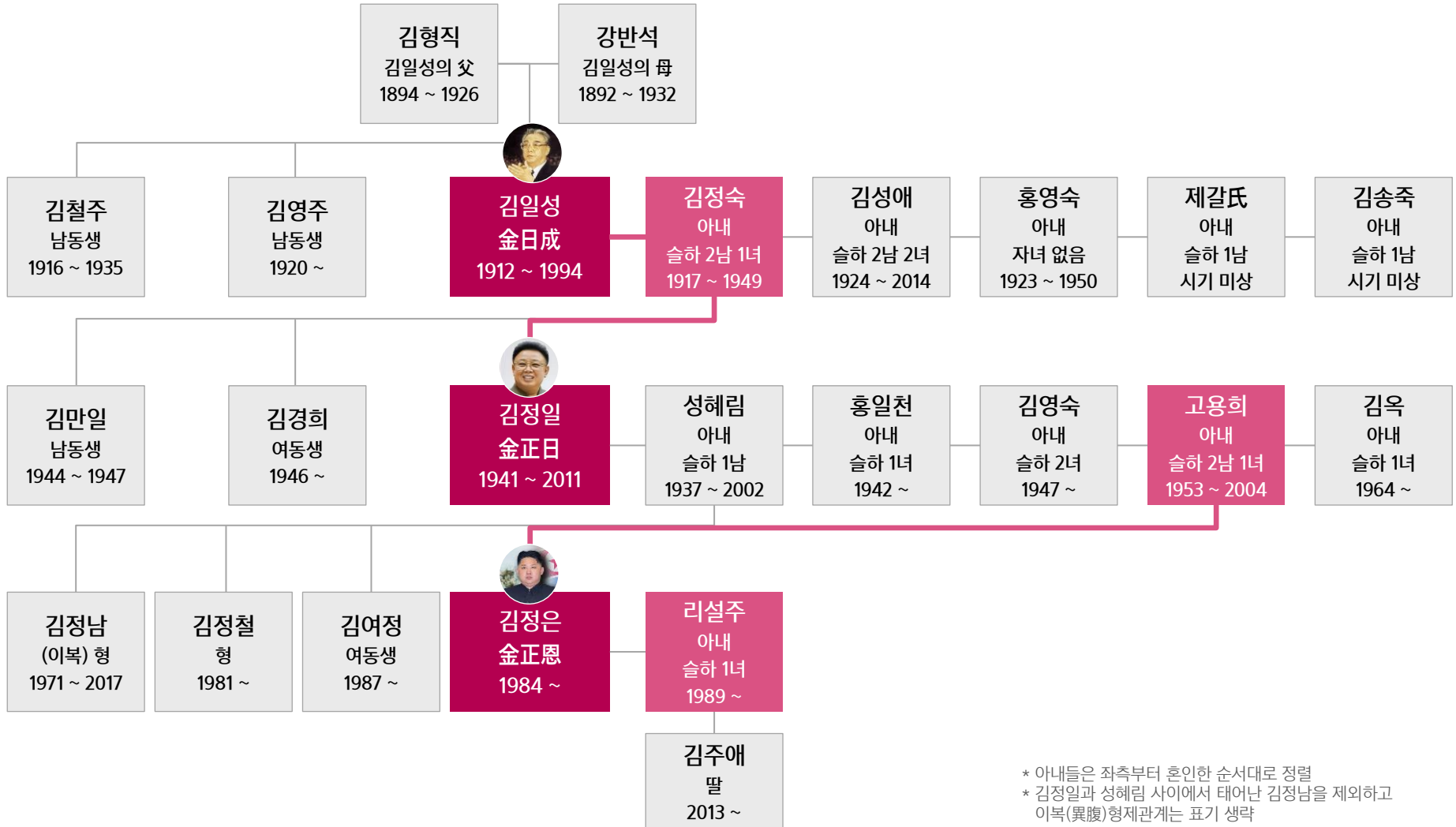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남한과 북한의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김일성 ~ 김정은 주요 가계도



* 아내들은 좌측부터 혼인한 순서대로 정렬
 * 김정일과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남을 제외하고 이복(異腹)형제관계는 표기 생략

김일성(金日成) 인물 연표

시기	내용
1912. 4. 15	부(父) 김형직과 모(母) 강반석의 장남 김성주(金成柱)로 평양에서 출생
1919. 가을	만주로 이주하여 소학교 입학
1923. 4	평양으로 귀국
1925. 1	다시 만주로 이동
1926. 6. 5	부친 김형직 사망
1927. 1. 17	만주 길림성에서 육문(毓文)중학교 진학
1929. 가을	반일(反日) 조선공산청년회 활동 중 체포되어 구금
1930. 5	감옥에서 석방. 수감 중 중학교 퇴학 처분
1930 전후	김성주(金成柱)에서 김일성(金日成)으로 개명
1932. 4. 25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 부대를 조직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일)
1932. 7. 31	모친 강반석 사망
1933	만주에서 한인과 중국인 혁명가가 이끄는 소규모 유격대 활동에 참가
1936. 2	중국인 양징위를 사령관으로 동북항일연군 결성
1937. 6. 4	김일성이 이끄는 유격부대가 압록강변의 한국마을 보천보를 공격
1938. 11	동북항일연군 2방면군 군장
1938. 12	일본 토벌대를 피해 압록강 연안 북부국경일대로 이동 (고난의 행군)
1940. 2. 23	일본 토벌대에 의해 양징위 피살
1941. 3	소련으로 피신. 소련 극동군 산하 88여단 입대. 아내 김정숙과 혼인

시기	내용
1941. 9	스탈린과의 면접 후 북한 지도자로 내정
1945. 9. 19	해방 후 소련에서 북한으로 귀국
1945. 10. 14	소련점령군, 평양군중대회에서 김일성을 항일혁명 민족 영웅으로 소개
1945. 12. 17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위원장
1946. 2. 8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1946. 8. 28	북조선노동당 창당 (위원장 김두봉, 부위원장 김일성·주병하)
1946. 10. 1	김일성대학 개교
1947. 2. 22	북조선인민위원회 성립 (위원장 김일성)
1948. 9.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1949. 6. 30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으로 합당
1949. 9. 22	아내 김정숙 분만 중 사망
1963	두 번째 아내 김성애와 재혼
1972. 12. 27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 공포. 국가주석 취임
1984. 6	동독 방문
1989. 1. 1	신년사에서 남북정치협상 제의. 김수환 추기경과 문익환 목사 등을 초청
1992	개방 의사 공식 표명. 미국, 유럽 등과 적극적인 외교협상 추진
1993	김정일에게 국방위원장직 이양
1994. 7. 8	집무실에서 사망

김정일(金正日) 인물 연표

시기	내용
1941. 2. 16	부(父) 김일성과 모(母) 김정숙의 장남으로 소련에서 출생*
1942. 7	김일성의 소련군 88여단 입대로 거주지 이주
1945. 11	소련에서 북한으로 귀국
1949. 9. 22	모(母) 김정숙 사망
1950	중국 지린학원에서 유학
1953 ~ 1954	평양 삼석인민학교 및 제 4 인민학교
1954 ~ 1960	평양 제 1 초급중학교 및 남산고급중학교
1961. 7	조선노동당 입당
1964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 졸업
1964. 6. 19	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활동 시작
1967	노동당 선전선동부 문화예술지도과 과장
1970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
1971. 5	아내 성혜림과의 사이에 장남 김정남 출생
1973. 9	당 조직 및 선전 담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1974. 2	노동당 정치위원회 위원 임명.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확정
1980. 10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
1981	아내 고영희와의 사이에 차남 김정철 출생
1982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시기	내용
1984	중국 비공식 방문
1984	아내 고영희와의 사이에 삼남 김정은 출생
1990. 5	국방위원회 제 1 부위원장
1991. 12	인민군 최고사령관
1992. 4.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원수 등극
1993. 4. 9	국방위원회 위원장
1994. 7. 8	부(父) 김일성 사망
1995. 1	'다박술 초소' 시찰로 선군정치 시작
1997. 10	조선노동당 총비서 추대
1998. 9. 5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 회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2000. 5	중국 방문,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정상회담
2000. 6	김대중 전 대통령과 평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
2000. 7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2000. 10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면담
2002. 9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2004. 4	중국 방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정상회담
2006. 1	중국 방문, 우한(武漢)과 광저우(廣州) 등 경제특구 시찰
2011. 12. 17	현지 지도 중 열차에서 사망

참고: * 당시 소련에서 유리 이르세노비치 김(Юрий Ирсенович Ким)이라는 이름으로 출생한 기록이 남아있으나, 북한에서는 량강도 산지연군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함

김정은(金正恩) 인물 연표

시기	내용
1984. 1. 8	부(父) 김정일의 삼남으로 모(母) 고용희와의 사이에서 강원도 원산 출생
1996 ~ 2000	스위스 거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 이수
2000	북한으로 입국
2002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군사학 특설반 입학
2006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
2009. 1	김정일로부터 후계자 지명
2009. 5	북한, 해외 공관에 김정은 후계자 지명 통보
2009. 5	150일 전투, 100일 전투*
2010. 9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2010. 9. 28	조선인민군 대장 등극. 공식 정치무대 등장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
2011. 2. 21	군부대 시찰 사진 공개
2011. 12. 17	부(父) 김정일 사망
2011. 12. 30	김정일 공식 추도기간 종료 직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등극
2012. 4. 11	제 4차 조선노동당 대표회의에서 제 1 비서로 취임. 당권 장악 공식화

시기	내용
2012. 4. 13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으로 취임
2012. 4. 15	김일성 100번째 생일 맞이 군사 열병식에서 최초 대중 연설
2012. 7. 16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 공직 해임, 후임으로 현영철 임명
2012. 7.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원수 등극
2012. 7. 25	북한 언론에서 리설주(李雪珠)를 김정은의 아내로 공식 보도
2013. 12. 12	장성택 처형.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사형 판결 후 즉시 집행
2014. 4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해임, 후임으로 황병서 임명
2014. 3. 10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
2014. 4. 9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 유임
2015. 4. 30	인민군 총참모장 현영철을 불경죄로 처형
2015. 5. 8	SLBM 북극성 1호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 시찰
2016. 5. 9	조선노동당 제 7차 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직 신설 후 취임
2016. 6. 29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신설. 위원장직 신설 후 취임
2016. 5. 6 ~ 9	조선노동당 제 7차 대회
2016. 7. 6	미 국무부, 김정은 등 15명에 대해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조치 발표

참고: * 북한의 대규모 대중동원 경제증산 운동. 70일 전투, 10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수 차례 이용되어 온 방법 (통칭 '속도전'). 당에서 시행 날짜와 목표를 발표하면 노동자들은 이를 달성해야 함

북한 정치사 (1945~1991)

시기	내용
1945. 8. 15	해방
1945. 8. 17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결성
1945. 8. 26	소련군 평양 입성
1945. 9. 19	김일성 북한으로 귀국
1945. 12. 16	모스크바 3상회의
1946. 2. 8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발족
1946. 3. 20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
1946. 8. 28	북조선노동당 창당
1947. 2	북조선인민위원회 성립
1948. 2. 8	조선인민군 창건
1948. 8. 25	조선 최고인민회의 선거 실시
1948. 9.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포, 김일성 수상 취임, 내각 조직
1949. 6. 30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으로 합당
1950. 6. 25	6·25 전쟁 발발
1951. 7. 10	정전회담 개시
1953. 7. 27	정전협정 정식 조인
1960. 8. 14	김일성 7개년 계획 발표. 남북 연방제 통일 방안 제의
1961. 7	조·소 /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체결

시기	내용
1962. 10. 12	조·중 국경조약 체결
1962. 12. 10	노동당 제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 채택
1967. 5. 8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파 숙청. 사상 단속
1968. 1. 21	북한 무장 게릴라부대 청와대 기습 (김신조 사건)
1972. 7. 4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971. 11. 20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에서 남북 당국자 최초 접촉
1972. 12. 27	새로운 사회주의헌법 공포 (주석제 신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법제화)
1973. 6. 23	김일성, 조국통일 5대 방침 발표, 고려연방공화국 제안
1974. 2. 19	김정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선포
1974. 9. 16	국제원자력기구 (AEA) 가입
1975. 1. 1	김정일, '전군의 주체사상화' 선포
1976. 8. 18	판문점 도끼살인사건
1980. 10. 10	조선노동당 제 6차 대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제시
1985. 12. 12	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
1987.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 3차 7개년 계획 채택
1988. 9. 3	서울올림픽 불참 공식 선언
1991. 9. 17	남북한 UN 동시 가입
1991. 12. 11	남북고위급회담.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참고: * 전인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북한 정치사 (1992~2017)

시기	내용
1992. 4. 18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원수 등극
1993. 3. 12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선언 → 그 해 6월 10일 탈퇴 유보
1994. 7. 8	김일성 사망
1995. 9. 10	남북, UN 군축회의 동시 가입
1997. 2. 12	황장엽 망명
1997. 12. 9	4자회담 제 1차* (제네바)
1998. 9. 5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1차 회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1999. 6. 15	서해교전 발생 (1차 연평해전)
2000. 4. 8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남북합의서 서명 (4. 10 발표)
2000. 6. 13	1차 남북정상회담. '6. 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000. 6. 30	제 1차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여관)
2000. 7. 27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공식 가입. 이탈리아 주재 대사관 개관 (로마)
2002. 6. 29	북한 경비정 북방한계선 침범. 남북교전 발생 (2차 연평해전)
2003. 1. 10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2003. 8. 27	6자회담 제 1차** (베이징)
2004. 5. 22	북·일 정상회담 (평양)
2004. 8. 13	아테네올림픽 참가. 남·북한 개폐회식 공동입장
2004. 10. 22	외무성 대변인, 남한 핵문제 우선 논의 등 6자회담 개최조건 발표

시기	내용
2006. 10. 9	1차 핵실험 실시
2007. 10. 2	2차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발표
2008. 8	베이징올림픽 참가
2008. 10	국제원자력기구 영변 핵시설 접근 허용. 핵시설 불능화 작업 재개
2009. 4	국제원자력기구 검증팀 추방
2009. 6. 13	외무성 대변인, 핵 포기 불가 입장 공식 천명
2010. 11. 23	연평도 포격
2011. 12. 17	김정일 사망
2012. 4. 11	제 4차 당 대표자회의. 김정은을 당 제 1 비서로 추대
2012. 4. 13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5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개정. 핵 보유국 명시
2012. 7. 18	김정은 국가원수 칭호 수여
2013. 1. 1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 위원장, 육성 신년사 발표
2013. 3. 31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핵·경제 병진노선 채택
2013. 4. 3	개성공단 통행 금지 조치. 입경만 허용
2013. 8. 25	선군절을 국가명절로 지정
2013. 12. 12	장성택 처형.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사형 판결 후 즉시 집행
2016. 5. 6~9	조선노동당 제 7차 대회
2017. 10. 7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2차 전원회의

참고: * 이후 4자회담(한국-북한-미국-중국)은 1999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6차례 실시
 ** 이후 6자회담(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은 2007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6차례 실시

북한 권력구조 :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5명

리용호
(1956년생)



현직

당 정치국 상무위원
외무상
당 중앙위 위원
국무위원회 위원

주요경력

1985. 스웨덴 주재 대사관
1988. 외무성 담당지도원
1995. 외무성 참사
2001.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북측 단장
2003. 영국 주재 대사
2004. 아일랜드 주재 대사
2010. 외무성 부상, 당 중앙위 후보위원
2011.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6. 당 중앙위 위원, 외무상
정치국 후보위원, 국무위원회 위원

박광호
(나이 미상)



현직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위 부위원장
당 전문부서 부장

주요경력

매체를 통해 사실상 처음 등장한 인물
경력 관련 자료 부족

박태성
(1955년생)



현직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위 위원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평안남도 당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주요경력

2012.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2014.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대의원
2014. 평안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2016. 당 중앙위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안정수
(1948년생)



현직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위 위원
당 경공업부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주요경력

2010. 경공업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 중앙위 위원
2011.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2014. 당 중앙위 부장
2016. 당 중앙위 위원

태종수
(1936년생)



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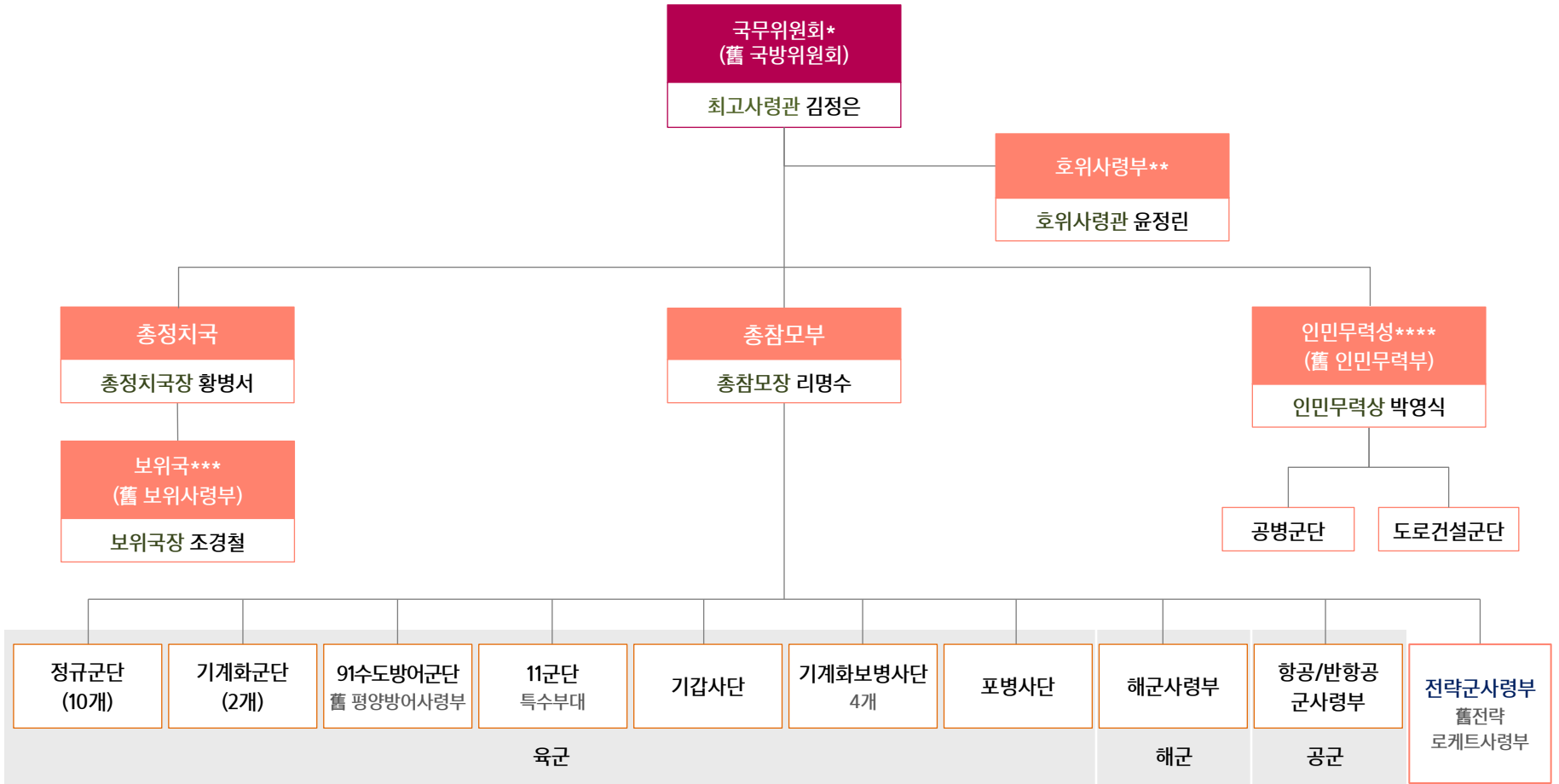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위 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주요경력

1970. 평안북도 당 비서
1976. 희천정밀기계공장 지배인
1980. 당 중앙위 후보위원
2003.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책임비서
2007. 내각 부총리
2009.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2010. 당 중앙위 비서, 정치국 후보위원
2011. 김정일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2.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201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2016. 당 중앙위 위원

* 2017년 10월 7일 조선노동당 제 7기 2차 전원회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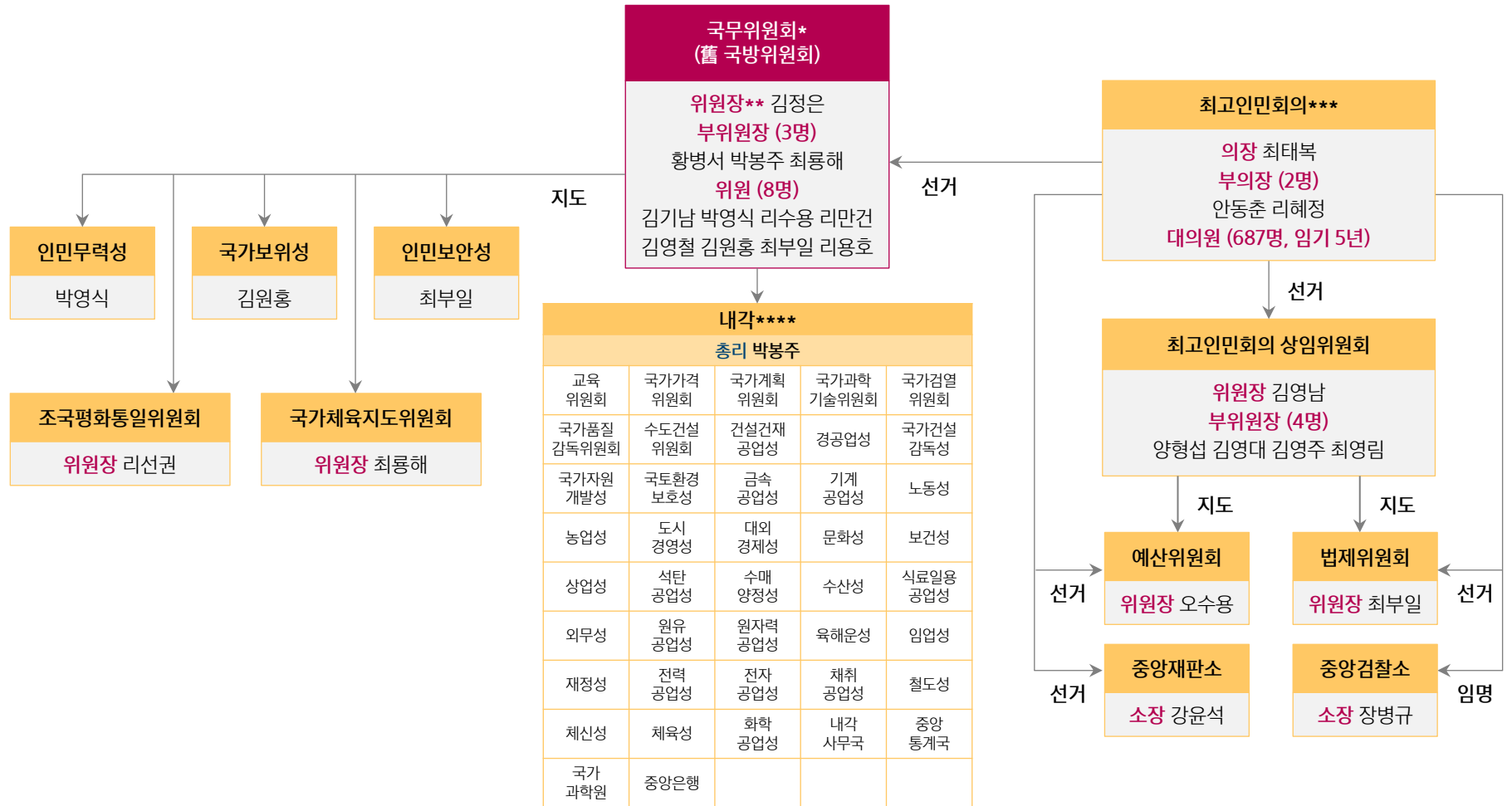
북한 권력구조 : 조선인민군



참고: *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 ** 김정은 일가와 노동당 고위 간부의 경호, 평양 내 주요 시설 경비 임무

*** 총정치국의 지도로 반체제세력을 단속하는 군 내 비밀경찰 역할; **** 국방부에 해당하는 조직, 군 관련 외교·군수·행정·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

북한 권력구조 : 의회, 내각, 사법기관



참고: * 2016년 6월 헌법개정.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 ** 국가 사업 지도, 간부 임명, 조약 비준, 비상/전시 동원령 선포 등; *** 의회에 해당. 헌법과 법률 제정; **** 국가 정책 시행, 예산 편성 등 행정업무 전반 수행

조선노동당대회 및 당대표자회

당대회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기구. 실질적으로는 당 노선·정책·전략에 관한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을 공식 확인하는 기능

차수	개최일	주요 의제 및 이슈
1차	1945. 10. 10 ~ 13	당 창건 선포, 당 정치 노선 및 조직 노선 채택
2차	1948. 3. 27 ~ 30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 목표 재확인, 당중앙위원회를 통한 김일성의 입지 공고화
3차	1956. 4. 23 ~ 26	전후 경제 복구를 위한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 시작 (1957 ~ 1961)
4차	1961. 9. 11 ~ 18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1961 ~ 1967)
5차	1970. 11. 2 ~ 13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 (1971 ~ 1976)
6차	1980. 10. 10 ~ 14	사회주의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안, 김정일을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
7차	2016. 5. 6 ~ 9	주체사상의 유일지도이념화, 김정은을 당위원장으로 추대, 공식 후계자로 지명

당대표자회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보선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회의

차수	개최일	주요 의제 및 이슈
1차	1958. 3. 3	인민경제발전 1차 5개년 계획 (1957 ~ 1961)
2차	1966. 10. 5	국방·경제 병진 정책,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3년 연장 (~1970)
3차	2010. 9. 28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
4차	2012. 4. 11	김일성과 김정일을 각각 영원한 수령과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명문화, 김정은을 제 1비서,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

자료: 통일부,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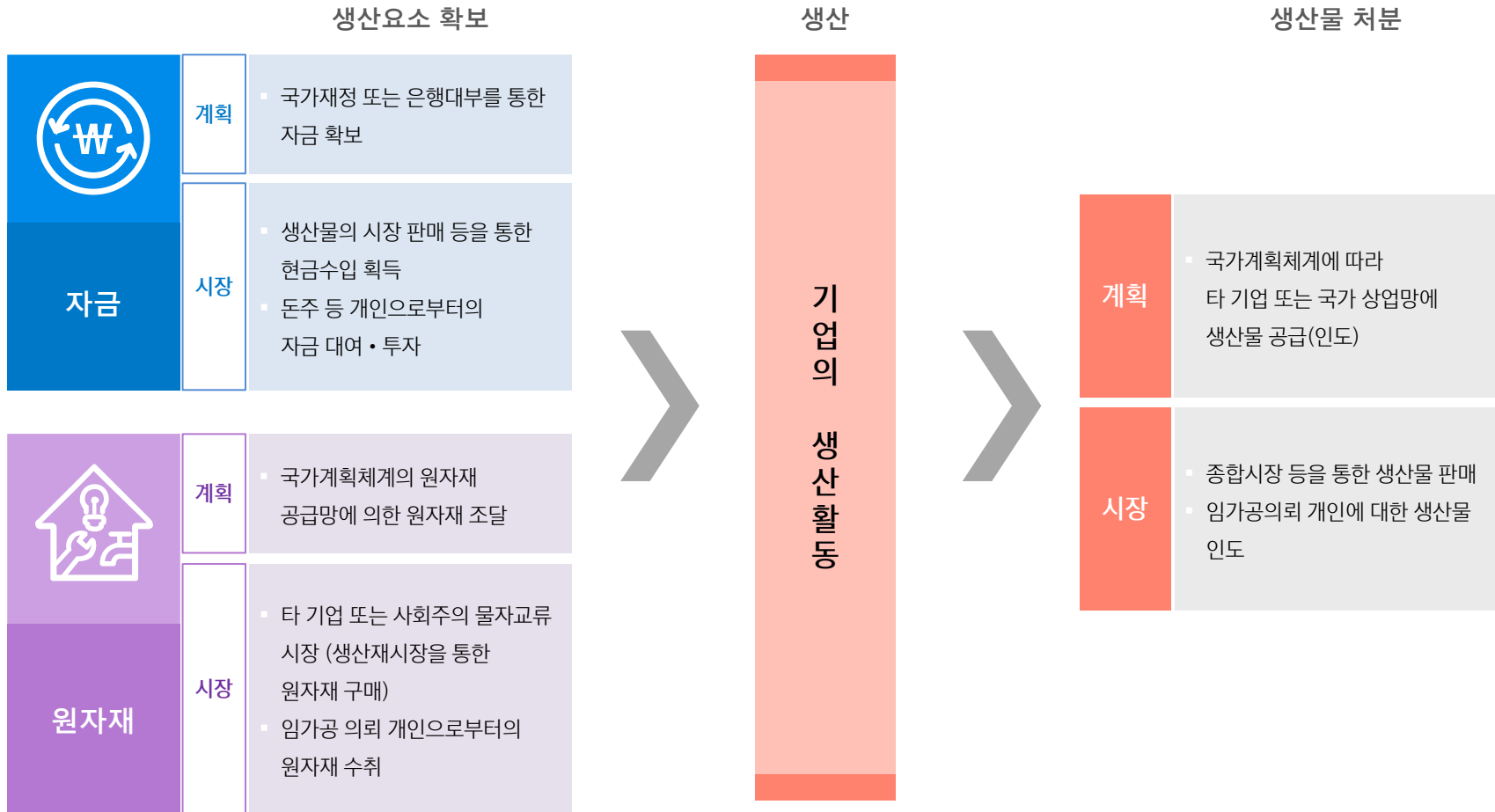
북한 광산 분포도



자료: 북한지하자원넷, 북한자원연구소

광종	기준품위	단위	매장량
금	금속기준	톤	698
은	금속기준	톤	6,356
철	Fe 63.5%	억톤	24.7
아연	금속기준	천톤	27,425
동	금속기준	천톤	4,235
망간	금속기준	천톤	2,989
니켈	금속기준	톤	147,638
마그네사이트	광석기준	억톤	70
석회석	광석기준	억톤	44
석탄-갈탄	각급	억톤	179
석탄-무연탄	각급	억톤	41

북한의 경제 구조: 계획과 시장의 공존



자료: 양문수(2013), 삼성증권 정리

북한의 종합 시장

종합시장

- ▶ 2003년 이후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 허가된 시장
기존의 장마당을 대대적으로 정비(신축, 개축, 증축)하여 '○○시장'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 ▶ 2016년 12월 기준 약 404개 존재
- ▶ 시장을 市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대표적인 북한의 종합시장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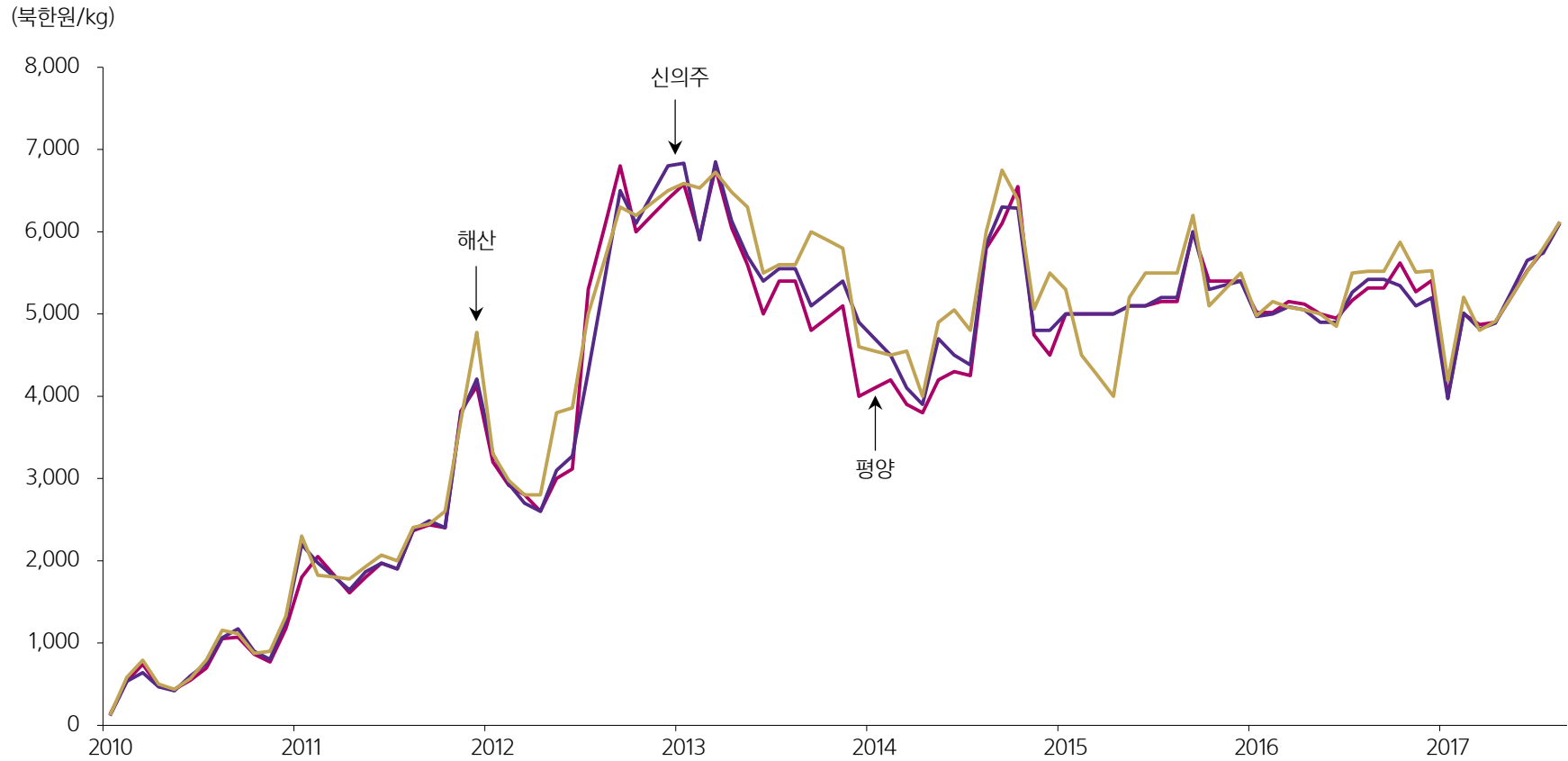
평양 종합시장



자료: 통일부, 언론보도

북한의 시장 쌀 가격

북한의 시장 쌀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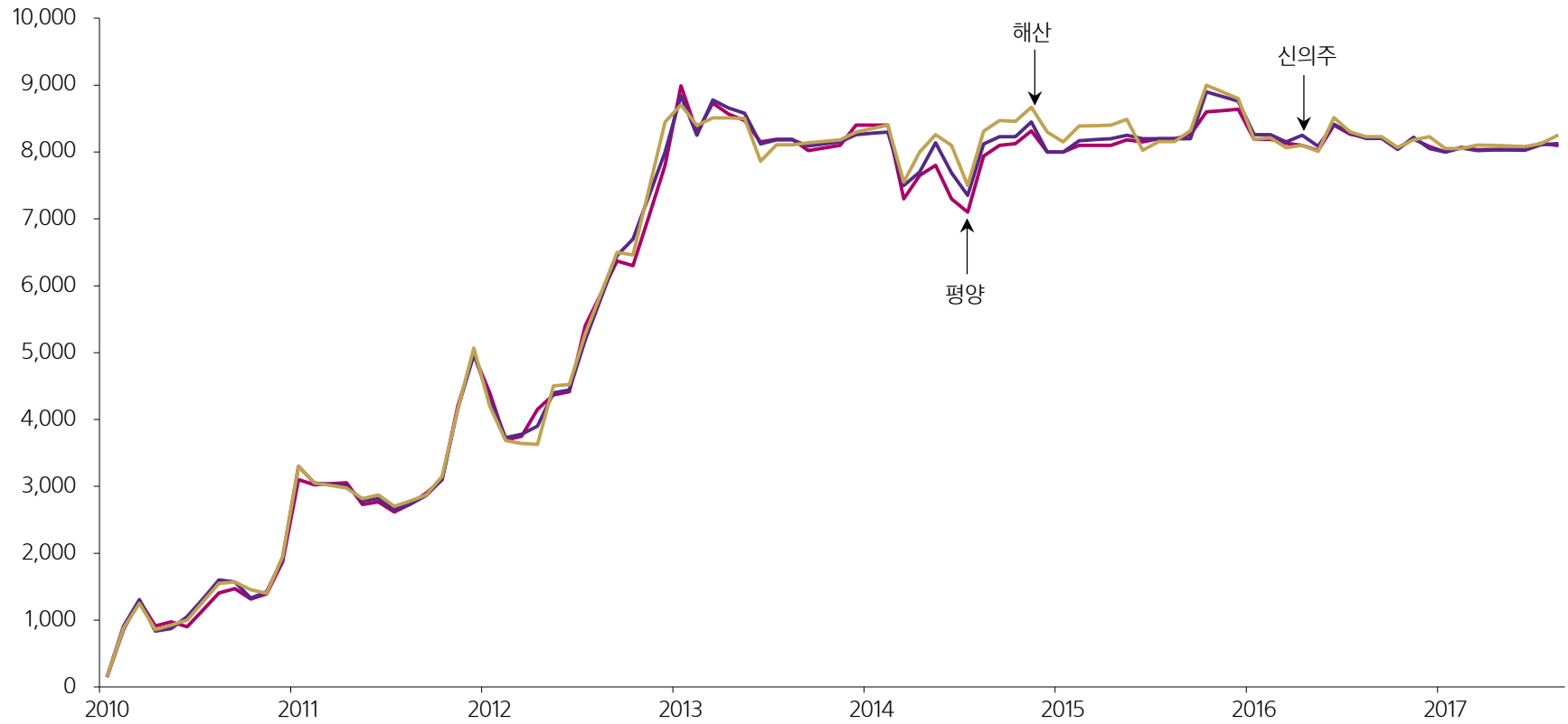


참고: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단행
자료: 데일리NK, KDI, 검색일: 2017.10.8

북한의 시장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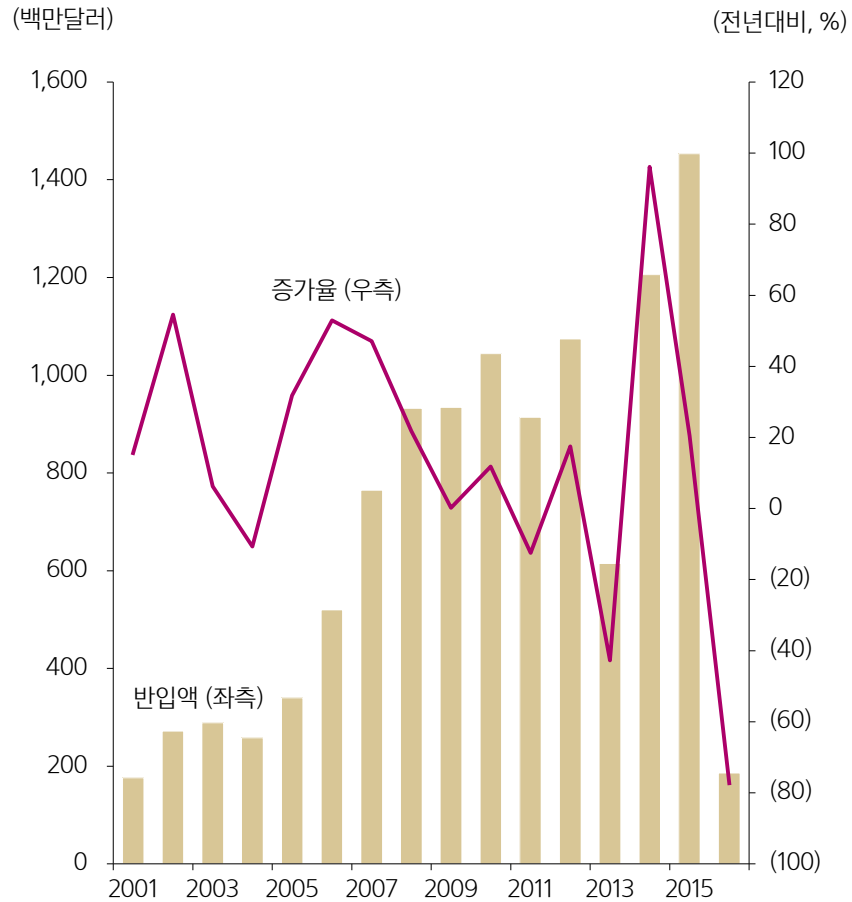
북한의 시장환율 추이

(북한원/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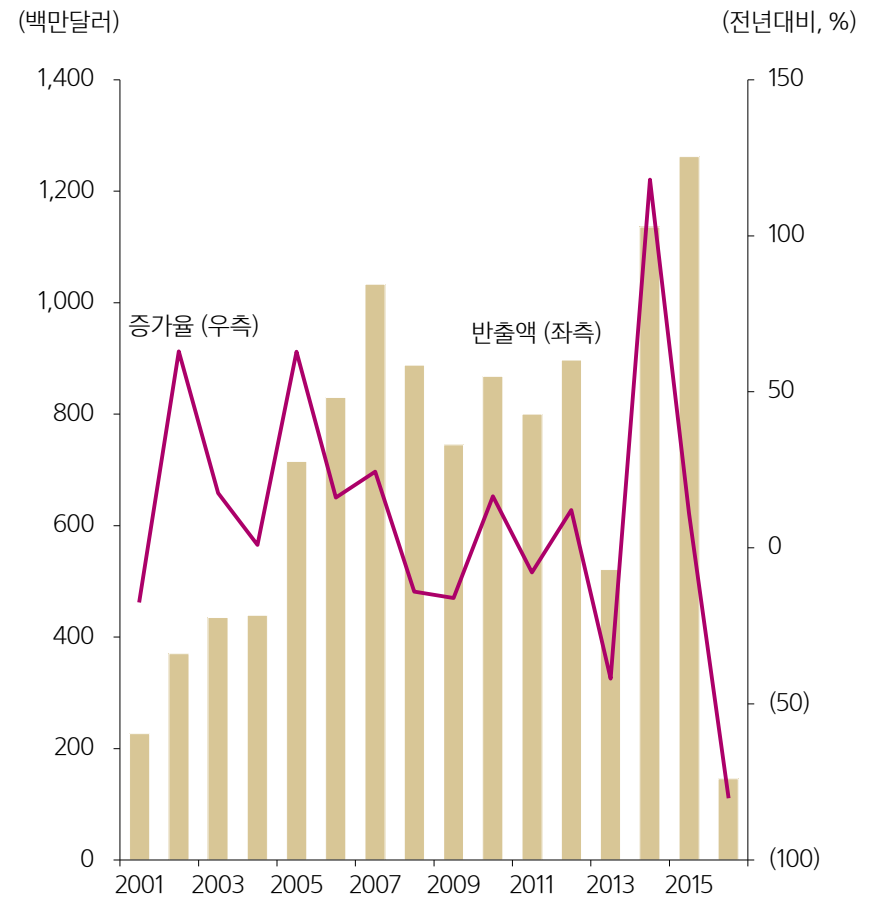
참고: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 단행
자료: 데일리NK, KDI, 검색일: 2017.10.8

반입액 및 증가율



참고: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간 내부거래로 보고 관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수입/수출이라는 용어 대신 반입/반출이라는 용어를 씀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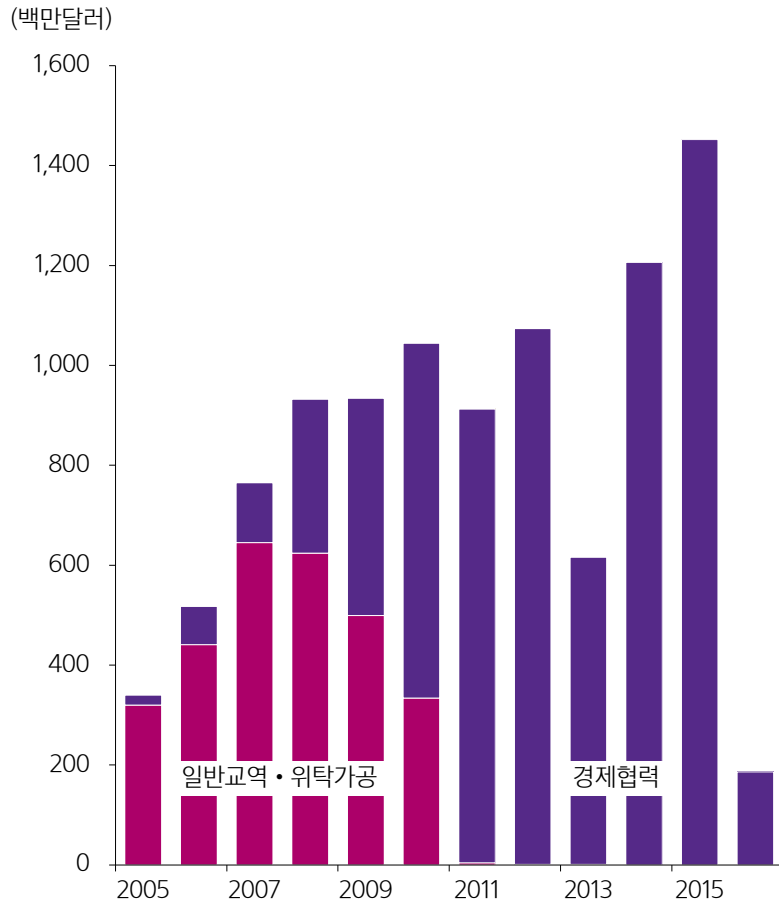
반출액 및 증가율



참고: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간 내부거래로 보고 관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수입/수출이라는 용어 대신 반입/반출이라는 용어를 씀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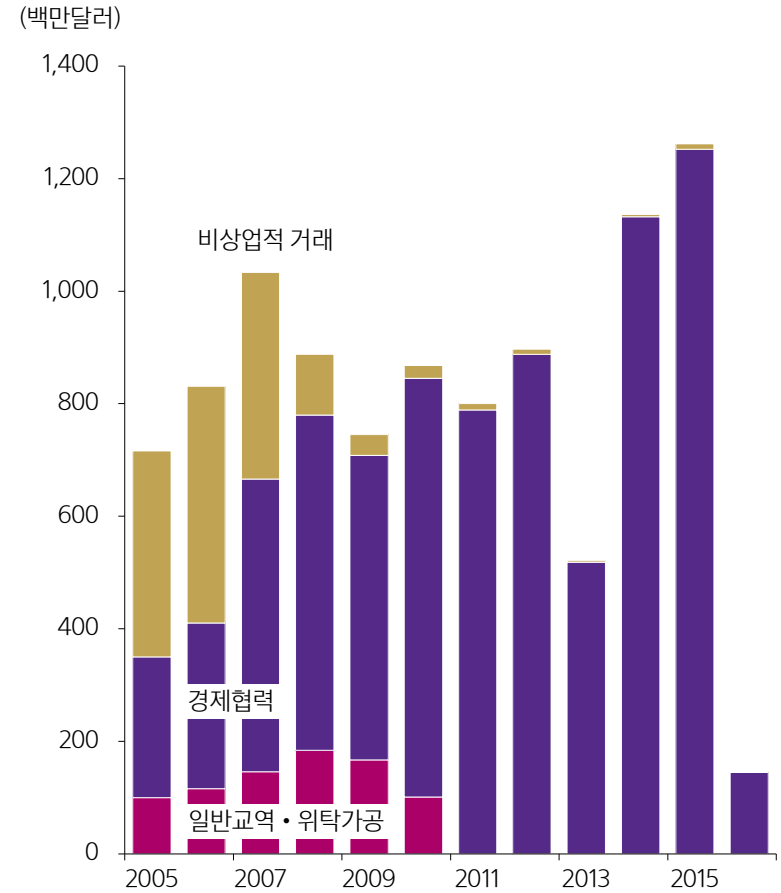
형태별 남북교역

반입



참고: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및 기타 경제협력을 의미함
 자료: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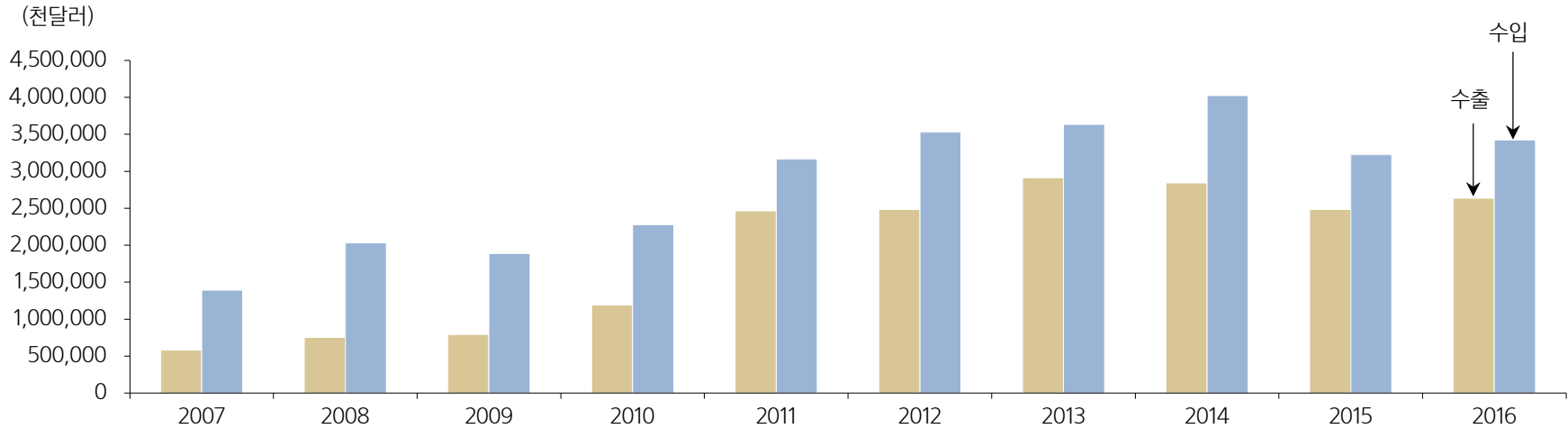
반출



참고: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및 기타 경제협력을 의미함
 자료: 통일부

북중 수출입

과거 10년간 對중국 교역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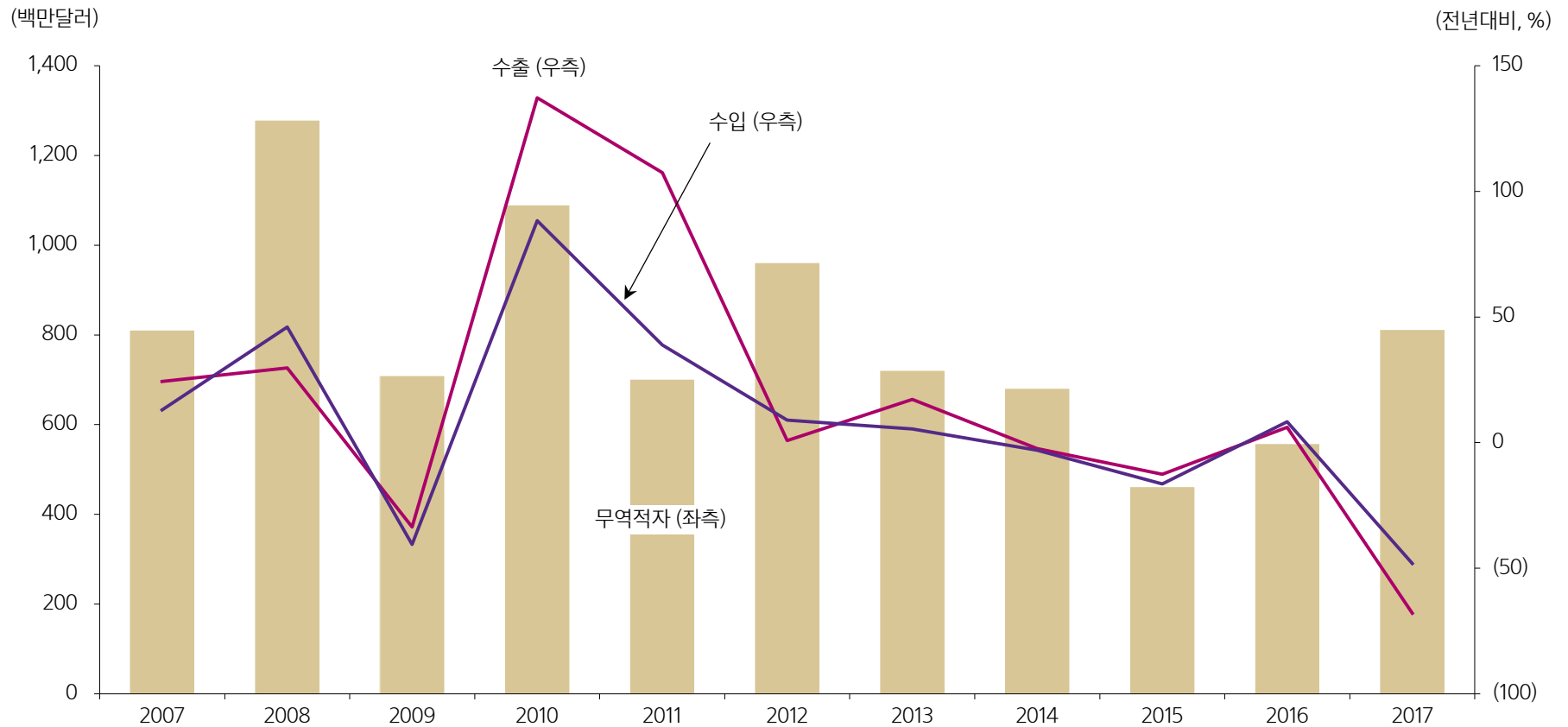


(천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	581,521	754,046	793,048	1,187,861	2,464,188	2,484,699	2,913,624	2,841,476	2,483,944	2,634,402
수입	1,392,453	2,033,233	1,887,686	2,277,816	3,165,181	3,527,843	3,632,909	4,022,515	3,226,464	3,422,035
수출입계	1,973,974	2,787,279	2,680,734	3,465,677	5,629,369	6,012,542	6,546,533	6,863,991	5,710,408	6,056,437

자료: KOTRA

북중 무역수지

북중 무역적자와 수출입 증가율



참고: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2017년의 경우 1-6월
 자료: KITA, 중국 해관, KDI

북중무역 : 수출

북한의 대중국 수출상위 5개 품목 (HS 4단위 기준, 백만달러)

2008		2009		2010		2011		2012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석탄	201.3	석탄	208.6	석탄	390.4	석탄	1,140.90	석탄	1,198.50
철광	172.3	철광	48.5	철광	194.3	철광	324.5	철광	248.6
연체동물	36.1	선철	20.6	선철	64.4	남성재킷	111.4	남성재킷	95.2
선철	35	연체동물	19.3	연체동물	53.2	선철	105.8	연체동물	91.4
페로얼로이	31	남성재킷	18.1	아연의 괴	47.7	남성코트	85.3	남성코트	88.8

2013		2014		2015		2016		2017 (1~6월)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석탄	1379.8	석탄	1,135.70	석탄	1,049.80	석탄	1,180.90	석탄	219.5
철광	298.7	철광	221.9	남성코트	168.5	남성재킷	157.7	철광	85.95
남성코트	126.7	남성코트	157.3	남성재킷	151.3	남성코트	152.2	남성재킷	55.3
남성재킷	122.2	남성재킷	152.9	여성코트	130.5	연체동물	140.7	납광	51.5
여성코트	116.5	여성코트	137.1	여성재킷	96.9	여성코트	135.5	연체동물	50.9

참고: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자료: KITA, 중국 해관, KDI

북중무역 : 수입

북한의 대중국 수입 상위 5개 품목 (HS 4단위 기준,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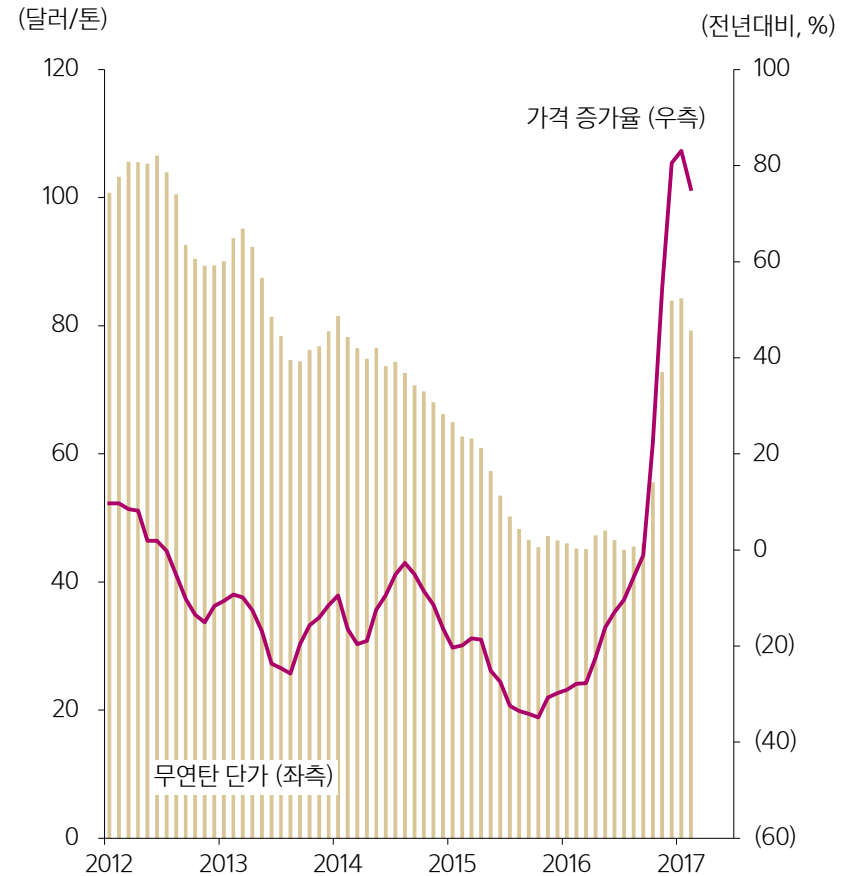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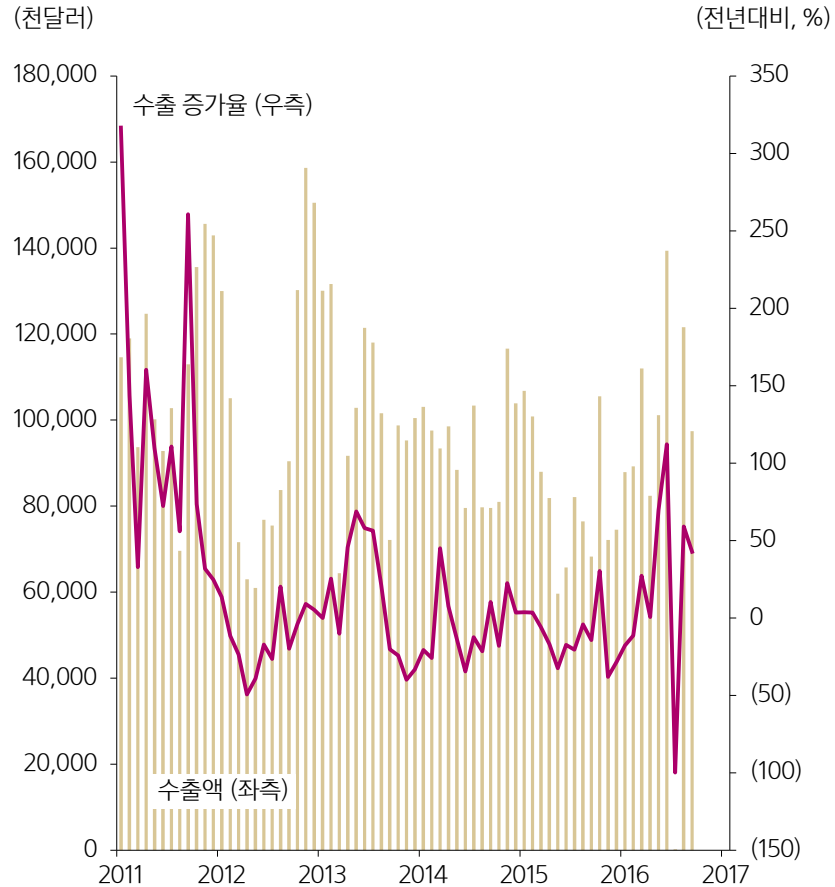
2008		2009		2010		2011		2012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원유	413.3	원유	164.2	원유	325.8	원유	518.40	원유	577.90
석유제품	120.1	석유제품	46.4	석유제품	104.9	석유제품	192.4	석유제품	161.9
합성필라 멘트사의 식물	52.4	화물자동차	41.8	화물자동차	88.3	화물자동차	146.2	화물자동차	141.2
대두유	45.1	합성필라 멘트사의 식물	33.2	합성필라 멘트사의 식물	71.7	합성필라 멘트사의 식물	99.3	합성필라 멘트사의 식물	120
석탄	44.4	대두유	26.1	전화기	62.8	원유	518.40	전화기	93.2

2013		2014		2015		2016		2017 (1~6월)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원유	598.1	석유제품	154.80	합성필라 멘트사의 식물	138.20	합성필라 멘트사의 식물	175.70	합성필라 멘트사의 식물	116.6
화물자동차	143.3	합성필라 멘트사의 식물	152.8	석유제품	116.5	화물자동차	147.2	전화기	40.6
합성필라 멘트사의 식물	136.8	전화기	112.3	화물자동차	108.1	석유제품	115	대두유	37.3
석유제품	104.5	대두유	112.2	대두유	104	대두유	98.1	기타직물	34.2
대두유	85	화물자동차	108.7	전화기	73.5	사과, 배	82	화물자동차	28.3

참고: 중국 해관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2009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자료: KITA, 중국 해관, KDI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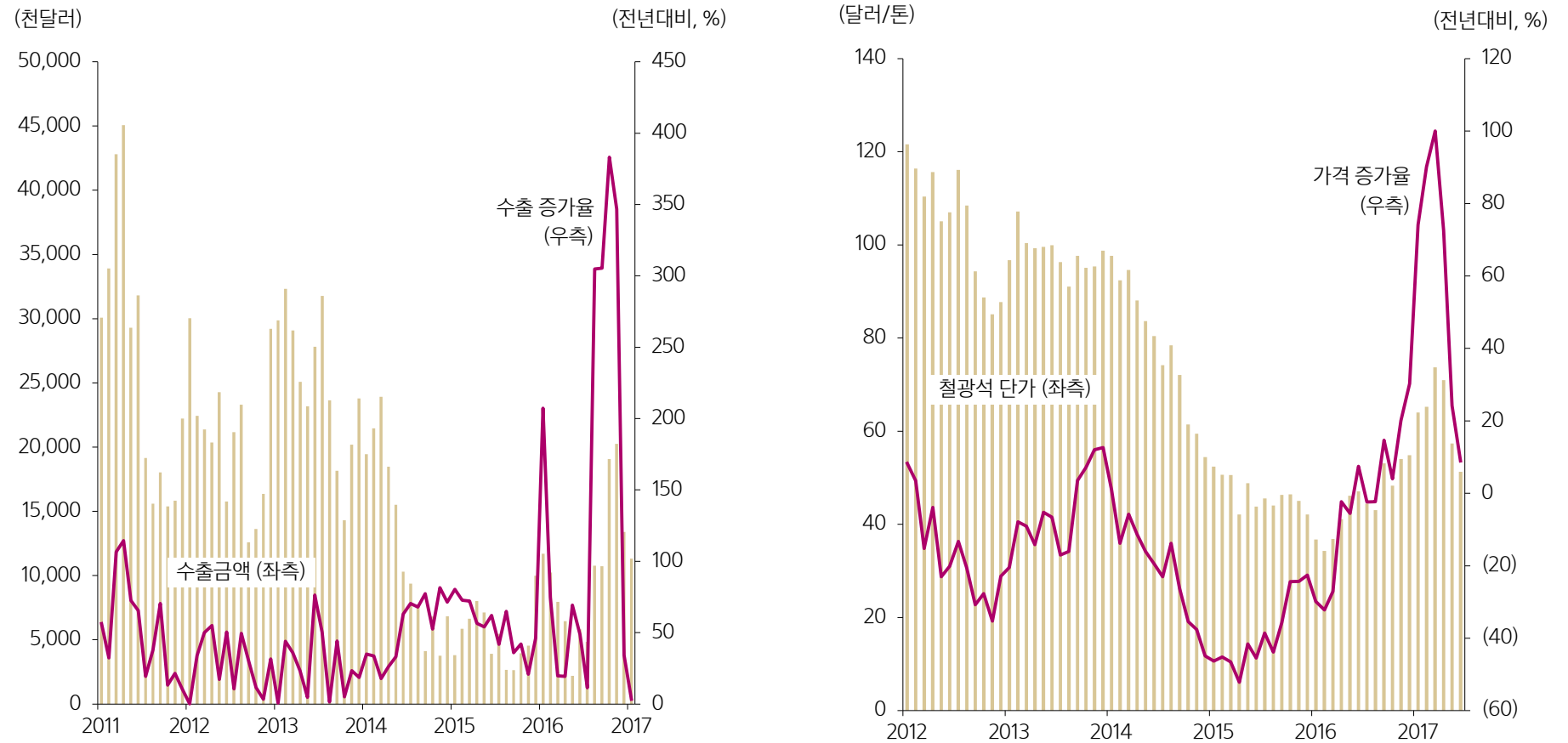
1. 무연탄



참고: 2017년 3월 이후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의 중국 向 무연탄 수출 중단
 자료: KITA, 중국 해관, KDI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상품

2. 철광석



자료: KITA, 중국 해관, KDI

북한의 대미 무역

(천달러, %, kg)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전년대비 증감	중량	전년대비 증감	금액	전년대비 증감	중량	전년대비 증감	
2000년	(2,737)	76	0	0	(154)	(425)	0	0	(2,583)
2001년	(650)	76	0	0	(26)	83	0	0	(624)
2002년	(25,012)	(3,748)	0	0	(15)	42	0	0	(24,998)
2003년	(7,977)	68	(68)	0	(59)	(293)	(1,252)	0	(7,918)
2004년	(23,750)	(198)	0	100	(1,495)	(2,434)	(6,676)	(433)	(22,255)
2005년	(5,757)	76	0	0	(3)	100	0	100	(5,754)
2006년	(3)	100	0	0	0	100	0	0	(3)
2007년	(1,728)	(57,500)	0	0	0	0	0	0	(1,728)
2008년	(52,151)	(2,918)	0	0	0	0	0	0	(52,151)
2009년	(903)	98	0	0	0	0	0	0	(903)
2010년	(2,867)	(217)	0	0	(8)	0	0	0	(2,859)
2011년	(9,406)	(228)	(4,501)	0	0	100	0	0	(9,406)
2012년	(11,952)	(27)	(1,461)	68	0	0	0	0	(11,952)
2013년	(6,583)	45	(2,550)	(75)	0	0	0	0	(6,583)
2014년	(24,029)	(265)	(1)	100	0	0	0	0	(24,029)
2015년	(4,752)	80	0	100	0	0	0	0	(4,752)
2016년	(139)	97	0	0	0	0	0	0	(139)
2017년 1~7월	(3)	98	0	0	0	0	0	0	(3)

자료: KITA

북한의 대 EU 무역

(천유로, %, 톤)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전년대비 증감	중량	전년대비 증감	금액	전년대비 증감	중량	전년대비 증감	
2003년	(226,014)	0	(77,123)	0	(44,438)	0	(40,923)	0	(181,576)
2004년	(136,639)	40	(43,714)	43	(109,424)	(146)	(70,087)	(71)	(27,215)
2005년	(159,330)	(17)	(41,039)	6	(48,265)	56	(31,086)	56	(111,066)
2006년	(124,581)	22	(27,560)	33	(149,298)	(209)	(118,256)	(280)	24,717
2007년	(57,675)	54	(11,101)	60	(62,295)	58	(82,382)	30	4,620
2008년	(95,358)	(65)	(91,339)	(723)	(110,764)	(78)	(67,263)	18	15,406
2009년	(72,537)	24	(59,482)	35	(50,534)	54	(47,002)	30	(22,003)
2010년	(67,883)	6	(36,333)	39	(98,822)	(96)	(146,145)	(211)	30,939
2011년	(42,068)	38	(11,326)	69	(116,333)	(18)	(140,534)	4	74,265
2012년	(45,135)	(7)	(8,308)	27	(23,543)	80	(17,729)	87	(21,592)
2013년	(26,668)	41	(4,816)	42	(115,492)	(391)	(152,525)	(760)	88,824
2014년	(17,440)	35	(3,771)	22	(32,281)	72	(6,536)	96	14,841
2015년	(19,069)	(9)	(4,130)	(10)	(11,186)	65	(3,988)	39	(7,883)
2016년	(20,281)	(6)	(6,182)	(50)	(5,578)	50	(3,198)	20	(14,703)
2017년 1~3월	(2,988)	52	(580)	58	(1,218)	50	(536)	56	(1,769)

자료: KITA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자료: 언론 보도

남북 주요 경제협력 사업 경과 (1)

개성공단 (2000 ~ 2016년. 현재 중단 상태)

- ▶ 2016년 2월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 상태
- ▶ 중단 직전까지의 개발 진도율은 대지 면적 5%, 업체 수 6%, 고용 인력 15% 수준 (전체 계획 대비)
- ▶ 2015년 기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남북 교역은 27억 달러로, 남북한 총 교역 및 상업적 거래의 99% 차지

관광 (1998 ~ 2008년. 현재 중단 상태)

- ▶ 금강산 관광: 1998년 11월 개시.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
- ▶ 개성 관광: 2007년 12월 시작. 2008년 11월 중단
- ▶ 백두산 관광: 2008년 5월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으나(2007년 11월 합의서에 서명),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진전 없음

운송 (2000 ~ 2008년. 현재 중단 상태)

-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합의
- ▶ 2003년: 경의선과 동해선의 군사분계선 상 철도궤도 연결, 경의선 도로 차량 임시 통행, 동해선 도로를 통한 금강산 육로 시범 관광
- ▶ 2007년: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범운행, 10월 정상회담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합의 및 공동현지조사
- ▶ 2008년: 북한의 12. 1 조치*로 사업 중단

* 금강산 남측 관광객 피격사건(2008. 7) 이후 남측이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자 북측이 취한 남북 간 육로통행 및 북한 내 체류 관련 제재 조치

남북 주요 경제협력 사업 경과 (2)

나진-하산 프로젝트 (2006 ~ 2016년. 현재 중단 상태)

- ▶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연결하는 54km 철도 개보수, 나진항 현대화, 화물터미널 건설과 화물열차와의 연계 등 복합물류시설 사업
- ▶ 국내 민간 3개사(POSCO, 현대상선, 코레일)가 북·러 합작사 '나선콘트랙스'의 러시아 지분 일부를 매입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POSCO: 러시아와 북한 간 유연탄 수송망 확보
현대상선: 해상 운송
코레일: 철도 운영
- ▶ 수 차례 현지 실사와 3차례의 시범 사업 (2014년 11월, 2015년 4월, 2015년 12월)
- ▶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 국면 진입으로 보류된 상황

광역두만강개발계획 (1992년 ~ 현재)

- ▶ 두만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교통·에너지·관광·환경 등 개발과 투자유치를 도모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사업
- ▶ 1992년 두만강유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으로 시작: 중국 옌지·북한 청진·러시아 나훗카의 삼각지역
- ▶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로 명칭 변경: 사업지역을 한국의 동해안 지역·북한의 나선 경제무역지대·중국의 동북 3성·내몽고자치구·몽골 동부·러시아 연해주와 하바롭스크까지 확대
- ▶ 2009년 북한 탈퇴
- ▶ 현재 4개 회원국(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과 1개 관찰국(일본)이 참여하여 운영 중

남북 경협 관련 주요 일지 (1971~2003)

시기	내용
1971. 8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971. 9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총 25차 실시 (~1972. 8)
1972. 8	남북적십자 본회담 총 7차 실시 (~1973. 7)
1972. 11	남북조절위원회 총 3차 실시 (~1973. 6)
1984. 9	북한, 우리 측에 수해 물자 지원
1984. 11	남북경제회담 총 5차 실시 (~1985. 11)
1988. 7	노태우 대통령,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7.7 선언) 발표
1988. 10	남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 발표
1989. 1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첫 방북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 체결)
1989.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
1989.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
1990.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법률 제정
1991. 12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1992. 2	남북 간 위탁가공 교역 시작
1992. 9	남북기본합의서 제 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 부속합의서 채택
1994. 11	1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참고: * 정식명칭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시기	내용
1995. 6	대북 식량지원 15만 톤 실시
1996. 9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남한의 대북지원 및 투자 동결
1998. 4	제 1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1998. 6	정주영 명예회장 1차 소떼 방북,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 합의
1998. 10	정주영 명예회장 2차 소떼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1998. 11	금강산관광선 금강호 첫 출항
1999. 2	현대그룹, 남북 경협전담사 (주)현대아산 설립
1999. 6	당국 차원의 대북 비료 지원 최초 실시
2000. 6	남북 최초 정상회담 개최 (6.15 선언)
2000. 10	대북 식량차관 최초 실시
2000. 8	현대-北 아태위원회, 개성공단 6,612만㎡ 개발 합의서 체결
2002. 9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2002. 11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3. 2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 및 금강산 시범 육로관광
2003. 6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2003. 8	남북 4대 경제협력 합의서* 발효

참고: * 투자보장, 이종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절제

남북 경협 관련 주요 일지 (2004~2016)

시기	내용
2004. 1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4. 6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
2004. 12	개성공업지구 첫 제품 생산
2005. 12	연간 남북 교역 규모 10억 달러 돌파
2006. 11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1만명 고용 돌파
2007. 1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 1억 달러 달성
2007. 5	남북 열차 시험운행 실시
2007. 10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8. 7	관광객 박왕자(53)씨 북한군 총격에 사망.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2008. 11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 5억 달러 돌파
2008. 12	북한, 남북육로통행 제한 등 조치
2009. 8	북한, 남북육로통행 제한 등 조치 해제
2010. 5	천안함 사건으로 개성공단 제외한 남북교역·교류 중단 발표 (5. 24 조치)
2010. 8	경협 기업 대상 남북협력기금 대출
2010. 10	북한 수해 지원
2010. 11	연평도 포격 도발로 수해 지원 중단

시기	내용
2011. 4	북한,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 독점권 취소 일방 발표
2012. 1 ~ 12	남북협력기금 2차 대출 및 긴급운영경비 무상 지원
2012. 1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5만 명 돌파
2012. 9	대한적십자사 수해 지원 제의했으나 북한이 거절
2013. 1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 20억 달러 달성
2013. 4	개성공단 잠정 중단. 북한 근로자 철수
2013. 9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소
2014. 2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1차 현지 실사
2014. 7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2차 현지 실사
2014. 11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1차 시범 운송
2015. 4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2차 시범 운송
2015. 8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 복원 기공식
2015. 6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
2015. 10	개성 만월대 출토 유물 특별전시회 (서울·개성)
2015. 11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3차 시범 운송
2016. 2	한국, 北 도발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vs 北,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

개성공단 사업 일지

시기	내용
2000. 8	현대아산-북한 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2. 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성공단 착공 추진 합의
2002. 11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3. 6	개성공단 1단계 개발 착공식
2004. 4	통일부, 1단계 100만평(3.3km ²) 협력사업 승인
2004. 6	시범단지 15개 기업 입주계약 체결
2004. 12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2005. 9	1단계 본 단지 1차 24개 입주기업 선정 및 계약 체결
2007. 5	한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7. 6	1단계 본 단지 2차 183개 입주기업 선정 및 계약 체결
2008. 11	누적 총 생산액 5억 달러 달성
2009. 5	북한, 개성공단 관련법규 및 계약 무효 선언
2009. 6	남북한, 1~2차 개성 실무회담
2009. 7	남북한, 3차 개성 실무회담
2010. 5	천안함 침몰로 개성공단 제외한 남북교역·교류 중단 발표 (5. 24 조치)
2010. 7	북한 근로자 총 임금 지급액 1억 달러 달성

시기	내용
2010. 9	누적 총 생산액 10억 달러 달성
2011. 12	누적 총 생산액 15억 달러 달성
2012. 10	북한, 개성공단 8개 기업에 총 16만 달러 과세 일방 부과
2013. 3	북한, 최고 존엄 훼손 시 개성공단 폐쇄 언급
2013. 4	김양건 북한 대남 담당 비서,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 발표
2013. 5	한국 측 근로자 잔류 인원 전원 귀환
2013. 6	북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당국회담 제의했으나 결렬
2013. 7	남북 실무회담 개최 (개성공단 정상화 인식 공유)
2013. 8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5개항 정상화 합의)
2013. 9	개성공단 재가동
2014. 4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 방문
2014. 5	세계한인무역협회 및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 방문
2014. 6	독일 바늘업체, '그로쓰 베커르트' 영업점 설치 (외국 기업 최초)
2014. 8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 행사 요원 7,000명에 단체복 제공
2014. 10	공동 의류브랜드 SSBRO, 첫 홈쇼핑에서 매진 판매
2016. 2	한국, 北 도발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vs 北,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

남한의 대북 지원 내역

정부 지원*

연도	내용	지원방식	규모 (억원)
1995	쌀 15만 톤	직접지원	1,854
1996	분유, 기상자재 등	UN 경유	24
1997	옥수수, 분유, 의료 등	UN 경유	240
1998	옥수수, 밀가루	UN 경유	154
1999	비료 11.5만 톤	직접 지원	339
2000	비료 30만 톤	직접 지원	978
2001	내의, 옥수수, 비료 등	직접 지원, WFP, WHO	975
2002	비료, 말라리아 방역	직접 지원, WFP, WHO	1,140
2003	취약계층 지원 등	직접 지원, WFP, UNICEF	1,097
2004	의약품, 비료 등	직접 지원, WFP, WHO	1,313
2005	수해응급구호 등	직접 지원, WFP, UNICEF	1,360
2006	영·유아 지원 등	직접 지원, WFP, UNICEF	2,273
2007	구제역, 식량 지원 등	직접 지원, WFP, WHO	1,983
2008	영·유아, 의료 지원 등	WHO, UNICEF, 국제백신연구소	438
2009	의료인력교육 등	직접 지원, WFP, WHO	294
2010	신종플루, 수해 지원	민간단체 기금 지원	204
2011	영·유아, 의약품 지원	UNICEF	65
2012	백신 및 의료교육	국제백신연구소	23
2013	보건 및 영양 지원	WHO, UNICEF	133
2014	보건 및 영양 지원	WHO, WFP	141
2015	보건, 의료인력 지원	UNICEF, WFP	140
2016	의료장비 등	민간단체 기금 지원	1
합계			15,569

참고: * 식량차관은 제외

민간 지원

연도	내용	지원방식	규모 (억원)
1995	담요 8천 매	국적 경유	2
1996	밀가루, 분유, 식용유	국적 경유	12
1997	옥수수, 감자, 라면 등	국적·적십자 경유	182
1998	약품, 분유, 젓소 등	적십자 경유	275
1999	옥수수, 약품, 비료 등	적십자·독자 창구	223
2000	감귤, 의류, 설탕 등	적십자·독자 창구	387
2001	옥수수, 설탕, 분유 등	적십자·독자 창구	782
2002	의류, 의료장비 등	적십자·독자 창구	576
2003	의류, 생활용품 등	적십자·독자 창구	766
2004	농자재, 의약품 등	적십자·독자 창구	1,558
2005	밀가루, 의약품 등	적십자·독자 창구	779
2006	밀가루, 수해 복구 등	적십자·독자 창구	709
2007	의료소모품, 감귤 등	적십자·독자 창구	909
2008	의류, 양모장 자재 등	적십자·독자 창구	725
2009	식량, 온실자재 등	적십자·독자 창구	377
2010	연탄, 말라리아 방역	적십자·독자 창구	200
2011	분유, 두유, 의약품 등	독자 창구	131
2012	밀가루, 수해 지원 등	독자 창구	118
2013	영양뽕재료 등	독자 창구	51
2014	영양식, 농자재 등	적십자·독자 창구	54
2015	진료소자재, 모뎀 등	적십자·독자 창구	114
2016	영양뽕재료, 조제분유 등	독자 창구	2
합계			8,931

북핵문제 관련 주요 사건 일지 (1961~2000)

시기	내용
1961	영변 원자력연구센터 착공 (1964. 4 가동)
1963	IRT-2000 실험용 경수로 착공 (1965 부분가동, 1967 정상가동)
1979	영변 흑연감속로 착공 (1986 가동, 1994 동결, 2003 재가동)
1985. 12	북한 핵확산방지조약 (NPT) 가입
1987	방사화학실험실 (재처리시설) 착공
1991. 9	남북 UN 동시 가입
1991. 9	부시 미 대통령,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
1991. 11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결정
1991. 12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991. 12. 31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채택
1992. 1	북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협정 정식 서명 (1992. 4 발효)
1993. 2	국제원자력기구 (IAEA) 대북 특별사찰 결의안 채택
1993. 3	북한 준전시상태 선포
1993. 3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1993. 3. 12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선언 → 그 해 6월 10일 탈퇴 유보
1993. 4. 9	김정일 국방위원장 취임
1993. 5	북한 첫 탄두미사일인 노동미사일 (MRBM) 시험발사
1994. 5	북한 8,000개 연료봉 교체작업 시작

시기	내용
1994. 6	미 카터 전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회담 → 대화 국면 조성
1994. 7. 8	김일성 사망
1994. 10. 21	북·미기본합의 (제네바합의) 체결
1995. 1	미국, 대북 중유 제공 개시
1995. 3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설립
1995. 12	북한 - KEDO 간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1996	전병호 노동당 군수비서 파키스탄 방문 (미사일 - HEU* 커넥션 구축)
1996. 4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1997. 8	경수로공사 착공
1997. 9	노동미사일 실전배치 포착
1997. 12	4자회담 (1998. 8 까지 총 6차례 본회담 개최)
1998	미 클린턴 행정부, 북한 HEU 원심분리기 구입 시도 포착
1998. 5	인도 및 파키스탄 핵실험
1998. 8	뉴욕타임즈,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 보도**
1998. 8. 31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
1999. 5	일본, 신가이드라인 관련법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안) 통과
1999. 9	베를린 북·미고위급회담
2000. 6. 15	남·북 정상회담

참고: * 고농축 우라늄; ** 1999년 5월과 2000년 5월 사찰 결과 빈 공간으로 확인됨

북핵문제 관련 주요 사건 일지 (2000~2017)

시기	내용
2000. 10	조명록 특사 워싱턴 방문. 북·미 공동 커뮤니케 발표
2000. 10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2001. 3	한·미 정상회담. 부시 미 대통령, 김정일에 대한 '상당한 회의감' 표출
2001. 6	부시 미 대통령, 미사일 검증 등 대북정책 검토 내용 발표
2001. 9. 11	9·11 테러. 이후 10월 미국은 아프간전쟁 돌입
2001. 11	북한, 2개의 반테러협약 서명
2002. 1. 29	부시 미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2002. 6	부시 미 대통령, 선제공격 독트린 발표
2002. 9	북·일 정상회담. 평양선언 발표
2002. 10	제임스 켈리 동아태차관보 방북. HEU 문제 제기
2002. 12	미사일 선적 이동 중 북한선박, 미국과 스페인 공동작전으로 나포
2003. 1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2003. 6	미국 주도의 PSI* 발족
2003. 7	북한, 미국에 8,000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통보
2003. 7	미 하원, 경수로 지원 중단 세출예산 통과
2003. 8	1차 6자회담
2004. 2	2차 6자회담
2004. 6	3차 6자회담

참고: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시기	내용
2005. 2. 10	북한, 핵보유선언 및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선언
2005. 6	김정일, 정동영 의원과 회담에서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
2005. 9. 19	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에서 <9. 19 공동성명> 채택
2005. 10	미국, 대북 금융제재 개시
2006. 7	대포동 2호 시험발사
2006. 10	북한 외무성 성명, "앞으로 핵실험을 하게 된다"
2006. 10. 9	1차 핵실험
2007. 2. 13	5차 6자회담 3단계 회담에서 <2. 13 합의문> 채택
2008. 8. 29	북한, 핵불능화 중단 및 원상복구 선언
2009. 5. 25	2차 핵실험
2013. 2. 12	3차 핵실험
2016. 1. 6	4차 핵실험
2016. 8	북극성 - 1호 (SLBM*) 시험발사
2016. 9. 9	5차 핵실험
2017. 2. 12	북극성 - 2호 (SLBM) 시험발사
2017. 7. 14	화성 - 14호 (ICBM**) 고각 시험발사
2017. 9. 3	6차 핵실험
2017. 9. 4	한·미 간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합의

참고: *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핵문제 관련 주요 사건과 금융시장 반응 (2006~2011)

일시	이벤트	구분	시장동향 (이벤트 발생일 대비 등락)		
			1개월	2개월	3개월
2006.10.9	1차 핵실험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0.52	(4.40)	(5.70)
		국채금리 (3년물, %pt)	0.11	0.15	0.31
		CDS 프리미엄 (%pt)	(3.57)	(9.00)	(6.33)
		원/달러 (%)	(2.83)	(4.52)	(2.63)
		원/엔 (%)	(1.85)	(2.23)	(2.85)
2008.8.29	핵불능화 중단선언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13.16	4.42	8.00
		국채금리 (3년물, %pt)	0.21	(1.23)	(0.90)
		CDS 프리미엄 (%pt)	54.64	461.35	252.95
		원/달러 (%)	9.14	31.03	34.88
		원/엔 (%)	13.97	46.38	53.61
2009.5.25	2차 핵실험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1.17)	(1.28)	1.87
		국채금리 (3년물, %pt)	0.36	0.35	0.53
		CDS 프리미엄 (%pt)	45.77	(3.78)	(12.03)
		원/달러 (%)	3.20	0.06	(0.05)
		원/엔 (%)	2.00	0.09	0.63
2010.3.26	천안함 침몰사건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1.04	1.48	4.87
		국채금리 (3년물, %pt)	(0.09)	(0.23)	0.06
		CDS 프리미엄 (%pt)	1.09	70.78	44.87
		원/달러 (%)	(3.07)	9.96	6.71
		원/엔 (%)	(4.57)	13.15	10.65
2010.11.23	연평도 포격사건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2.98	5.37	2.67
		국채금리 (3년물, %pt)	(0.19)	0.46	0.47
		CDS 프리미엄 (%pt)	(4.40)	(1.44)	0.54
		원/달러 (%)	1.01	(1.44)	(1.19)
		원/엔 (%)	1.30	(0.68)	(0.41)
2011.12.17	김정일 사망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2.76)	(3.08)	(2.74)
		국채금리 (3년물, %pt)	0.02	0.10	0.26
		CDS 프리미엄 (%pt)	5.12	5.12	(43.94)
		원/달러 (%)	(0.33)	(2.31)	(2.84)
		원/엔 (%)	0.93	(3.77)	(9.46)

자료: Thomson Reuters, WiseFn, 삼성증권

북핵문제 관련 주요 사건과 금융시장 반응 (2013~2017)

일시	이벤트	구분	시장동향 (이벤트 발생일 대비 등락)		
			1개월	2개월	3개월
2013. 2. 12	3차 핵실험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2.24	2.06	0.84
		국채금리 (3년물, %pt)	(0.10)	(0.04)	(0.14)
		CDS 프리미엄 (%pt)	(3.74)	11.75	(2.06)
		원/달러 (%)	0.40	3.51	1.92
		원/엔 (%)	(2.30)	(1.60)	(6.13)
2016. 1. 6	4차 핵실험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2.19	(1.48)	(1.07)
		국채금리 (3년물, %pt)	(0.13)	(0.14)	(0.18)
		CDS 프리미엄 (%pt)	8.44	1.45	5.70
		원/달러 (%)	(0.04)	0.29	(3.49)
		원/엔 (%)	1.56	4.83	4.40
2016. 9. 9	5차 핵실험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0.20	(1.43)	0.83
		국채금리 (3년물, %pt)	0.01	0.07	0.41
		CDS 프리미엄 (%pt)	0.66	7.72	1.83
		원/달러 (%)	0.91	4.65	6.15
		원/엔 (%)	(0.09)	2.02	(5.45)
2017. 7. 4	화성-14호 시험발사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4.22)	(8.26)	(8.23)
		국채금리 (3년물, %pt)	0.00	0.04	0.15
		CDS 프리미엄 (%pt)	1.56	8.73	13.92
		원/달러 (%)	(2.22)	(1.53)	(0.45)
		원/엔 (%)	0.13	1.31	(0.30)
2017. 9. 3	6차 핵실험	증시 (EM 대비 상대성과, %pt)	1.09	-	-
		국채금리 (3년물, %pt)	0.14	-	-
		CDS 프리미엄 (%pt)	13.42	-	-
		원/달러 (%)	2.01	-	-
		원/엔 (%)	(0.11)	-	-

자료: Thomson Reuters, WiseFn, 삼성증권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국가 및 인원 추정치

연도	관련 보고서	기관	국가 및 인원 추정치
2012	The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n Overseas Labor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Human Rights of NK Overseas Labor	40개국, 60,000~65,000명
2013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 현황	외교부	40개국, 46,000명 중국(19,000), 러시아(20,000), 몽골(1,800), 아프리카 등
2014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그 이후의 북한 인권	아산정책연구원	16개국, 52,300~53,100명 러시아(20,000), 중국(19,000), 몽골(1,300~2,000), 쿠웨이트(5,000), UAE(2,000), 카타르(1,800), 앙골라(1,000), 폴란드(400~500), 오만(300), 말레이시아(300), 리비아(300), 미얀마(200), 나이지리아(200), 알제리(200), 적도기니(200), 에티오피아(100)
2015, 2016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북한 밖의 북한	북한인권정보센터	러시아, 중국(19,000), 쿠웨이트(3,500~5,000), UAE(2,000), 카타르(1,800, 매년 680명 신규인력), 오만(300), 폴란드(800~1,000), 몰타(40),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400~500),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앙골라, 적도기니
2016	North Korean Forced Labor in the EU, the Polish Case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아시아 센터	폴란드(2008~2015년, 총 2,783건 취업허가증 발급) 오스트리아(104~111)
2016	인신매매 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미국 국무부	러시아, 중국(송출 규모 가장 큰 국가)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국가
2016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세미나 주제 발표	통일연구원	20~40개국, 110,000~123,000명 중국(70,000~80,000), 러시아(30,000), 쿠웨이트(4,000~5,000), UAE(2,000), 카타르(1,800), 몽골(1,300~2,000), 폴란드(400~800), 말레이시아(400), 리비아(300), 오만(300)

자료: KDI

북한 주요 공휴일 및 기념일

명칭	사유	일자	내용
설날	설날	1월 1일	1989년 지정
민족 최대의 명절	김정일 생일	2월 16일	1976년 지정, 1992년 민족 최대 명절 지정(50회 생일)
태양절	김일성 생일	4월 15일	1968년 지정, 1974년 민족 최대 명절 지정(60회 생일)
조선인민군 창건기념일	군대 창건일	4월 25일	1996년 지정, 1932년 4월 25일 항일유격대 조직일 기준
국제노동절	노동절	5월 1일	
*	김일성 사망	7월 8일	
전승기념일	한국전 휴전	7월 27일	1996년 지정
조국 광복의 날	2차대전 종전	8월 15일	
9.9절	정권창건기념일	9월 9일	1997년 9.9절에 김일성 출생해인 1912년을 주체연호로 사용시작
추석		음력 8월 15일	1988년 지정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	194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기념
*	김정일 사망	12월 17일	

참고: * 휴식일이 아닌 기념(추모)일

참고자료

국방부, 『국방백서』, 2016

권헌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추정”, 『국방연구 2011년 8월』,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11

김경술,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북한 에너지 수급 영향”,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11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김계환, “독일 통일과 산업구조조정: 남북산업협력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8

김상기, “대북경제제재의 유효성 분석: 실태와 효과”, 『정책연구시리즈 2007-09』, 한국개발연구원, 2007

김석진, “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10년 9월』, 산업연구원, 2010

김성학, 『전갈의 절규: 북한의 대미 불신의 기원과 내면화』, 선인, 2017.

김슬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김중호,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와 대북 정책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2012년 여름호』, 수출입은행, 2012

남진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추가 대북제재 관련 언론보도”,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6 북한 대외무역 동향』, 2017

박병광,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대응방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변진석,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 - 법제와 실행”, 『국제정치논총 2016-12』, 한국국제정치학회, 2016

손한별, “미국의 선택적 비확장정책 분석: 중국과 인도의 핵무기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15

신성원, “이란 핵 합의와 북한 핵 문제”, 『IFANS FOCUS 2015-05K』,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5

안준호, 『핵무기와 국제정치』, 열린책들, 2011.

양운철·하상섭, “UN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한계: 강제성의 제한과 전략적 선택의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세종연구소, 2012

이상숙,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하의 북한경제와 북-중 경험 현황 및 평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7

이재호 외, “UN 대북경제제재의 효과분석: 결의안 1874호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11-12』, 한국개발연구원, 2011

참고자료

- 이종규,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과 대북제재”,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 이종규, “2016년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 동향 평가 및 2017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1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7
- 이종학, 『6.25전쟁이란 무엇인가』, 충남대학교 출판부, 2011
- 이해정 외, 『통일경제의 현재와 미래』, 현대경제연구원, 2016
- 이헌경, “미국의 경제제재조치와 북한에의 적용”, 『통일문제연구 2004년 하반기호』, 평화문제연구소, 2004
- 임강택, “2016년 상반기 북한의 시장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 최장호 외,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추부길,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 에듀팩토리, 2016.
-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일지』, 2005~2017
- 통일부,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 2017
- 통일부, 『북한이해』, 2017.
- 통일부, 『통일백서』, 2017.
- 한국정치학회, 『통일편익연구』, 2013
- 한바란,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대북 경제제재의 2차체제 도입에 주는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 한재진 외, “한중수교 25주년, 무엇이 달라졌나?”, 『경제주평 2017-33』, 현대경제연구원, 2017
- 홍민, “북한 종합시장의 지역별 분포와 운영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3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7
- Dianne E. Rennack, “North Korea: Legislative Basis for U.S. Economic Sanc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6
- Khalid, “Brasstacks Crisis 1986-87”, 『South Asian Studies』, 2012.
- Norris & Kristensen, “Global nuclear weapons inventories, 1945-2010”,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10



삼성증권주식회사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10층 리서치센터

02 2020 8000

지점 대표번호

1588 2323 / 1544 1544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samsungPOP.com

신뢰에 가치로 답하다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